윤강자료집

판결문

진중일지

신문자료

속오작대도
(논문)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1

운강 자료집

2020년 12월 18일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30일 초판 1쇄 발행

펴낸이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펴낸곳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683(운강이강년기념관)
연락처 전화 054)550-6415

총괄기획 및 교정 엄원식, 황용건
감수 · 교열 강윤정
해제 · 논문 강윤정, 김상기, 구완회
탈초 · 번역 김동현, 고이화, 황용건

편집디자인 이레커뮤니케이션즈
찍은곳 이레커뮤니케이션즈
경북 문경시 당교로 233 문경브리티시 2층 206-2호
전화 054)555-7711 팩스 054)555-7714

ISBN 979-11-959484-4-4

이 책은 국가보훈처의 보조금지원으로 발간되었으나
그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1

운강자료집

판결문

진중일지

신문자료

속오작대도
(논문)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발간사

문경은 운강 이강년의병대장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청년기 우국의 꿈을 키웠던 곳입니다. 또한 나라가 무너져 가던 한말 일제침략기 구국의 일념으로 창의의 깃발을 올렸던 곳입니다. 그리하여 문경은 의병항쟁 모태지이자 중심지로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운강선생의 13년간에 걸친 불멸의 의병항쟁은 그야말로 불꽃같은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한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섰던 운강의 의병정신은,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라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利로운 길인가' 보다는 '무엇이 義로운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선생이 남기신 의병의 길은 곧 구국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운강자료집』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일반에게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못했던 운강관련 판결문과 진중일지일본군 보병제14연대 토벌일지 그리고 신문자료와 속오작대도 논문을 모아 간행하였습니다.

특히 『운강자료집』에는 선생과 관련된 재판기록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휘하의 의병장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확실했던 고모산성 진남루의 파괴가 일본군이 남긴 진중일지에서 폭파기록을 발견하여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천 작성산전투에서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에

이르기까지, 순국 후 장례 등 여러 정황이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에 자세하게 보도되었으며, 선생이 남긴 의병전술 훈련도인 「속오작대도」 논문은 지역에서도 전문 선생님들에 의해 번역과 재현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논문을 통해 속오작대도가 군사적 역사적으로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되어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운강자료집』이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된 운강선생 의병항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근대 지역사 연구에도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발굴과 수집으로 『운강자료집』 해제·번역을 담당해주신 담당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이 영 범

목 차

발간사 4

제1장
운강이강년 관련 판결문

해 제 10

「판결문」에 드러난 이강년의진의 의병(장)들

판결문 16

이용운, 허준여, 황경문, 이강년, 정흥대, 홍종선, 임영수, 김규항, 이만원, 채경묵
장인식, 남만귀, 박백현, 곽이섭, 이인영, 이용업, 정중택, 김춘삼, 강수원, 김홍기
이효경, 남도경, 박득용, 김수동, 김상태, 안교봉, 최욱영, 김병우

제2장
진중일지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토벌일지)

해제논문 228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본 이강년의진의 활동

번역본 245

『진중일지』 이강년 및 문경관련 번역

운강자료집

판결문
진중일지
신문자료
속오작대도 (논문)

제3장
운강이강년 관련 신문자료

해 제 366

신문자료로 알아본 운강 이강년의 의병항쟁

신문자료 37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 대한매일신보(한글판) / 황성신문

공립신보 / 신한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제4장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와 의병 활동의 실제

Ⅰ. 머리말 466

Ⅱ. 전통 병학의 맥락에서 본 속오작대도 해설(『병학지남』과의 비교) 468

Ⅲ. 의병 전쟁의 실제와 「속오작대도」의 비교 486

Ⅳ. 의병 전쟁과 「속오작대도」의 의미 493

일러두기

○ **「판결문」**은 이강년을 비롯한 휘하 의병장 판결문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의병항쟁 재판기록을 검색하여 모두 수록하였다. 각각의 판결문은 탈초본과 국역본 원본 순서로 배열하였다.

○ **「진중일지」**는 총 14책으로 된 일본군 보병 제14연대의 의병진압 토벌일지이다. 2010년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영인 간행한 것을 이강년과 문경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 **「신문자료」**는 대한제국기 국내에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미주에서 발행된 '공립신보'와 '신한민보', 해방 후 '동아 · 조선일보'에서 이강년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여 수록하였다.

○ **「판결문」**, **「진중일지」**, **「신문자료」** 원문의 李康年, 李康延은 '李康秊'의 오기로 '이강년李康秊'으로 바로잡았다. 아울러 원문 '榮川'은 현재 지명 '榮州'임을 밝혀둔다.

제1장

운강이강년 관련 판결문

해제

「판결문」에 드러난 이강년의진의 의병(장)들

판결문

이용운, 허준여, 황경문, 이강년
정흥대, 홍종선, 임영수, 김규항
이만원, 채경묵, 장인식, 남만귀
박백현, 곽이섭, 이인영, 이용업
정중택, 김춘삼, 강수원, 김홍기
이효경 남도경, 박득용, 김수동
김상태, 안교봉, 최욱영, 김병우

해 제

「판결문」에 드러난 이강년의진의 의병(장)들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자료집에는 운강 이강년의 「판결문」,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했거나, 그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의병(장) 28명의 「판결문」을 수록하였다. 이들의 출신지는 제천 9명, 문경 7명, 단양 5명, 영월 2명, 연풍·여주·가평·청송·서울이 각 1명으로 이강년의 활동 중심지였던 제천·문경·단양 지역 인물이 많았다. 이들을 판결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8명 가운데 운강 이강년의진에서 활동하다가 이강년보다 먼저 체포된 인물로는 허준여許俊汝·이용운李用雲·황경문黃敬文이 있다. 허준여는 1907년 7월(음) 이강년의진에 참여하여 영월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용운은 1908년 1월(음) 이강년의진의 선봉장 백남규白南奎 휘하에 참여하였으며, 황경문은 1907년 7월(음) 이강년의진의 부장 김용현金龍鉉·조성윤趙成潤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모두 태 100대를 선고받았다.

No	인물	출신	나이	직업	이유	형량	판결일
1	허준여	단양	22	농업	폭도 隨從	태형100	1908.9.2.
2	이용운	연풍	25	농업	폭도 隨從	태형100	1908.9.2.
3	황경문	제천	37	상민·농업	폭도	태형100	1908.9.4.

이강년의 「판결문」은 현재 경성공소원 「판결문」만 전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평리원 1차 신문(1908년 7월 21자), 경성지방재판소 압교(1908년 8월 7일자), 대심원 신문(1908년 9월 2일자), 경성공소원 심리 판결(1908년 9월 22일자)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기록도 있었겠지만,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이강년은 1908년 9월 22일 경성공소원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이강년의진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연이어 체포되었다. 홍종선洪鍾善·임영수林永洙·김규항金奎恒·정흥대鄭興大·이만원李萬源·채경묵蔡敬默·남만귀南萬貴·장인식張仁植·박백현朴

白鉉·곽이섭郭理燮·이인영李麟榮·이용업李龍業·강수원姜遂元·김홍기金弘基·이효경李孝敬·정중택鄭仲澤·김춘삼金春三·남도경南道京·박득용朴得用이 그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이들의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최종판결일 기준

No	인물	출신	나이	직업	이유	형량	판결일
1	이강년	문경	51	유생	내란	교수형	1908. 9.22.
2	홍종선	가평	72	농업	내란	유형 2년	1909. 2. 4.
3	임영수	청송	29	繪具商	강도 및 폭동	역형 5년	1909. 2. 5.
4	김규항	서울	30	–	내란	유형 5년	1909. 2.16.
5	정흥대	문경	49	농업·주막	폭동 및 방화	교수형	1909. 2.24.
6	이만원	청풍	43	양반·농업	폭동	징역 5년	1909. 2.27.
7	채경묵	영월	39	농업	살인 및 내란	징역 5년	1909. 3.20.
8	남만귀	문경	33	被傭人	폭동	징역 3년	1909. 5.11.
9	장인식	단양	32	농업	폭동	유형 3년	1909. 5.20.
10	박백현	문경	28	농업	폭동	징역 3년	1909. 6.15.
11	곽이섭	문경	44	–	강도	징역 3년	1909. 7. 31.
12	이인영	여주	42	농업	내란 首犯	교수형	1909. 8.13.
13	이용업	단양	50	농업	내란	유배 5년	1909.10. 1.
14	강수원	제천	34	日傭稼	폭동 및 살인	징역 15년	1910. 4. 1.
15	김홍기	영월	34	농업	폭동 및 강도	징역 10년	1910. 4. 1.
16	이효경	제천	29	농업	강도 살인 및 폭동	유형 15년	1910. 4. 4.
17	정중택	제천	31	농업	내란	유형 10년	1910. 4. 5.
18	김춘삼	청풍	35	농업	내란	유형 10년	1910. 4.19.
19	남도경	제천	27	농업	폭동 및 강도	징역 10년	1910. 5. 2.
20	박득용	제천	24	농업	내란	면소	1910. 8.29.

이들 20명 가운데 정흥대와 이인영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정흥대는 문경 가은 도태리(상괴1리) 출신이다. 이강년부대가 1907년 9월 7일 문경읍을 장악할 무렵, 문경읍내 우편소와 일본인 가옥을 소각하고 한인 순검 2명을 처단하는 등 의병대를 지휘했던 인물로 보인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8일자, 9월 14일자).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체포되어 대구지방재판

소(1908.10.1.)에서 '폭동 및 방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하자, 검사 쌍방 간 항소와 상고 제기가 이루어졌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심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이인영은 1907년 9월 문경에서 이강년과 함께 전투를 치른 인물이다. 그 후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관동창의대장으로 의병전쟁을 지휘하였으며, 1908년 1월 13도연합의진 총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내란 수범首犯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이른바 '내란 조의造意 및 지휘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일제강점 직전 혹은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다가 체포된 인물로는 김수동金壽童·김상태金尙台·안교봉安敎奉·최욱영崔旭永·김병우金炳祐가 있다.

김수동은 이강년이 기병한 1907년 9월부터 11월 26일까지 이강년의진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그는 의병 2백여 명과 함께 경북 문경, 충북 단양·永春,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전투를 치렀다. 또한 일진회 회원 및 친일 관료 등 매국매족 행위자를 처단하였으며, 의병활동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기고 했다. 이강년 순국 후에는 최성천부대에서 항전을 이어가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2월 23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No	인물	출신	나이	직업	이유	형량	판결일
1	김수동	단양	26	농업	강도 및 강도살인	교수형	1910.12. 7.
2	김상태	단양	50	농업	강도·강도와주? ·강도살인교사	교수형	1911. 8.31.
3	안교봉	제천	40	농업	강도	징역 10년	1915. 7.16.
4	최욱영	문경	60	무직	강도 교사	징역 15년	
5	김병우	문경	37	무직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7. 4.14.
			38			징역 1년	1918. 3. 5.

김상태는 후기의병기 이강년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했던 의병장이다. 이강년 순국 후 호좌의진을 재건하고 경북·충북·강원도의 소백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7월

까지 항전을 이어가던 그는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여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순국하였다.

안교봉은 제천사람으로 최욱영의 수하에서 1913년부터 제천과 안동 등지를 돌며 여러차례에 걸쳐 군자금모집 활동을 한 인물이다.

최욱영은 문경군 영순면 이목리에 살았다. 후기의병기 이강년부대의 군자장軍資將으로 활동하였다. 이강년 순국 후 은신하던 그는 이동하·김낙문 등과 함께 1914년 10월부터 군자금 모집, 동지규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활동이 드러나 체포된 그는 1915년 6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 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19년 8월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김병우는 칠곡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동지규합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1917. 4. 14.)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918년 1월 2일 무렵 논산에서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던 동지를 모아 자진회自進會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병우의 활동은 이강년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들이 1910년대 후반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운강이강년 관련 판결문 현황(一審 판결 일자순)

	성명(나이)	출신지	직업	판결기관	판결일
1	**이용운**(25세)	연풍	농업	공주구재판소	1908. 9. 2.
2	**허준여**(22세)	단양	농업	공주구재판소	1908. 9. 2.
3	**황경문**(37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1908. 9. 4.
4	**이강년**(51세)	문경	유생	경성공소원	1908. 9.22.
5	**정흥대**(49세)	문경	농업 · 주막	대구지방재판소	1908.10.19.
6	**홍종선**(72세)	가평	농업	경성지방재판소	1909. 2. 4.
7	**임영수**(29세)	청송	繪具商	대구지방재판소	1909. 2. 5.
8	**김규항**(30세)	서울	무직	경성지방재판소	1909. 2.16.
9	**이만원**(43세)	제천	양반 ·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1909. 2.27.
10	**채경묵**(39세)	영월	농업	경성지방재판소	1909. 3.20.
11	**장인식**(32세)	단양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09. 4. 5.
12	**남만귀**(33세)	문경	被傭人	대구지방재판소	1909. 5.11.
13	**박백현**(28세)	문경	농업	대구지방법원	1909. 5.17.
14	**곽이섭**(44세)	문경	—	대구지방재판소	1909. 7.31.
15	**이인영**(42세)	여주	농업	경성지방재판소	1909. 8.13.
16	**이용업**(50세)	단양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09. 9.11.
17	**정중택**(31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3. 9.
18	**김춘삼**(35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3.18.
19	**강수원**(34세)	제천	日傭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4. 1.
20	**김홍기**(34세)	영월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4. 1.
21	**이효경**(29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4. 4.
22	**남도경**(27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5. 2.
23	**박득용**(24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1910. 7.22.
24	**김수동**(26세)	단양	농업	대구지방재판소	1910.10. 7.
25	**김상태**(50세)	단양	농업	대구지방재판소	1911. 8. 4.
26	**안교봉**(40세)	제천	농업	공주지방법원	1915. 5. 7.
	최욱영(60세)	문경	무직		1915. 6.11.
27	**김병우**(37세)	문경	무직	대구지방법원	1917. 4.14.
				공주지방법원	1918. 3. 5.

수 형	죄 목	항소 · 상고법원	비 고
태 100	폭동수종		애족장
태 100	폭도수종		대통령표창
태 100	폭도		대통령표창
교수형	내란		대한민국장
역형종신, 교수형	폭동, 방화	대구공소원(1908. 12. 1.) 대심원(1908. 12. 18.) 대구공소원(1909. 2. 9.) 대심원(1909. 2. 24.)	애국장
유형 2년	내란		애족장
역형 5년	강도, 폭동		애족장
유형 5년	내란		
징역 5년	폭동		애국장
징역 5년	살인, 내란		애국장
태 100, 유형 3년	폭동	경성공소원(1909. 5. 20.)	애족장
징역 3년	폭동		애족장
징역 3년	폭동	대구공소원(1909. 6. 15.)	애족장
징역 3년	강도		애족장
교수형	내란수범		대통령장
징역 5년, 유배 5년	내란	경성공소원(1909. 10. 1.)	애국장
유형 10년	내란	경성공소원(1910. 4. 5.)	건국포장
유형 15년, 유형 10년	내란	경성공소원(1910. 4. 19.)	애국장
징역 15년	폭동, 살인		애국장
징역 10년	폭동, 강도		애국장
유형 15년	강도, 살인, 폭동		애족장
징역 10년	폭동, 강도		애국장
유형 5년, 면소	내란	경성공소원(1910. 8. 29.)	
교수형	강도, 살인	대구공소원(1910. 11. 15.) 고등법원형사부(1910. 12. 3.)	애국장
교수형	강도 · 강도와주 강도살인교사	대구공소원(1911. 8. 31.)	독립장
징역 10년	강도	경성복심법원(1915. 7. 16.)	애국장
징역 15년	강도교사		독립장
징역 6월	보안법위반		
징역 1년			

1. 이용운

判決書原本[隆熙二年刑第一〇號]

忠淸北道 延豊郡 水廻面 酒幕洞居 農民
被告 李用雲, 年二十五

右暴動隨從被告事件에對ᄒᆞ야審理ᄒᆞᆫ後判決ᄒᆞᆷ이左와如ᄒᆞᆷ

主文

被告李用雲을笞一百에處ᄒᆞᆷ

事實及理由

一. 被告가昨年陰曆九月日不記[隆熙元年十月頃]에暴徒盧奉乭이率二百餘人을고被告ᄅᆞᆯ威脅捉去ᄒᆞ야至忠州聖芝洞이라가該徒가與日兵交戰之際에被告가乘間逃歸ᄒᆞᆫ事
二. 本年陰正月十七日에暴徒李康年先鋒白南奎가威脅捉去라가二日後被告가更爲逃歸其家ᄒᆞᆫ事
三. 同月二十三日夜에同白南奎가率徒黨六名을고又爲威脅故로被告가隨行을야다가同月二十六日에又爲逃歸其家ᄒᆞᆫ事
以上事實은被告가本公廷에셔陳供自服과公州地方裁判所檢事廷訊問調書와忠州憲兵分遣所聽取書에證ᄒᆞ야證據가充分ᄒᆞᆫ지라此ᄅᆞᆯ法에照ᄒᆞ니被告의第一第二第三所爲ᄅᆞᆯ并히刑法大全六百七十七條末段律로同第百二十九條에依ᄒᆞ야第一所爲ᄅᆞᆯ從一科斷ᄒᆞ야仍히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檢事澁谷有孚立會

公州區裁判所
判事 洪祐夔 [印]

판결문 탈초·번역 : 김동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隆熙二年 九月 二日
裁判所書記 金奭鎬 [印]

판결서원본 [융희2년1908 형(刑)제10호]

충청북도 연풍군 수회면水廻面 주막동酒幕洞 거주
농업, 피고 이용운李用雲 25세

위 폭동 수종隨從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한 후 판결함이 다음과 같음.

주문

피고 이용운을 태형 100대에 처함.

사실 및 이유

1. 피고가 작년 음력 9월 모일융희원년 10월경에 폭도 노봉돌盧奉乭이 200여 명을 거느리고 피고를 위협하고 붙잡아 가서 충주 성지동聖芝洞에 이르렀다가 해당 폭도가 일병日兵과 교전할 즈음에 피고가 틈을 타 도망하여 돌아간 일.

2. 올해 음력 정월 17일에 폭도 이강년李康秊의 선봉장 백남규白南奎가 위협하고 붙잡아 가서 2일 후 피고가 다시 도망하여 그의 집으로 돌아간 일.

3. 동월 23일 밤에 동 백남규가 도당 6명을 이끌고 또 위협하였기에 피고가 수행을 하다가 동월 26일에 또 도망하여 그의 집으로 돌아간 일.

이상 사실은 피고가 본 공정公廷에서 진술·자복한 것, 공주지방재판소 검사정 신문 조서, 충주헌병분견소 청취서에 증빙하여 그 증거가 충분하기에, 이를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제1·제2·제3의 소위는 모두 형법대전 677조 말단율末段律로, 동제129조에 의하여 제1소위의 한 가지만을 따라 과단科斷하여 그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 입회

공주구재판소
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융희2년1908 9월 2일
재판소서기 김석호金奭鎬 [印]

■ **이용운 판결문**(1908년 9월 2일, 공주구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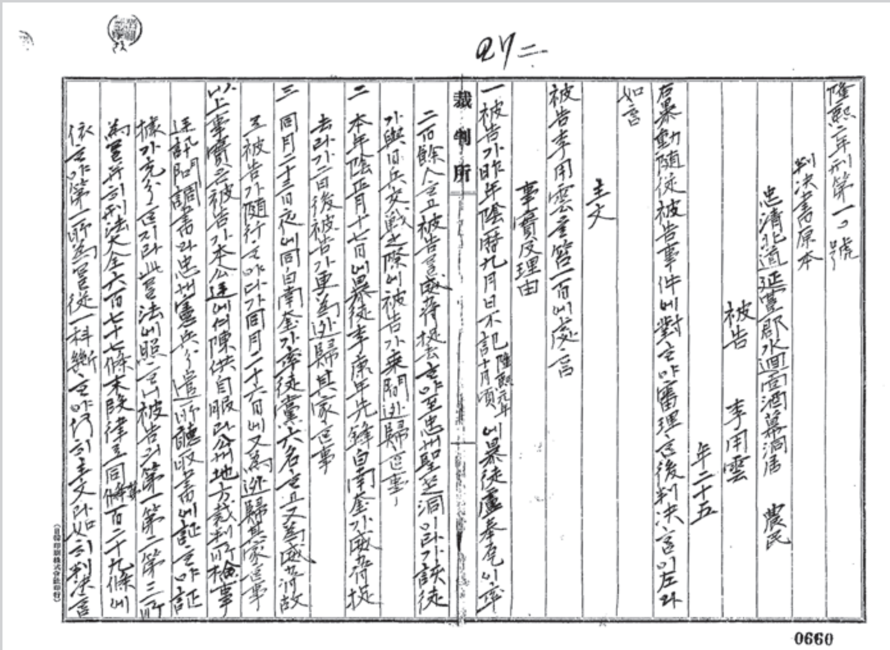

27 二

隆熙二年刑第一〇號

判決書原本

忠淸北道延豐郡水迴面酒幕洞居 農民

被告 李用雲

年二十五

右暴動隨從被告事件에對ᄒᆞ야審理ᄒᆞᆫ後判決ᄒᆞᆷ이左와

如ᄒᆞᆷ

主文

被告李用雲을笞一百에處ᄒᆞᆷ

事實及理由

一 被告가昨年陰曆九月日不記(隆熙元年十月頃)에暴徒盧奉虎이率

二百餘人ᄒᆞ고被告를威脅捉去ᄒᆞ야至忠州聖堂洞이라가該徒

가與日兵交戰之際에被告가乘間逃歸ᄒᆞᆫ事

二 本年陰正月十七日에暴徒李康年先鋒白南奎가威脅捉

去라가二日後被告가更爲逃歸其家ᄒᆞᆫ事

三 同月二十三日夜에同白南奎가率徒黨六名ᄒᆞ고又爲威脅捉去ᄒᆞᆫ故

로被告가隨行ᄒᆞ얏다가同月二十六日에又爲逃歸其家ᄒᆞᆫ事

以上事實은被告가本公廷에서陳供自服ᄒᆞᆫ바公州地方裁判所檢事

正訊問調書와忠州憲兵分遣所聽取書에記ᄒᆞᆫ바證

據가充分ᄒᆞᆫ지라此를法에照ᄒᆞᆫ즉被告의第一第二第三所

爲ᄂᆞᆫ刑法大全六百七十七條末段律로同律百二十九條에

依ᄒᆞ야第一所爲를從一科斷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裁判所

0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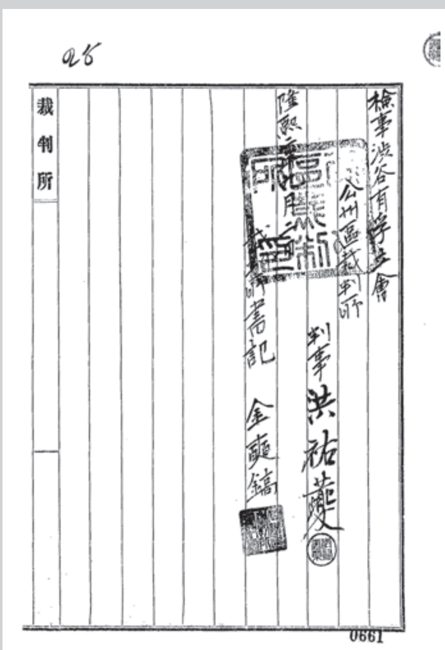

28

檢事澁谷有孚立會

隆熙二年九月二日 公州區裁判所

判事 洪祐夔

裁判所書記 金[illegible]鎬

裁判所

0661

2. 허준여

判決原本[隆熙二年刑第一二號]

忠淸北道 永春郡 佳野面 麗川里 農民
被告 許俊汝, 年二十二

右暴徒隨從被告事件에對ᄒᆞ야審理ᄅᆞᆯ畢ᄒᆞᆫ後判決ᄒᆞᆷ이如左ᄒᆞᆷ

主文

被告許俊汝ᄅᆞᆯ笞一百에處ᄒᆞᆷ

事實及理由

被告가昨年陰七月二十七日[隆熙元年八月頃]에暴徒李康年에威脅을被ᄒᆞ야該徒에게隨從ᄒᆞ야至寧越鹿本里等地라가十日後에乘間逃歸其家ᄒᆞᆫ事
以上事實은被告가本公廷에셔陳供自服과堤川警察署取調書와忠州區裁判所移送書에證ᄒᆞ야證據가充分ᄒᆞᆫ지라此ᄅᆞᆯ法에照ᄒᆞ니被告所謂ᄅᆞᆯ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末段律에處ᄒᆞ야仍히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檢事澁谷有孚立會

公州區裁判所
判事 洪祐夔 [印]

隆熙二年 九月 二日
裁判所書記 金奭鎬 [印]

판결원본 [융희2년1908 형(刑)제12호]

충청북도 永春郡 가야면佳野面 여천리麗川里

농민農民, 피고 허준여許俊汝 22세

위 폭도수종隨從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함이 다음과 같음.

주문

피고 허준여를 태형 100대에 처함.

사실 및 이유

피고가 작년 음력 7월 27일융희원년 8월경에 폭도 이강년李康秊의 위협을 받아 해당 폭도에게 수종하여 영월 녹본리鹿本里 등지에 이르렀다가 10일 이후에 틈을 타 도망하여 그의 집으로 돌아 간 일.

이상 사실은 피고가 본 공정公廷에서 진술·자복 한 것과 제천경찰서 취조서와 충주 구재판소 이송서에서 증빙하여 증거가 충분하기에 이를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소위를 형법대전 제677조 말단율末段律에 처하여 그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 입회

공주구재판소

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융희2년1908 9월 2일

재판소서기 김석호金奭鎬 [印]

■ **허준여 판결문**(1908년 9월 2일, 공주구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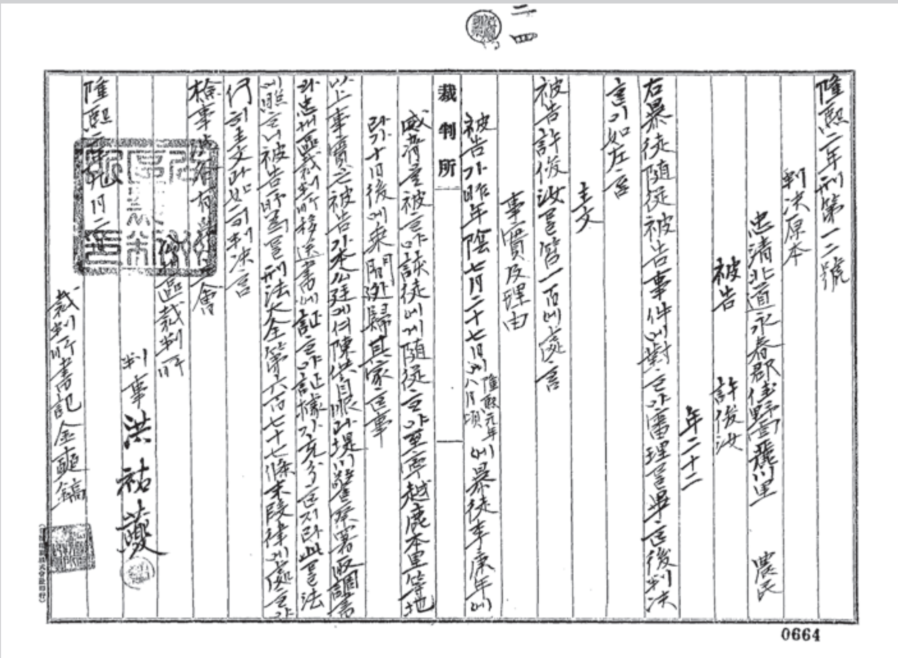

隆熙二年刑第一二號

判決原本

忠淸北道永春郡佳谷面飛川里 農民

被告 許俊汝

年二十二

右暴徒隨從被告事件에對ᄒᆞ야審理ᄒᆞᆫ後判決ᄒᆞᆷ이如左ᄒᆞᆷ

主文

被告許俊汝ᄅᆞᆯ笞一百에處ᄒᆞᆷ

事實及理由

被告가昨年陰七月二十七日에(隆熙元年八月頃)暴徒李康年에

裁判所

成群ᄒᆞᆫ被告ᄂᆞᆫ該徒에게隨從ᄒᆞ야至寧越鹿本里等地

라가十日後에衆聞散歸其家ᄒᆞᆫ事

以上事實은被告가本公廷에셔陳供自服과堤川警察署所調書

와忠州區裁判所移送書에証ᄒᆞ야証據가充分ᄒᆞᆫ지라此ᄅᆞᆯ法

에照ᄒᆞ니被告의所爲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末段律에處ᄒᆞᆷ이

可ᄒᆞᆫ줄로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檢事 [illegible] 立會

隆熙二年九月二日 [illegible]

公州區裁判所

判事 洪祐蘷

裁判所書記 金顯鎬

0664

3. 황경문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東面 新門 松峙里 統戶不祥 常民 農
黃敬文, 年三十七

右暴徒被告事件을審判홈이如左홈

主文

被告黃敬文을笞一百에處홈이라
押收物件中犯罪에關ᄒᆞᆫ物件은沒入홈이라

事實及理由

被告ᄂᆞᆫ光武十一年七月十日暴徒首魁李康年의部將金龍鉉趙成潤等의召募을應ᄒᆞ야堤川郡停車嶺에往ᄒᆞ야其部下가되야陣中通行券의交付를受ᄒᆞ야附和隨行ᄒᆞ고忠州方面에向ᄒᆞᆫ바翌十五日事故를因ᄒᆞ야淸風郡에셔一且歸家ᄒᆞ얏다가隆熙二年陰正月十二日平昌郡金道에셔暴徒蔡正淸以下二十名을會合ᄒᆞ야再히其徒黨이되야雜役에從事ᄒᆞ고爾後三日假量該蔡等을隨行ᄒᆞ야寧越郡地方을徘徊ᄒᆞᆫ者也라
右事實은八月四日付吉田憲兵伍長의作成ᄒᆞᆫ被告聽取書에判示에吻合ᄒᆞᄂᆞᆫ趣旨의供述記載가有홈을依ᄒᆞ야此을認홈
法律에照ᄒᆞ니被告의右所爲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後段에該當ᄒᆞ고또押收物件中犯罪에關ᄒᆞᆫ物件은同法第百十八條에依ᄒᆞ야沒入홈이可ᄒᆞᆯ者라仍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홈檢事小野篤次郎干與

公州地方裁判所 刑事部
裁判長 判事 大橋鐵之助 [印]

判事 伊東淳吉 [印]
判事 李容成 [印]

隆熙二年 九月 四日 言渡
裁判所書記 大谷正三郎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동면東面 신문新門 송치리松峙里, 통호불상統戶不祥
상민常民 · 농업, 황경문黃敬文 37세

위 폭도 피고사건을 심판함이 다음과 같음.

주문

피고 황경문을 태형 100대에 처한다.
압수물건 가운데 범죄에 관계된 물건은 몰입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광무11년1907 7월 10일에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季의 부장 김용현 · 조성윤 등의 소모召募에 응하여 제천군 정거령停車嶺에 가서 그의 부하가 되어 진중 통행권의 교부를 받아 부화뇌동하여 수행하였고, 충주방면으로 향한 바, 다음 15일의 사고事故, 註 충주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청풍군에서 1차 귀가하였다가 융희2년1908 음력 정월 12일에 평창군 금도金道에서 폭도 채정청蔡正淸 이하 20명을 회합하여 다시 그 도당이 되어 잡역에 종사하고, 이후 3일 가량 해당 도당의 채정청 등을 수행하여 영월군 지방을 배회한 자다.

위 사실은 8월 4일 부付 요시다[吉田] 헌병오장이 작성한 피고 청취서의 판시와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기재가 있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위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후단後段에 해당하고, 또 압수물건 가운데 범죄와 관련한 물건은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몰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 관여

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

재판장 판사 대교철지조大橋鐵之助 [印]

판사 이동순길伊東淳吉 [印]

판사 이용성李容成 [印]

융희2년1908 9월 4일 언도

재판소서기 대곡정삼랑大谷正三郎 [印]

■ **황경문 판결문**(1908년 9월 4일, 공주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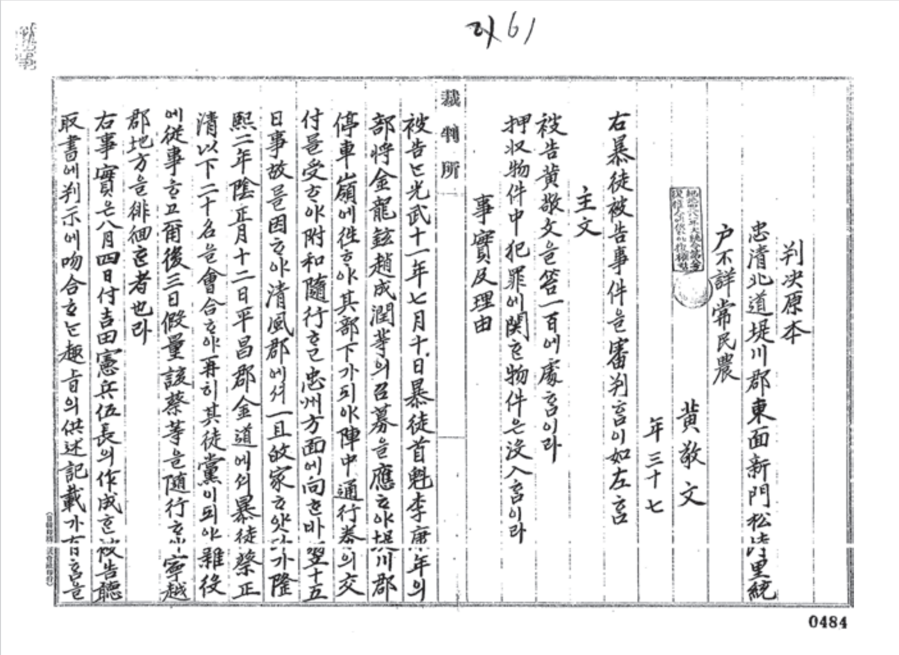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淸北道堤川郡東面新門松峙里統

戶 不詳 常民農 黃敬文

年三十七

右暴徒被告事件을審判ᄒᆞᆷ이如左ᄒᆞᆷ

主文

被告黃敬文을笞一百에處ᄒᆞᆷ이라

押收物件中犯罪에關ᄒᆞᆫ物件은沒入ᄒᆞᆷ이라

事實及理由

被告는光武十一年七月十日暴徒首魁李康秊의部將金龍鉉趙成潤等의召募을應ᄒᆞ야堤川郡停車嶺에往ᄒᆞ야其部下가되야陣中通行券의交付를受ᄒᆞ야附和隨行ᄒᆞ든忠州方面에向ᄒᆞᆫ바翌十五日事故를因ᄒᆞ야淸風郡에서一旦歸家ᄒᆞ앗다가隆熙二年陰正月十二日平昌郡金道에와暴徒蔡正淸以下二十名을會合ᄒᆞ야再히其徒黨이되야雜役에從事ᄒᆞ고爾後三日假量該蔡等을隨行ᄒᆞ야寧越郡地方을徘徊ᄒᆞᆫ者也라

右事實은八月四日付吉田憲兵伍長의作成ᄒᆞᆫ被告聽取書에判示에吻合ᄒᆞ는趣旨의供述記載가有ᄒᆞᆷ을

裁判所

0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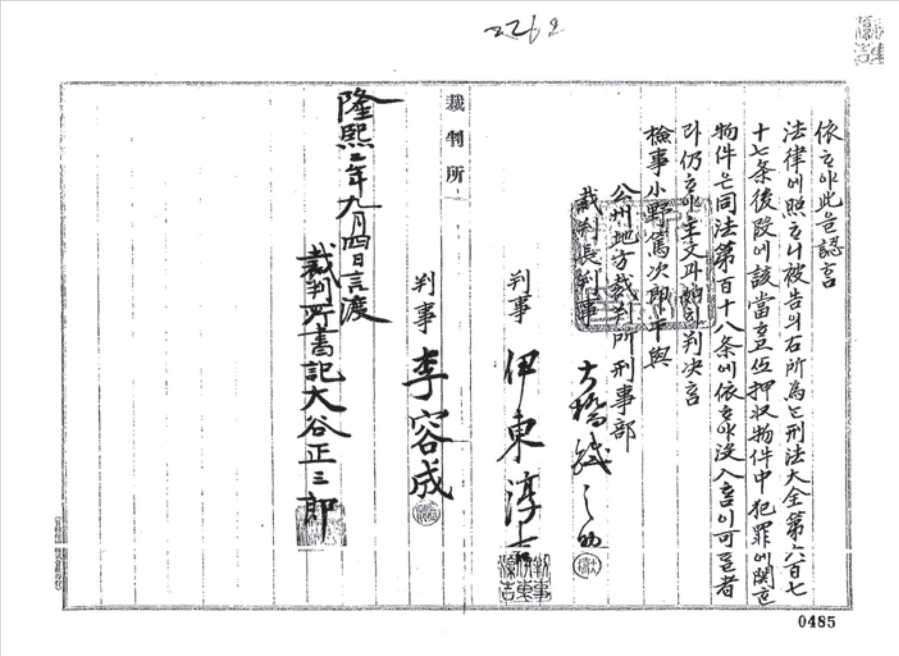

依ᄒᆞ야此을認ᄒᆞᆷ

法律에照ᄒᆞ니被告의右所爲는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後段에該當ᄒᆞ고伍押收物件中犯罪에關ᄒᆞᆫ物件은同法第百十八條에依ᄒᆞ야沒入ᄒᆞᆷ이可ᄒᆞᆫ者라仍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檢事小野篤次郎干與

公州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判事 大橋繁

判事 伊東淳吉

判事 李容成

隆熙二年九月四日言渡

裁判所書記大谷正三郎

裁判所

0485

4. 이강년

判決書 [隆二刑控第二〇號]

慶尙北道 聞慶郡 北面 竹門洞 儒生

李康年, 五十一年

右內亂被告事件審理判決スル(흠이)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李康年ヲ(을)絞ニ(에)處ス(홈)

押收物件ハ(은)此ヲ(를)沒收ス(홈)

事實及理由

被告ハ(는)現政府ノ(의)施政ニ(에)不滿ヲ(흠을)懷キ(ᄒᆞ야)政府ヲ(를)傾覆シ(ᄒᆞ고)政事ヲ(를)變更セント(키를)企圖シ(ᄒᆞ야)隆熙元年陰曆七月以降(後에)湖左倡義大將ト(으로)自稱シテ(ᄒᆞ고)徒黨數百名ヲ(을)嘯集シ(ᄒᆞ야)內亂ヲ(을)起シ(ᄒᆞ야)同二年七月マテ(까지)忠淸江原京畿ノ各道內ヲ(를)橫行シ(ᄒᆞ야)數十回討伐隊ト(와)交戰シ(ᄒᆞ야)其目的ノ(의)遂行ニ(에)從事シタルモ(ᄒᆞ얏스나)終ニ(히)同月二日忠淸道錦繡山附近ニ於テ(에셔)戰敗捕獲セラレタルモノナリ(된者니라)

右事實ハ(은)被告ニ(를)對スル(ᄒᆞ야)韓國駐箚憲兵隊京城憲兵分隊長ノ(의)訊問調書(와) 被告カ(가)當公廷ニ於ケル(에셔)供述ニ(흠을)徵シ(ᄒᆞ야)其證憑(이)十分ナリ(명확ᄒᆞᆫ지라) 此ヲ(를)法律ニ(에)照スニ(ᄒᆞ니)其所爲(가)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에)該當スルヲ以テ(흠으로써)同條ニ(를)依リ(ᄒᆞ야)處斷シ(인바)押收物件ハ(은)何レモ(總히)被告ノ(의)所有ニシテ(라)本犯罪ニ(에)關係アルモノト(가有ᄒᆞᆫ자로)認ムルヲ以テ(흠으로써)同法第百十八條ニ(를)依リ(ᄒᆞ야)處分スヘキモノトス(ᄒᆞᆯ거시라)依テ(因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홈)

檢事杉村逸樓本件ニ(에)關與ス(홈)

隆熙二年 九月 二十二日
京城控訴院 刑事部
裁判長 判事 森島彌四郎 [印]
判事 結城朝陽 [印]
判事 李冕宇 [印]

隆熙二年 九月 廿二日 判決 宣告
裁判所書記 木村競次郎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京城控訴院繙譯官 蓮元康丸 [印]

판결서 [융희2년1908 형공(刑控) 제20호]

경상북도 문경군 북면北面 죽문동竹門洞
유생, 이강년李康秊 51세

위 내란 피고 사건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강년李康秊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는 현 정부의 시정에 불만을 품고서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를 변경하고자 기도하여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이후로 호좌湖左창의대장이라 자칭하고 도당 수백 명을 소집하

여 내란을 일으켜 동 2년 7월까지 충청·강원·경기의 각 도내를 횡행하며 수십 회 토벌대와 교전하여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하였으나, 마침내 동월 2일 충청도 금수산錦繡山[丹陽] 부근에서 패전, 체포된 자다.

위의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한국주차헌병대 경성京城 헌병분대장의 신문조서, 피고의 당공판정에서의 공술에 징험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건대, 그의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하여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서 본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처분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이 사건에 관여함.

융희2년1908 9월 22일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삼도미사랑森島彌四郎 [印]
판사 결성조양結城朝陽 [印]
판사 이면우李冕宇 [印]

융희2년1908 9월 22일 판결 선고
재판소서기 목촌경차랑木村競次郎 [印]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경성공소원번역관 연원강환蓮元康丸 [印]

■ **이강년 판결문**(1908년 9월 22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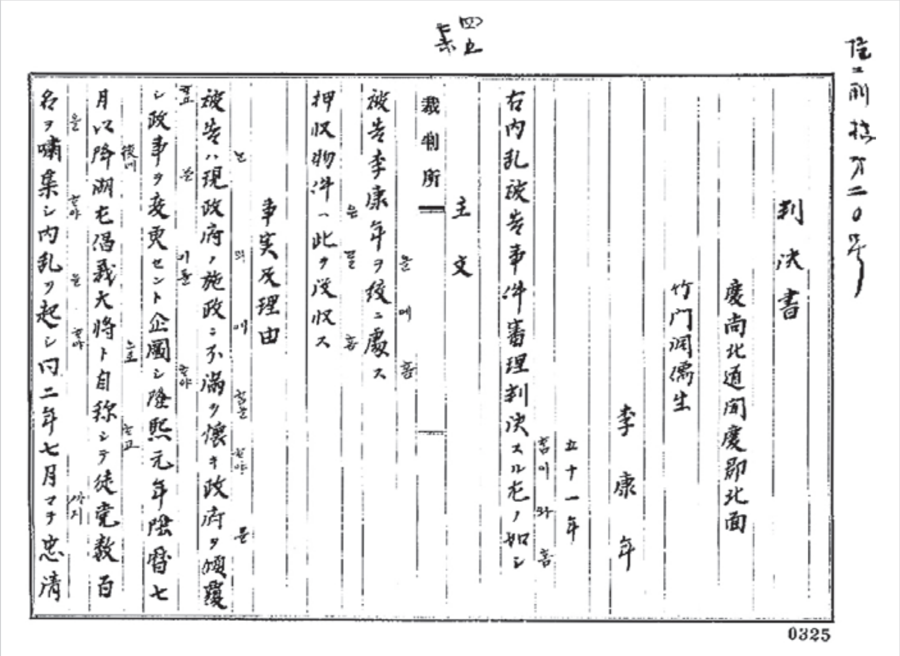

隆二刑控第二〇号

判決書

慶尚北道聞慶郡北面
竹門洞儒生
李康年
五十一年

右内乱被告事件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李康年ヲ絞ニ處ス
押収物件ハ此ヲ没収ス

事実及理由

被告ハ現政府ノ施政ニ不満ヲ懐キ政府ヲ顛覆シ政事ヲ変更セント企図シ隆熙元年陰暦七月以降湖右倡義大将ト自称シテ徒党数百名ヲ嘯集シ内乱ヲ起シ同二年七月マテ忠清

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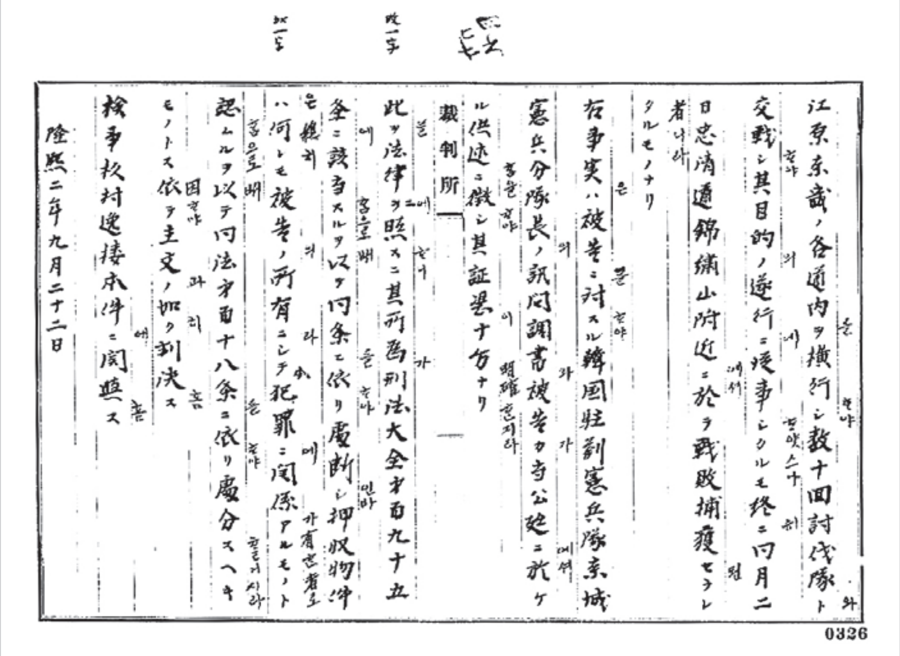

江原京畿ノ各道内ヲ横行シ数十回討伐隊ト交戦シ其目的ノ遂行ニ従事シタルモ終ニ同月二日忠清道錦繍山附近ニ於テ戦敗捕獲セラレ者タルモノナリ

右事実ハ被告ニ対スル韓国駐箚憲兵隊京城憲兵分隊長ノ訊問調書被告カ当公廷ニ於ケル供述ニ徴シ其証憑十分ナリ

此ノ法律ニ照スニ其所為刑法大全第百九十五条ニ該当スルヲ以テ同条ニ依リ處断シ押収物件ハ何レモ被告ノ所有ニシテ犯罪ニ関係アルモノナルヲ以テ同法第百十八条ニ依リ處分スヘキモノトス依テ主文ノ如ク判決ス

検事牧村逸捧本件ニ関與ス

隆熙二年九月二十二日

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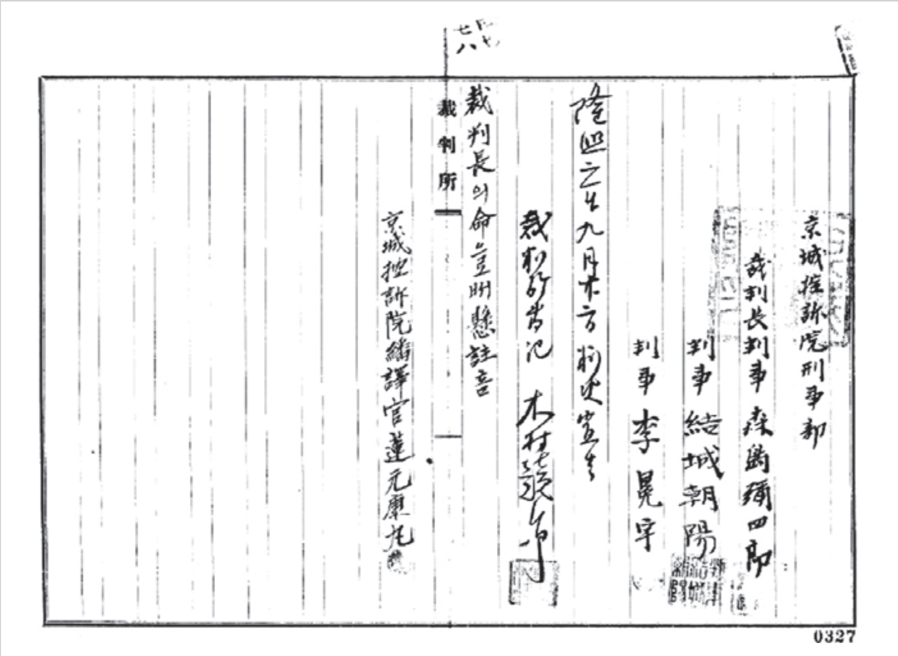
七八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森爲彌四郎

判事 結城朝陽

判事 李晃宇

隆熙三年九月十六日 判決宣告

裁判所書記 木村[illegible]

裁判長의命을由懸註함

京城控訴院繙譯官 蓮元康允

裁判所

0327

5. 정흥대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業 農兼酒幕, 鄭興大, 當四十九年

右暴動及ヒ放火被告事件ニ付(에對ᄒᆞ야)檢事森浦熊藏干與審理ヲ(ᄅᆞᆯ)遂ケ(ᄒᆞ야)判決ヲ爲スコト(ᄒᆞᆷ이)左ノ(와)如シ(ᄒᆞᆷ)

主文

被告鄭興大ヲ(ᄅᆞᆯ)役刑終身ニ(에)處ス(ᄒᆞᆷ)

理由

被告ハ(ᄂᆞᆫ)第一隆熙元年陰曆七月廿九日(에)李寅榮ノ(의)部下ト(가)爲ク(되야)其部下八十名中ニ(에)十名ハ(은)火繩銃指揮官ハ(은)刀壹本ヲ(ᄅᆞᆯ)携ヘタル(ᄒᆞᆫ)者ト(와)與ニ(共히)尙州郡慶州郡ノ(의)兩郡內ヲ(ᄅᆞᆯ)橫行シ(ᄒᆞ고)又ハ(ᄂᆞᆫ)同年陰曆八月一日(에)副首魁金龍伯ニ(에)從ヒ德山方面ニ(에)至リ영(ᄒᆞ고)令狀ヲ(을)配布シ(ᄒᆞ야)二十名ノ(의)暴徒ヲ(ᄅᆞᆯ)募集シ(ᄒᆞ고)又ハ(ᄂᆞᆫ)人民ヨリ(으로붓터)食事(物)ヲ(을)徵發シ(ᄒᆞ야)之ヲ(此ᄅᆞᆯ)食レ以テ(ᄒᆞ며써)暴動ヲ(을)爲シ(行ᄒᆞ고)

第二同年陰曆八月一日(에)聞慶郡聞慶邑內ニ(에)暴徒三十名ト(과)與ニ(共히)侵入シ(ᄒᆞ야)自ラ(스사로)暴徒ヲ(ᄅᆞᆯ)指揮シ(ᄒᆞ야)同邑內巡檢朴時永及ヒ意思ノ繼續ヲ以テ(으로써)引續キ(ᄒᆞ야)同邑內巡檢朴世鎭ノ(의)家屋ニ(에)放火シ以テ(ᄒᆞ야써)之ヲ(此ᄅᆞᆯ)燒毁シタリ(ᄒᆞᆫ지라)

以上ノ(의)事實ハ(은)被告ニ(에)對スル(ᄒᆞᆫ)陸軍憲兵曹長ノ(의)訊問調書(와)聞慶郡守ノ(의)被害報告書陸軍憲兵伍長ノ(의)徐成允林氏朴寅和ニ(에)對スル(한)聽取書ニ(에)徵シ(ᄒᆞ야)認ム(ᄒᆞᆯ)可キ證憑(이)十分ナリ(充ᄒᆞᆷ)

法律ヲ(을)案スルニ(컨ᄃᆡ)被告カ(가)第一ノ(의)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ニ(에)

該當シ(ᄒᆞ고)第二ノ(의)所爲ハ(ᄂᆞᆫ)同法第六百六十六條ニ(에)該當シ(ᄒᆞ되)第二ノ(의)所爲ハ(ᄂᆞᆫ)所犯情狀(이)酌量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ᄒᆞᆯ만ᄒᆞᆫ者ㅣ가有ᄒᆞᆷ으로써)同法第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一等ヲ(을)減シ(ᄒᆞ고)二罪俱發ニ付(에對ᄒᆞ야)同法第百二十九條ニ(에)依リ(ᄒᆞ야)重キ(ᄒᆞᆫ)第二ノ(의)罪ニ(에)從ヒ(ᄒᆞ야)處斷ス可キモノトス(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야)仍テ(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隆熙貳年 十月 十九日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中村敬直 [印]
判事 齋藤宗四郎 [印]
判事 吳容默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補 林久次郎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도니동都尼洞
농업·주막酒幕, 정흥대鄭興大 49세

위 폭동 및 방화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삼포웅장森浦熊藏이 관여하여 심리를 하여 판결한 것이 다음과 같음.

주문

피고 정흥대를 역형종신役刑終身에 처함.

이유

피고는 제1,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9일에 이인영의 부하가 되어 그 부하 80명 가운

데에 10명은 화승총火繩銃을, 지휘관은 도刀 1본本을 휴대한 자와 함께 상주군·경주군 두 군내를 횡행하고, 또는 동년 음력 8월 1일에 부수괴 김용백金龍伯을 따라 덕산 방면에 이르러 영장令狀을 배포하여 20명의 폭도를 모집하고, 또는 인민으로부터 음식물을 징발하여 이를 먹음으로써 폭동을 행하였고,

제2, 동년 음력 8월 1일에 문경군 문경읍내에 폭도 30명과 함께 침입하여 스스로 폭도를 지휘하여 동 읍내 순검 박시영朴時永 및 의사를 계속하기 위해 이어서 동 읍내 순검 박세진朴世鎭의 가옥에 방화를 함으로써 이를 태워 없앴으니,

이상의 사실은 피고에 대한 육군헌병조장의 신문조서와 문경군수의 피해보고서와 육군헌병오장의 서성윤徐成允·임씨林氏·박인화朴寅和에 대한 청취서에 증거하여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을 살펴보건대, 피고의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고 제2의 소위는 동법 제666조에 해당하되, 제2의 소위는 범한 바의 정상이 작량 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하여 1등을 감하고,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 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중한 제2의 죄에 따라 처단함이 옳을 것이다 하여, 인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2년1908 10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중촌경직中村敬直 [印]
판사 재등종사랑齋藤宗四郎 [印]
판사 오용묵吳容默 [印]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 함
번역관보 임구차랑林久次郎 [印]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業 農兼酒幕

鄭興大, 四十九年

右ノ者ニ(被告에)對スル(ᄒᆞᆫ)暴動及放火被告事件ニ付(에關ᄒᆞ야)隆熙二年十月十九日大邱地方裁判所カ(에서)被告ヲ(ᄅᆞᆯ)役刑終身ニ(에)處スト(ᄒᆞᆷ이라)言渡シタル(宣告ᄒᆞᆫ)判決ニ(에)對シ(ᄒᆞ야)檢事ヨリ(가)控訴ヲ(ᄅᆞᆯ)申提シタルニヨリ(ᄒᆞ얏기)當院ハ(은)檢事大村大代立會審理ヲ(ᄅᆞᆯ)遂ケ(行ᄒᆞ야)判決スルコト(ᄒᆞᆷ이)左ノ(와)如ラレ(ᄒᆞᆷ)

主文

原判決ヲ(을)繳消シ(ᄒᆞ고)被告鄭興大ヲ(ᄅᆞᆯ)絞ニ(에)處ス(ᄒᆞᆷ)

理由

第一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陰曆七月二十九日李寅榮ノ(의)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火繩銃等ヲ(을)携帶シタル(ᄒᆞᆫ)同部下八十餘名ト(과)共ニ(히)尙州聞慶ノ(의)兩郡內ヲ(ᄅᆞᆯ)橫行シ(ᄒᆞ야)到ル所(處)人民ヨリ(에게)食事ヲ(ᄅᆞᆯ)徵發シテ(ᄒᆞ야)暴動ヲ(을)爲シ(ᄒᆞᆷ)

第二被告ハ(ᄂᆞᆫ)同年陰曆八月一日暴徒三十名ヲ(을)率キテ(ᄒᆞ고)聞慶郡聞慶邑內ニ(에)侵入シ(ᄒᆞ야)該暴徒ヲ(ᄅᆞᆯ)指揮シテ(ᄒᆞ야)同邑內巡檢朴時永及朴世鎭ノ(의)各家屋ニ(에)放火シ(ᄒᆞ야)之ヲ(此ᄅᆞᆯ)燒キタルモノナリ(ᄒᆞᆫ者라)

前記事實ハ(은)聞慶憲兵分遣所憲兵上等兵佐佐野勘作ノ(의)逮捕手續書大邱憲兵分隊ニ於ケル(에서ᄒᆞᆫ)被告人調書聞慶郡守ノ(의)被燒戶損害取調書(記錄一八號)徐成允林氏朴寅和ノ(의)各聽取書原審審問調書ニ(에)徵シ(ᄒᆞ야)之ヲ(此ᄅᆞᆯ)認ムルノ(定ᄒᆞᆯ)證憑(이)十分ナリトス(充ᄒᆞᆷ이라)

法律ヲ(을)按スルニ(컨ᄃᆡ)被告カ(가)第一ノ(의)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ニ(에)第二ノ(의)所爲ハ(ᄂᆞᆫ)同法第六百六十六條ニ(에)該當シ(ᄒᆞ고)二罪俱發ナルヲ以テ(뭠으로써)同第百二十九條ニヨリ(에依ᄒᆞ야)重キ(ᄒᆞᆫ)第二ノ(의)罪ニ(에)從ニ(ᄒᆞ야)被告ヲ(ᄅᆞᆯ)絞ニ(에)處ス(ᄒᆞᆷ이)可キモノトス(ᄒᆞᆫ者라)

左レハ(然즉)原裁判所カ(에서)毫モ(末도)酌量減輕ス(ᄒᆞᆷ이)可キ(ᄒᆞᆫ)情狀ナキ(이無ᄒᆞᆫ)被告ニ

(에)對シ(ᄒᆞ야)一等ヲ(을)酌減シ(ᄒᆞ야)役刑終身ニ(에)處シタルハ(ᄒᆞᆷ은)科刑(이)輕キニ(ᄒᆞᆷ에)失シ(ᄒᆞ고)檢事ノ(의)控訴ハ(ᄂᆞᆫ)理由アルヲ以テ(가有ᄒᆞᆷ으로써)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ヨリ(에依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隆熙二年 十二月 一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松下直美 [印]
判事 井浦義久 [印]
判事 金應駿 [印]

隆熙二年 十二月 一日 言渡
於同院
裁判所書記 荒木直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 膝付益吉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도니동都尼洞
농업·주막酒幕, 정흥대鄭興大, 49세

위 피고에 대한 폭동 및 방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융희2년1908 10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피고를 역형종신役刑終身에 처한다고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당 법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의 입회·심리를 행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음.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정흥대를 교수형에 처함.

이유

제1,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9일 이인영李寅榮의 부하로 들어가 화승총 등을 휴대한 동 부하 80여 명과 함께 상주·문경의 두 군내를 횡행하여 도처의 인민들에게 식사를 징발하여 폭동을 행함.

제2, 피고는 동년 음력 8월 1일 폭도 30명을 이끌고 문경군 문경읍내에 침입하여 해당 폭도를 지휘하여 동 읍내 순검 박시영朴時永 및 박세진朴世鎭의 각 가옥에 방화하여 이를 소각한 자이다.

전기한 사실은 문경헌병분견소 헌병상등병 사사노칸사쿠佐佐野勘作의 체포수소거, 대구현병분대에서 한 피고인조서, 문경군수의 피소호손해취조서기록 18호, 서성윤徐成允·임씨林氏·박인화朴寅和의 각 청취서, 원심심문조서에 증거하여 이를 인정할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을 살피건대, 피고의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에, 제2의 소위는 동법 제666조에 해당하고,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됨으로서 동 제129조에 의해 중한 제2의 죄에 따라 피고를 교수형에 처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하니 원재판소에서 조금도 작량하여 감경할 만한 정상이 없는 피고에 대해 1등을 작감하여 역형종신에 처한 것인 부과한 형이 가벼워 실효하고, 감사의 공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2년1908 12월 1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송하직미松下直美 [印]
판사 정포의구井浦義久 [印]
판사 김응준金應駿 [印]

융희2년1908 12월 1일 언도
동 법원에서
재판소서기 황목직荒木直 [印]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함
번역관 슬부익길膝付益吉 [印]

判決書[隆熙二年 刑上第六十四號]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業 農兼酒幕
被告 鄭興大, 四十九年

右暴動及放火被告事件ニ付(에關ᄒᆞ야)隆熙二年十二月一日大邱控訴院ニ於テ(에셔)宣告シタル(ᄒᆞᆫ)判決ニ(에)對シ(ᄒᆞ야)被告ハ(ᄂᆞᆫ)同月三日上告ヲ(ᄅᆞᆯ)申立タリ依テ(ᄒᆞ얏기)本院ハ(은)檢事洪鍾憶ノ(의)意見ヲ(을)聽キ(ᄒᆞ야)判決スル(ᄒᆞᆷ이)左ノ(와)如シ(ᄒᆞᆷ)

主文

原判決ヲ(을)取消シ(ᄒᆞ고)更ニ(히)審問及判決ヲ(을)爲サシムル(行ᄒᆞ기)爲(ᄒᆞ야)本件ヲ(을)大邱控訴院ニ(에)差戻ス(還送ᄒᆞᆷ)

理由

上告趣旨ノ(의)要領ハ(은)大邱控訴院ニ於テ(에셔)宣告セラレタル(ᄒᆞᆫ)第二審判決ハ(은)擬律ニ(에)錯誤アリト(가有ᄒᆞ다)云フニ(ᄒᆞᆷ에)在リ(ᄒᆞᆫ지라)依テ(ᄒᆞ야)原判決ヲ(을)查閱スルニ(ᄒᆞᆫ즉)原審ハ(은)被告ニ(에게)暴動ト(과)放火ノ(의)犯罪行爲アリト(가有ᄒᆞ다)認メ(ᄒᆞ야)數罪俱發例ニ(에)照シ(ᄒᆞ야)放火ノ(ᄒᆞᆫ)所爲ヲ(ᄅᆞᆯ)重トシ(ᄒᆞ다ᄒᆞ야)之ニ(此에)從テ(ᄒᆞ야)處斷シタリ(ᄒᆞᆫ바)而シテ其暴動ノ(의)事實トシテ(이라ᄒᆞ야)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陰七月二十九日李寅榮ノ(의)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火繩銃ヲ(을)携帶シタル(ᄒᆞᆫ)同部下八十餘名ト(과)共ニ(히)尙州聞慶ノ兩郡內ヲ(ᄅᆞᆯ)橫行シ(ᄒᆞ야)到ル所(處)人民ヨリ(에게)食事ヲ(ᄅᆞᆯ)徵發シテ(ᄒᆞ야)暴動ヲ(을)爲シタリト(行ᄒᆞ얏다)事實ヲ(을)認定シ(ᄒᆞ고)之ニ(此에)對シ(ᄒᆞ야)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ヲ(을)適用セリ(ᄒᆞᆫ지라)元來暴動罪ハ(ᄂᆞᆫ)性質上多衆ノ聚合ヲ(을)要スルヤ(ᄒᆞᆷ은勿)論ナシト(이라ᄒᆞ나)雖モ爲ニ(ᄒᆞ야)首從犯ノ(의)區別ナク(업시)彼此同一ニ(히)律スヘキモノナリトノ(ᄒᆞᆯ者라ᄂᆞᆫ)理由ヲ(ᄅᆞᆯ)生セサレハ(치안으면)他法條ニ(에)散見スル(ᄒᆞᆷ과)如ク

(히)暴動律ニ(에)關シテモ(ᄒᆞ야도)亦不分首從云云ノ(의)例外的規定(이不)存セサル(ᄒᆞᆫ)以上ハ(은)同第七十八條乃至八十條ノ(의)規定ヲ(을)適用シ(ᄒᆞ야)首從犯ノ(의區)別ニ(에)從テ(ᄒᆞ야)問擬セサルヘカラス(치아니치못ᄒᆞᆯ지라)而シテ(然)同第六百七十七條ニハ(에ᄂᆞᆫ)右例外的規定アルコトナケレハ(이有ᄒᆞᆷ이無ᄒᆞᆫ즉)暴動罪ニ(에)關シテハ(ᄒᆞ야ᄂᆞᆫ)前揭共犯ノ(의)規定ヲ(을)適用シ(ᄒᆞ야)首從ヲ(을)區別シ(ᄒᆞ야)從犯ノ(의)地位ニ(에)在ル(ᄒᆞᆫ)者ニ(에)對シテハ(ᄒᆞ야ᄂᆞᆫ)同第六百七十七條ノ外(에)更ニ(히)第百三十五條ヲ(ᄅᆞᆯ)適用シ(ᄒᆞ야)首犯ノ(의)律ニ(에)一等ヲ(을)減シ(ᄒᆞ야)處斷セサルヘカラサルモノトス(치아니치못ᄒᆞᆯ者라)果シテ然ラハ(즉)原審カ(이)本件暴動罪ヲ以テ(로써)被告ヲ(ᄅᆞᆯ)律セシニハ(ᄒᆞᆷ에ᄂᆞᆫ爲)先ツ被告ハ(ᄂᆞᆫ)其犯罪行爲ノ首從(에)孰レナルヤノ(何者가된)事實ヲ(을)確定セサルヘカラス(치아니치못ᄒᆞᆯ지라)然ルニ(而)原審カ(이)被告ヲ(ᄅᆞᆯ)問擬スルニ(ᄒᆞᆷ에)單ニ(히)第六百七十七條ヲ以テセシヨリ(로써ᄒᆞᆷ을)觀察スレハ(ᄒᆞ면)被告ハ(ᄂᆞᆫ)本件暴動罪ノ(의)首犯ナリト(이라)認定セラレタルモノ(ᄒᆞᆫ者와)如ク(히)認メ得ヘシ(ᄒᆞᆯ지오)又事實認定ノ(의)摘示ニハ(에ᄂᆞᆫ)反テ(히)被告ハ(ᄂᆞᆫ)李寅榮ノ(의)部下ニ(에)投入シ云云トアリ(이라ᄒᆞ니)部下ニ(에)投入シタル(ᄒᆞᆫ)關係事實ヲ以テ(로써)直ニ(히)被告ヲ(ᄅᆞᆯ)(指)目スルニ(ᄒᆞ기를)本件暴動罪ノ(의)下手者卽從犯ナリトスルニハ(이라ᄒᆞᆷ에ᄂᆞᆫ)(不)足ラサルモ(ᄒᆞ나)玆ニ(에)主從ノ(의)關係ヲ(ᄅᆞᆯ)生シタル(ᄒᆞᆫ)事實ト(과)被告カ(가)同部下八十餘名ト(과)共ニ(히)暴動ヲ(을)爲シタリトノ(行ᄒᆞ얏다ᄂᆞᆫ)摘示ニ(에)徵スレハ(ᄒᆞᆫ즉)李寅榮ハ(은)其造意者又ハ(ᄂᆞᆫ)指揮者トシテ(로ᄒᆞ야)首犯ノ(의)地位ヲ(ᄅᆞᆯ)占メ(ᄒᆞ고)被告ハ(ᄂᆞᆫ)下手者タル(된)從犯ノ(의)地位ニ(에)在リシ(ᄒᆞᆫ)事實ナルカ(됨과)如ク(히)認メ得ラル(ᄒᆞᆯ지라)果シテ(然)原審カ(이)被告ヲ(ᄅᆞᆯ)首犯ナリト(이라)認メタランカ(하얏다ᄒᆞᆯ진대)理由ノ(의)明示ヲ(ᄅᆞᆯ)缺キタル(ᄒᆞᆫ)不法アリ(이有ᄒᆞ고)又從犯ナリト(이라)認メタランカ(ᄒᆞ얏다ᄒᆞᆯ진ᄃᆡ)前示第百三十五條ノ(의)適用ヲ(을)爲サリシ(行치아니ᄒᆞᆫ)擬律錯誤アルヲ(가有ᄒᆞᆷ을)(不)免レス(ᄒᆞᆯ지라)要スルニ(컨ᄃᆡ)原判決ハ(은)被告ヲ(ᄅᆞᆯ)首從犯ノ(의)孰レニ(何者로)認定セシカ(하얏ᄂᆞᆫ지)事實ノ(의)認定(이)明確ヲ(을)缺キ(ᄒᆞ고)擬律ノ(의)當否ヲ(ᄅᆞᆯ)調査スルニ(ᄒᆞᆷ에)(不)由ナキヲ以テ(ᄒᆞᆷ으로써)結局理由不備ノ(의)違法アル(이有ᄒᆞᆫ)判決ニシテ(이니)本上告ハ(ᄂᆞᆫ)其理由アルモノトス(가有ᄒᆞᆫ者라)(然)而シテ右事實ヲ(을)審理確定セシムル(케ᄒᆞᆯ)必要アリト(가有ᄒᆞ다)認ムルヲ以テ(ᄒᆞᆷ으로써)本院ハ(은)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第四十條ニ(에)則リ(ᄒᆞ야)原判決ヲ(을)取消シ(ᄒᆞ고)更ニ(히)審判セシムル(케ᄒᆞ기)爲(ᄒᆞ야)本件ヲ(을)大邱控訴院ニ(에)差戻スヘキモノト(還送ᄒᆞᆷ을可ᄒᆞᆯ者라)評決ス(홈)

隆熙二年 十二月 十八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渡邊暢
判事 鄭寅興
判事 洪祐晳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 高島五八

右는原本에依ᄒᆞ야此謄本을作成홈
隆熙二年 十二月 二十四日
大審院에셔
裁判所書記 朴容觀 [印]

판결서 [융희2년1908 형상 제64호]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도니동都尼洞
농업·주막酒幕, 피고 정흥대鄭興大 49세

위 폭동 및 방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융희2년1908 12월 1일 대구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동월 3일 상고를 제기하였기에 본 법원은 검사 홍종억洪鍾檍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결한 것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문 및 판결을 행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대구공소원에 반려함.

이유

상고 취지의 골자는 대구공소원에서 선고한 제2심 판결은 의율擬律에 착오가 있다고 한 것에 있기에 원판결을 사열査閱하니 원심은 피고에게 폭동과 방화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죄구발數罪俱發의 예시에 비추어 방화의 소위를 중하다고하여 이에 따라 처단하였으나, 그 폭동의 사실로서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9일 이인영李寅榮의 부하로 들어가 화승총을 휴대한 동 부하 80여 명과 함께 상주·문경 두 군내를 횡행하여 도처의 인민들에게 식사를 징발하여 폭동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前段을 적용한 것인데, 원래 폭동죄는 성질상 다중의 취합을 요함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수종범의 구별 없이 피차 동일하게 과율科律 할 자라는 이유를 내지 않으면 타 법조에 산견散見됨과 같이 폭동율에 관하여도 또한 수범과 종범이 불분명하다고 운운하는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동 제78조 내지 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종범의 구별에 따라 문의問擬하지 못함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동 제677조에는 위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아니하니 폭동죄에 관해서는 앞에 게시한 공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종을 구별하여 종범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제677조 외에 다시 제135조를 적용하여 수범의 율에 1등을 감하여 처단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과연 그러한 즉 원심이 본 사건 폭동죄로서 피고를 과율함에는 우선 피고는 그 범죄행위의 수종 가운데 무엇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하니 원심이 피고를 문의함에 단지 제677조로서 함을 관찰하면 '피고는 본 사건 폭동죄의 수범이라 인정한 것'과 같이 인식 할 것이고, 또 사실인정의 적시摘示에는 도리어 피고는 이인영의 부하로 들어갔다고 하니 부하로 들어갔다고 하는 관계사실로서 곧장 피고를 지목하기를 본 사건 폭동죄의 하수자, 즉 종범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에 주종의 관계를 낸 사실과 피고가 동 부하 80여 명과 함께 폭동을 행하였다는 적시에 징험하니, 이인영은 그 조의자造意者 또는 지휘자로서 수범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하수자로서 종범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인식되어 과연 원심이 피고를 수범이라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유의 명시를 흠결한 불법이 있고, 또 종범이라 인식하였다 하여도 앞에 보인 제135조의 적용을 행하지 않은 의율착오가 있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요컨대 원판결은 피고를 수종범 가운데 누구로 인정하였는지 사실의 인정에 명확함을 잃었고, 의율의 당부를 조사함에 말미암지 않았기에 결국 이유가 갖춰지지 않은 위법이 있는 판결이니 본 상고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사실을 심리 확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본 법원은 민·

형소송규칙 제42조·제33조·제40조에 의거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대구공소원에 반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평결評決함.

융희2년1908 12월 18일
대심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도변창渡邊暢
판사 정인흥鄭寅興
판사 홍우석洪祐晳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석천정石川正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위는 원본에 의하여 이 등본을 작성함
융희2년1908 12월 24일
대심원에서
재판소서기 박용관朴容觀 [印]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業 農兼酒幕

被告 鄭興大, 年五十

右被告에對ᄒᆞᆫ暴動及放火事件에關ᄒᆞ야隆熙二年十月十九日大邱地方裁判所에셔被告를役刑終身에處ᄒᆞᆷ으로宣告ᄒᆞᆫ判決에對ᄒᆞ야該所檢事가控訴를申提ᄒᆞ얏기本院에셔檢事大村大代의立會審理를行ᄒᆞᆫ判決이左와如ᄒᆞᆷ

主文

原判決은繳消ᄒᆞ고被告鄭興大를絞에處ᄒᆞᆷ

事實及理由

第一被告ᄂᆞᆫ隆熙元年陰曆七月二十九日에暴徒首魁李寅榮의部下에投入ᄒᆞ야副首魁金龍伯의指揮를受ᄒᆞ고火繩銃等을携帶ᄒᆞᆫ同部下八十餘名과共히尙州聞慶兩郡內에橫行ᄒᆞ야到處人民에게食事를徵發ᄒᆞ야暴動을行ᄒᆞᆷ

第二被告ᄂᆞᆫ同年陰曆八月一日暴徒三十名을率ᄒᆞ고聞慶郡邑內에侵入ᄒᆞ야意思를繼續ᄒᆞ야該暴徒를指揮ᄒᆞ야同邑內巡檢朴時永及朴世鎭의家屋에放火ᄒᆞ야此를燒ᄒᆞᆫ者라

右記事實은聞慶憲兵分遣所憲兵上等兵佐佐野勘作의逮捕手續書大邱憲兵分隊에셔ᄒᆞᆫ被告人調書聞慶郡守의被燒戶損害取調書徐成允林氏朴寅和의各聽取書原審審問調書에徵ᄒᆞ야此를認定ᄒᆞᆯ證憑이充分ᄒᆞᆷ

此를法律에照ᄒᆞ니被告의第一所爲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에該當ᄒᆞᆫ바從犯됨으로써同法第百三十五條에依ᄒᆞ야一等을減ᄒᆞ고第二의所爲ᄂᆞᆫ同法第六百六十六條에該當ᄒᆞᆫ바二罪俱發됨으로써同法第百二十九條에依ᄒᆞ야重ᄒᆞᆫ第二의罪를從ᄒᆞ야被告를絞에處ᄒᆞᆷ이可ᄒᆞᆫ者라ᄒᆞᆷ

以上의理由로原裁判所에셔被告第一所爲에對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ᆷ은大當ᄒᆞ고且重ᄒᆞᆫ第二의所爲에對ᄒᆞ야酌量減輕ᄒᆞᆯ情狀이無ᄒᆞᆫ디一等을酌減ᄒᆞ야被告를役刑終身에處ᄒᆞᆷ은科刑이輕ᄒᆞᆷ에失ᄒᆞ고檢事의控訴ᄂᆞᆫ理由가有ᄒᆞᆷ으로써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에依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隆熙三年 二月 九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松下直美
判事 前澤成美
判事 金應駿
隆熙三年 二月 九日 言渡
於同院
裁判所書記 荒木直

右謄本也
隆熙三年 三月 三十日
於同院
裁判所書記 田邊八五郎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도니동都尼洞
농업·주막酒幕, 피고 정흥대鄭興大 50세

위 피고에 대한 폭동 및 방화사건에 관하여 융희2년1908 10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피고를 역형종신役刑終身에 처한다고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해당 재판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본 법원에서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의 입회심리를 행한 판결이 다음과 같음.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정흥대를 교수형에 처함

사실과 이유

제1,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9일에 폭도 수괴 이인영李寅榮의 부하로 들어가 부

수괴 김용백金龍伯의 지휘를 받고 화승총 등을 휴대한 동 부하80여 명과 함께 상주·문경 두 군내에 횡행하여 도처의 인민들에게 식사를 징발하여 폭동을 행함.

제2, 피고는 동년 음력 8월 1일 폭도 30명을 이끌고 문경군 읍내에 침입하여 의사를 계속하여 해당 폭도를 지휘하여 동 읍내 순검 박시영朴時永 및 박세진朴世鎭의 가옥에 방화하여 이를 소각한 자이다.

위 기록한 사실은 문경헌병분견소 헌병상등병 좌좌야감작佐佐野勘作의 체포수속서, 대구헌병분대에서 한 피고인조서, 문경군수의 피소호손해취조서, 서성윤徐成允·임씨林氏·박인화朴寅和의 각 청취서, 원심심문조서에 증거하여 이를 인정 할 증빙이 충분함.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제1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에 해당한 바 종범이 됨으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1등을 감하고, 제2의 소위는 동법 제666조에 해당한바 두 가지 죄가 모두 발생 되었기에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중한 제2의 죄에 따라 피고를 교수형에 처함이 옳을 것이라 함.

이상의 이유로 원재판소에서 피고 제1 소위에 대하여 수종을 분간하지 않음은 크게 맞고, 또 중한 제2의 소위에 대하여 작량감경 할 정상이 없는데 1등을 작감하여 피고를 역형종신에 처한 것은 과형이 가벼움에 실효하고, 검사의 공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3년1909 2월 9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송하직미松下直美
판사 전택성미前澤成美
판사 김응준金應駿

융희3년1909 2월 9일 언도
동 법원에서
재판소서기 황목직荒木直

위는 등본임

융희3년1909 3월 30일
동 법원에서
재판소서기 전변팔오랑田邊八五郎 [印]

判決書 [隆熙三年 刑上第二十九號]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居
農兼酒幕, 被告 鄭興大, 五十年

右暴動及放火被告事件ニ付(으로)隆熙三年二月九日(에)大邱控訴院ニ於テ(에셔)宣告シタル(ᄒᆞᆫ)判決ニ(에)對シ(ᄒᆞ야)同日被告ヨリ(로부터)上告ヲ(ᄅᆞᆯ)申立タリ衣テ(提ᄒᆞ얏기)本院ハ(은)檢事洪鍾檍ノ(의)意見ヲ(을)聽キ(ᄒᆞ야)判決スル(ᄒᆞᆷ이)左ノ(와)如シ(ᄒᆞ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上告趣旨ノ(의)要領ハ(은)大邱控訴院ニ於テ(에셔)暴動及放火事件ニ付(으로)被告ニ(에)對シ(ᄒᆞ야)宣告セラレタル(ᄒᆞᆫ)判決ハ(은)擬律ニ(에)錯誤アリト(가有ᄒᆞ다)云フニ(ᄒᆞᆷ에)在リ依テ(ᄒᆞᆫ지라ᄒᆞ야)原判決ヲ(을)查閱スルニ(ᄒᆞᆷ이)原審ハ(은)職權ニ(에)基キ(ᄒᆞ야)判決書(에)所載ノ(ᄒᆞᆫ)證據ヲ(ᄅᆞᆯ)綜合シ(ᄒᆞ야)第一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陰曆七月二十九日(에)暴徒首魁李寅榮ノ(의)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副首魁金龍伯ノ(의)指揮ヲ(ᄅᆞᆯ)受ケ(ᄒᆞ야)火繩銃等ヲ(을)携帶シ(ᄒᆞ고)同部下八十餘名ト(과)共ニ(히)尙州聞慶兩郡內ヲ(ᄅᆞᆯ)橫行シ(ᄒᆞ야)人民ヨリ(에게)食事ヲ(ᄅᆞᆯ)徵發シテ(ᄒᆞ야)暴動ヲ(을)爲シ(作ᄒᆞ고)第二被告ハ(ᄂᆞᆫ)同年陰曆八月一日(에)暴徒三十名ヲ(을)率キテ(ᄒᆞ고)聞慶郡邑內ニ(에)侵入シ(ᄒᆞ야)意思ヲ(ᄅᆞᆯ)繼續シテ(ᄒᆞ야)該暴徒ヲ(ᄅᆞᆯ)指揮シ(ᄒᆞ야)同邑內巡檢朴時榮ト(과)朴世鎭ト ノ(의)家屋ニ(에)放火セシメ(케ᄒᆞ야)之ヲ(此ᄅᆞᆯ)燒キタル(ᄒᆞᆫ)旨ノ(의)事實ヲ(을)認メ(ᄒᆞ야)第一ノ(의)所爲ニ(에)對シテハ(ᄒᆞ야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ヲ(을)適用シ(ᄒᆞ야)從犯ナルヲ以テ(됨으로써)同法第百三十五條ニ

(에)依リ(ᄒᆞ야)一等ヲ(을)減シ(ᄒᆞ고)第二ノ(의)所爲ニ(에)對シテハ(ᄒᆞ야ᄂᆞᆫ)同法第六百六十六條ヲ(ᄅᆞᆯ)適用シ(ᄒᆞ야)二罪俱發スルヲ以テ(임으로써)同法第百二十九條ニ(에)依リ(ᄒᆞ야)重キ(ᄒᆞᆫ)第二ノ(의)罪ニ(ᄅᆞᆯ)從ヒ(ᄒᆞ야)被告ヲ(ᄅᆞᆯ)絞ニ(에)處スヘキモノナリト(ᄒᆞᆫ者ㅣ라)判決シタルモノナレハ(ᄒᆞᆫ者ㅣ니)原判決ハ(은)合法ニシテ(ᄒᆞ고)毫モ(도)擬律ニ(에)錯誤ラサルヲ以テ(가有치아니ᄒᆞᆷ으로써)被告ノ(의)上告ハ(ᄂᆞᆫ)其理由アラサルモノトス(가無ᄒᆞᆫ者ㅣ라)依テ(因ᄒᆞ야)本院ハ(ᄂᆞᆫ)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前段ニ(에)則リ(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隆熙三年 二月 二十四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渡邊暢
判事 鄭寅興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判事 咸台永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ᄒᆞᆷ
繙譯官 高島五八

右謄本也
隆熙三年 三月 一日
大審院에셔
裁判所書記 李豊求 [印]

판결서 [융희3년1909 형상제29호]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도니동都尼洞 거주
농업·주막酒幕, 피고 정흥대鄭興大 50세

위 폭동 및 방화 피고사건으로 융희3년1909 2월 9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동일同日 피고로부터 상고를 제기 한 것에 의해 본 법원은 검사 홍종억洪鍾檍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결한 것이 다음과 같음.

주문

본 사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이유

상고 취지의 골자는 대구공소원에서 폭동 및 방화사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의율擬律에 착오가 있다고 함에 있었기 때문에 원판결을 사열査閱하니, 원심은 직권에 기초하여 판결서에 소재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1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9일에 폭도 수괴 이인영李寅榮의 부하로 들어가 부수괴 김용백金龍伯의 지휘를 받고 화승총 등을 휴대하고 동 부하 80여 명과 함께 상주·문경 두 군내를 횡행하여 인민들에게 식사를 징발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제2 피고는 동년 음력 8월 1일에 폭도 30명을 이끌고 문경군 읍내에 침입하여 의사를 계속해 해당 폭도들을 지휘하여 동 읍내 순검 박시영朴時榮과 박세진朴世鎭의 가옥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燒燬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여, 제1의 소위에 대해서는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을 적용하여 종범이 됨으로써 동법 제135조에 의해 1등을 감하고, 제2의 소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666조를 적용하여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한 것임으로 동법 제129조에 의해 중한 제 2의 죄를 따라 피고를 교수형에 처해야 할 자라고 판결 한 자이니, 원판결은 합법하고 조금도 의율에 착오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는 자라는 것에 의해 본 법원은 민·형소송규칙 제42조·제33조 전단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3년1909 2월 24일
대심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도변창渡邊暢
판사 정인흥鄭寅興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석천정石川正

판사 함태영咸台永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함

번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위는 등본임

융희3년1909 3월 1일

대심원에서

재판소서기 이풍구李豊求 [印]

■ **정흥대 판결문**(1908년 10일 19일 대구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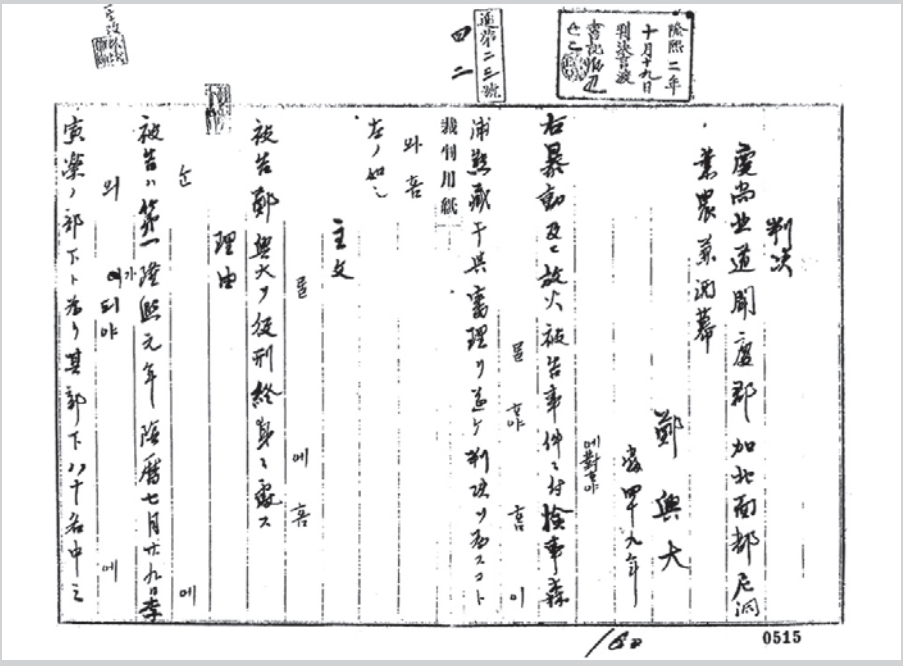

判決
慶尚北道尙州郡加北面新昌洞
農業 鄭興大
當四十九年
右ノ者ニ對スル保安法違犯被告事件ニ付檢事森浦勘藏干與審理ヲ遂ケ判決ヲ爲スコト
裁判所
如左
主文
被告鄭興大ヲ絞刑ニ處ス
理由
被告ハ第一隆熙元年陰曆七月廿九日寺
洞ノ義兵ノ部下ト稱シ其部下ノ十名中ニ
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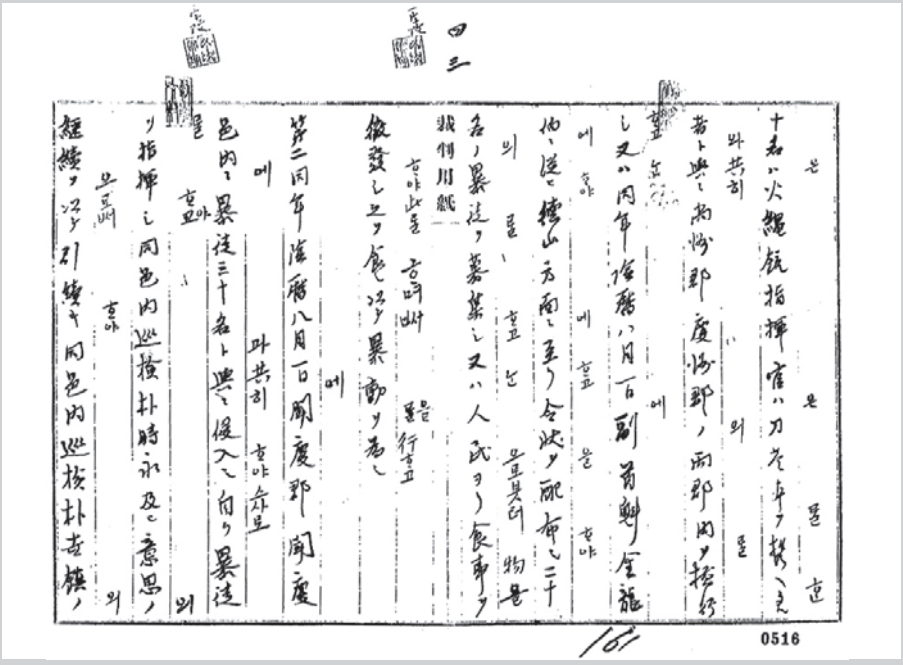

十名ハ火繩銃指揮官ハ刀劍ヲ携ヘ其
餘ハ各自ニ兵器ヲ携帶シ其部下ヲ率ヒ
若干ノ物品ヲ強奪スル爲メ慶尚郡ノ兩郡內ヲ指シ
テ出發シ又ハ同年陰曆八月一日尙州郡牛
面ノ德山方面ニ至リ金旌
他ノ徒ト德山方面ニ至リ金旌
ノ義徒三十名ト共ニ侵入シ自ラ義徒
名ノ義徒ヲ募集シ又ハ人民ヲシテ食事ヲ
裁判所
徵發シ之ヲ給與シ義勇ヲ募シ
第二同年陰曆八月一日尙州郡開慶
邑內ニ義徒三十名ト共ニ侵入シ自ラ義徒
ノ指揮ヲ以テ邑內ヲ巡撿ヲ時ニ及ヒ意思ノ
經緯ヲ以テ邑內ヲ巡撿ヲ時ニ
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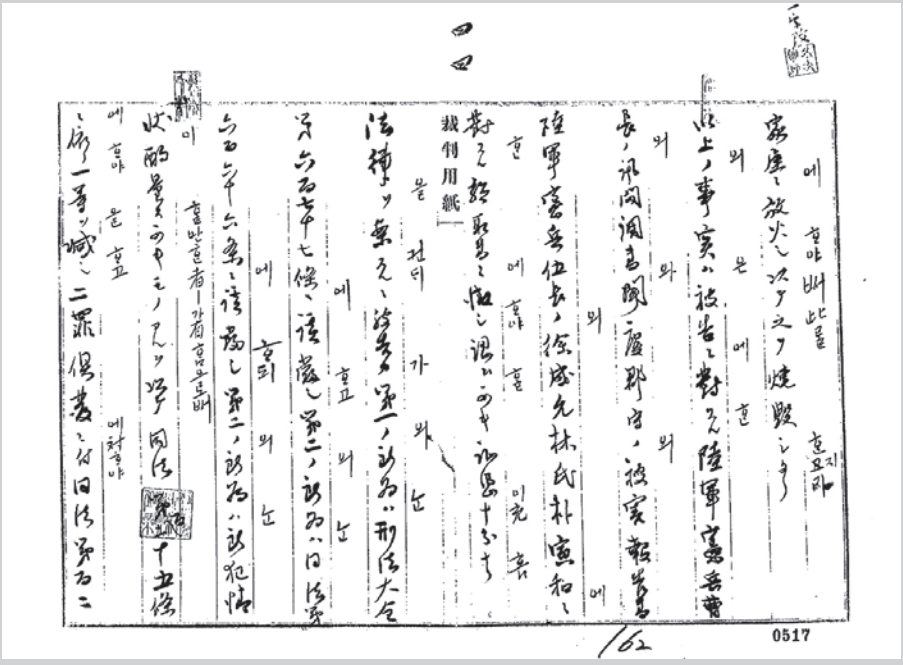

裁判用紙

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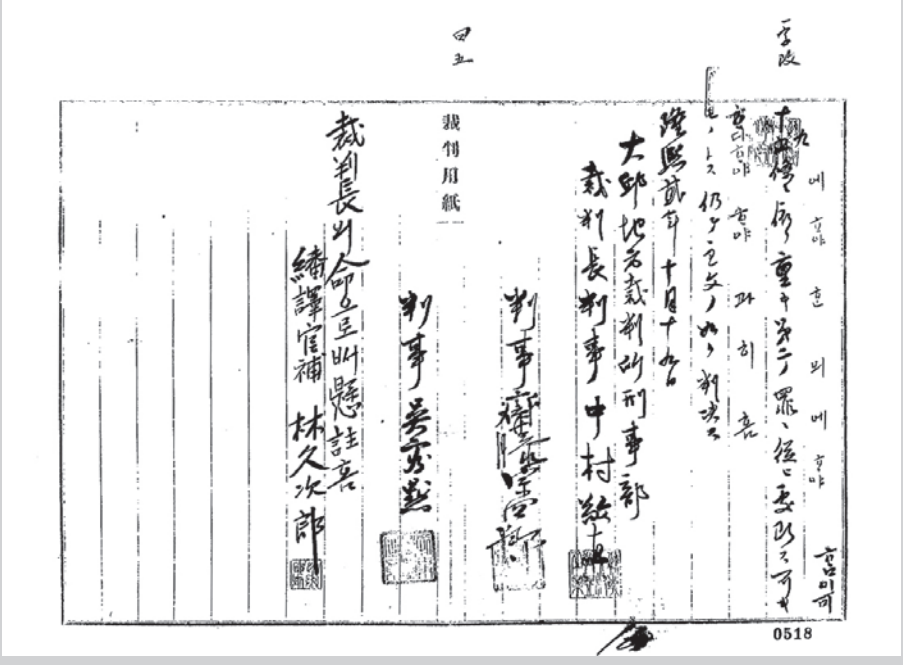

裁判用紙

0518

■ **정흥대 판결문**(1908월 12월 1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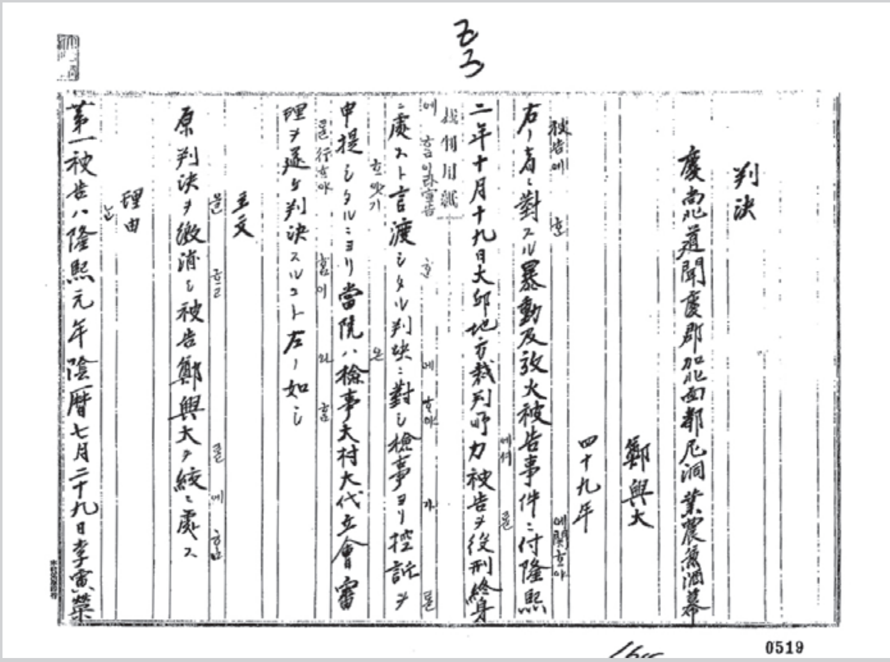
判決
慶尚北道聞慶郡加北面都尼洞[illegible]
鄭與大
四十九年
右ノ者ニ對スル暴動及放火被告事件ニ付隆熙
二年十月十九日大邱地方裁判所カ被告ヲ役刑終身
ニ處スト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檢事ヨリ控訴ヲ
申提シタルニヨリ當院ハ檢事大村大代立會審
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徹消シ被告鄭與大ヲ絞ニ處ス
理由
第一被告ハ隆熙元年陰曆七月二十九日李雷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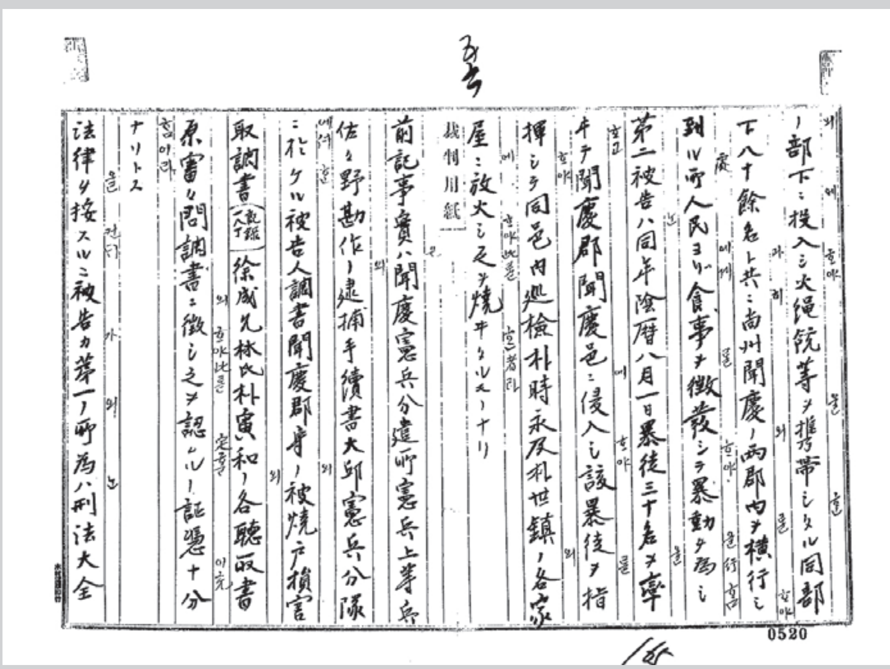
ノ部下ニ投入シ火縄銃等ヲ携帶シタル同部
下八十餘名ト共ニ尚州聞慶ノ兩郡内ヲ横行シ
到ル所人民ヨリ食事ヲ徵發シテ暴動ヲ為シ
第二被告ハ同年陰曆八月一日暴徒三十名ヲ率
キテ聞慶郡聞慶邑ニ侵入シ該暴徒ヲ指
揮シテ同邑内巡檢朴時永及礼世鎮ノ各家
屋ニ放火シ之ヲ燒キタルモノナリ
前記事實ハ聞慶憲兵分遣所憲兵上等兵
佐々野勘作ノ逮捕手續書大邱憲兵分隊
ニ於ケル被告人調書聞慶郡守ノ被燒戸損害
取調書徐成九林氏朴寅和ノ各聽取書
原審ノ問調書ニ徵シ之ヲ認ムル証憑十分
ナリトス
法律ヲ按スルニ被告カ第一ノ所為ハ刑法大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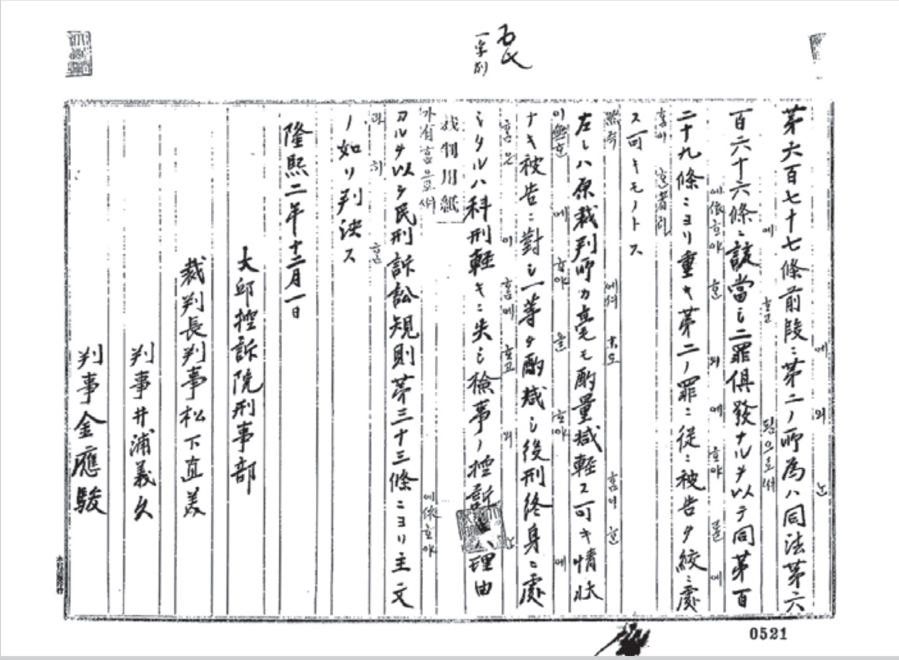

第六百七十七條前段ニ第二ノ所爲ハ同法第六
百六十六條ニ該當シ二罪俱發ナルヲ以テ同第百
二十九條ニヨリ重キ第二ノ罪ニ從ヒ被告ヲ絞罪
ス可キモノトス
左レハ原裁判所カ毫モ酌量減輕ス可キ情狀
ナキ被告ニ對シ一等ヲ酌減シ役刑終身ニ處
シタルハ科刑輕キニ失シ檢事ノ控訴ハ理由
アルヲ以テ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ヨリ主文
ノ如ク判決ス
隆熙二年十二月一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松下直美
判事 井浦義久
判事 金應駿

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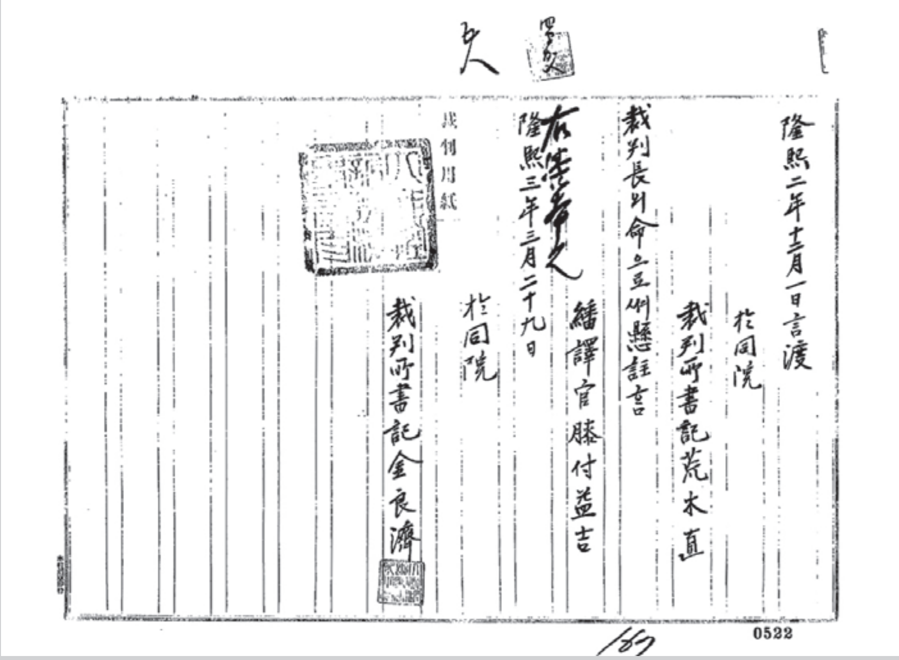

隆熙二年十二月一日言渡
於同院
裁判所書記 荒木直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言
繙譯官 藤付益吉
隆熙三年三月二十九日
於同院
裁判所書記 金良濟

0522

■ **정흥대 판결문**(1908월 12월 18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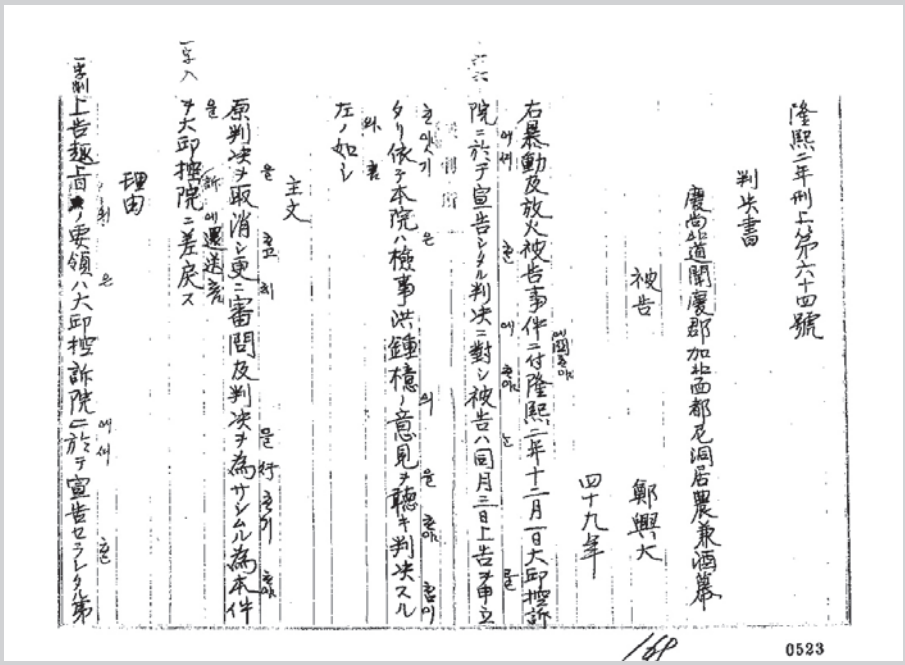

隆熙二年刑上第六十四號

判決書

慶尚北道聞慶郡加北面都老洞居農兼酒幕

被告　鄭興大

四十九年

右暴動及放火被告事件ニ付隆熙二年十二月一日大邱控訴院ニ於テ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ハ同月三日上告申立タリ依テ本院ハ檢事洪鍾檍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シ更ニ審問及判決ヲ爲サシムル爲本件ヲ大邱控訴院ニ還送ス

理由

上告趣旨ノ要領ハ大邱控訴院ニ於テ宣告セラレタル第

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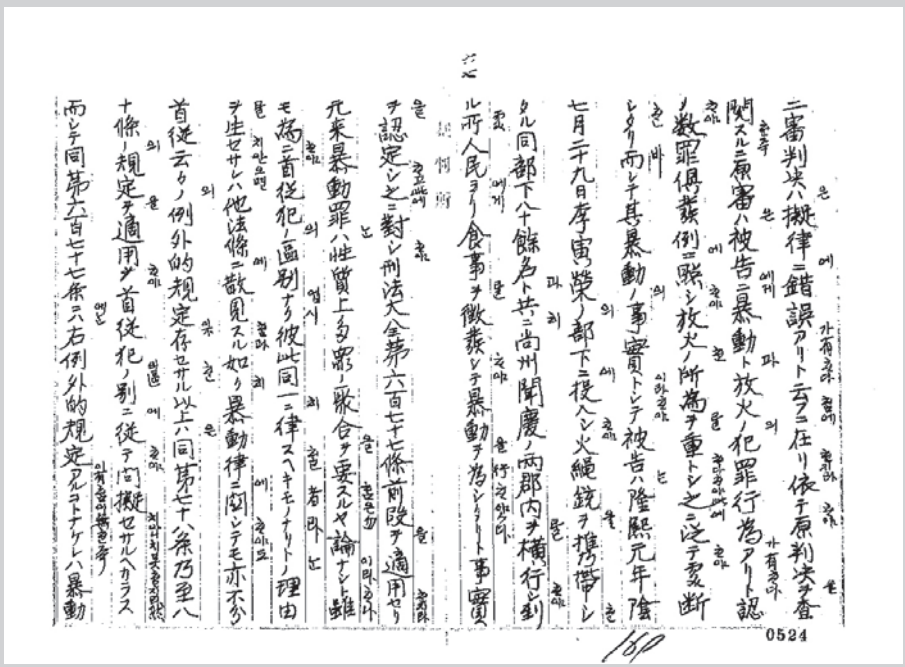

二審判決ハ擬律ニ錯誤アリト云フニ在リ依テ原判決ヲ查閱スルニ原審ハ被告ニ暴動ト放火ノ犯罪行爲アリト認メ數罪俱發例ニ照シ放火ノ所爲ヲ重トシ之ニ從テ處斷シタリ而シテ其暴動ノ事實トシテ被告ハ隆熙元年陰七月二十九日李寅榮ノ部下ニ投入シ火繩銃ヲ携帶シタル同部下ノ餘黨ト共ニ尚州聞慶ノ兩郡内ヲ横行シ到ル所人民ヲシテ食事ヲ徵發シテ暴動ヲ爲シタリト事實ヲ認定シ之ニ對シ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ヲ適用セリ元來暴動罪ハ性質上多衆ノ聚合ヲ要スルヤ論ナシト雖モ爲メ首從犯ノ區別ナク彼此同一ニ律スヘキモノナリトノ理由ヲ以テセサレハ他法條ニ散見スル如ク暴動律ニ關シテモ亦不分首從云フノ例外的規定存セサル以上ハ同第七十八條乃至ハ十條ノ規定ヲ通用シ首從犯ノ別ニ從テ問擬セサルヘカラス而シテ同第六百七十七條ハ右例外的規定ニアラサルコトナケレハ暴動

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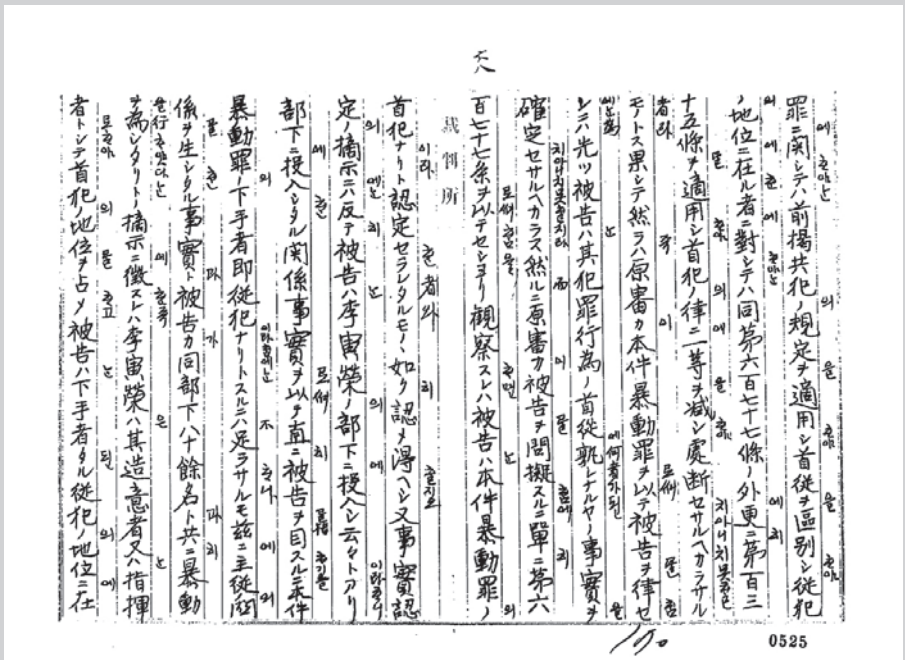

罪ニ関シテハ前掲共犯ノ規定ヲ適用シ首従ヲ区別シ従犯
ノ地位ニ在ル者ニ対シテハ同第六百七十七條ノ外更ニ第百三
十五條ヲ適用シ首犯ノ律ニ一等ヲ減ス處断セサルヘカラサル
モノトス果シテ然ラハ原審カ本件暴動罪ヲ以テ被告ヲ律セ
レシハ光ツ被告ハ其犯罪行為ノ首従孰レナルヤノ事實ヲ
確定セサルヘカラス然ルニ原審カ被告ヲ問擬スルニ單ニ第六
百七十七条ヲ以テセシヨリ観察スレハ被告ハ本件暴動罪ノ
裁判所
者ト
首犯ナリト認定セラレタルモノ如シ認メ得ヘシ又事實認
定補示ニ反テ被告ハ李寅榮ノ部下ニ投入シ云々トアリ
部下ニ投入シタル関係事實ヲ以テ直ニ被告ヲ目スルニ来件
暴動罪ノ下手着即従犯ナリトスルニハ足ラサルモ茲ニ主従ノ
係ヲ生シタル事實ト被告カ同部下八十餘名ト共ニ暴動
ヲ行ヒタルノ
ヲ為シタリトノ補示ニ徴スレハ李寅榮ハ其造意者又ハ指揮
者トシテ首犯ノ地位ヲ占メ被告ハ下手着タル従犯ノ地位ニ在

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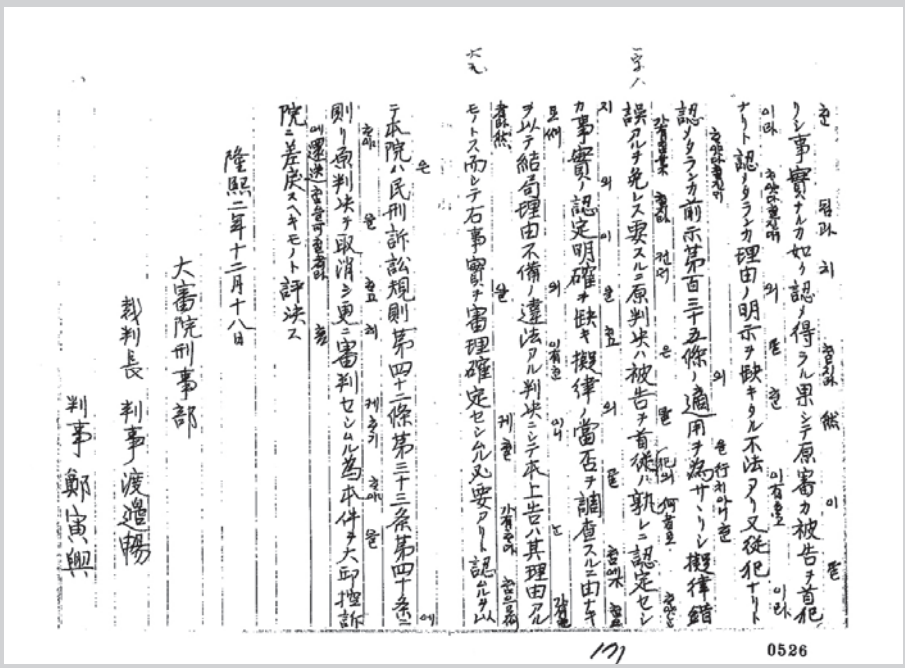

ル事實ナルカ如シ認メ得ラル果シテ原審カ被告ヲ首犯
ナリト認メタルカ理由ノ明示ヲ缺キタル不法アリ又従犯ナリト
認メタルカ前示第百三十五條ノ適用ヲ為サヽリシ擬律錯
誤アルヲ免レス要スルニ原判決ハ被告ヲ首従ノ孰レニ認定セン
カ事實ノ認定明確ヲ缺キ擬律ノ當否ヲ調査スルニ由ナキヲ以テ
結局理由不備ノ違法アル判決ニシテ本上告ハ其理由アル
ヲ以テ結局理由不備ノ違法アル判決ニシテ本上告ハ其理由アル
モノトス而シテ右事實ヲ審理確定セシムル必要アリ認ルヲ以
テ本院ハ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条第四十条ニ
則リ原判決ヲ取消シ更ニ審判セシムル為本件ヲ大邱地方
院ニ差戻スヘキモノト評決ス

隆熙二年十二月十八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渡邊暢

判事　鄭寅燮

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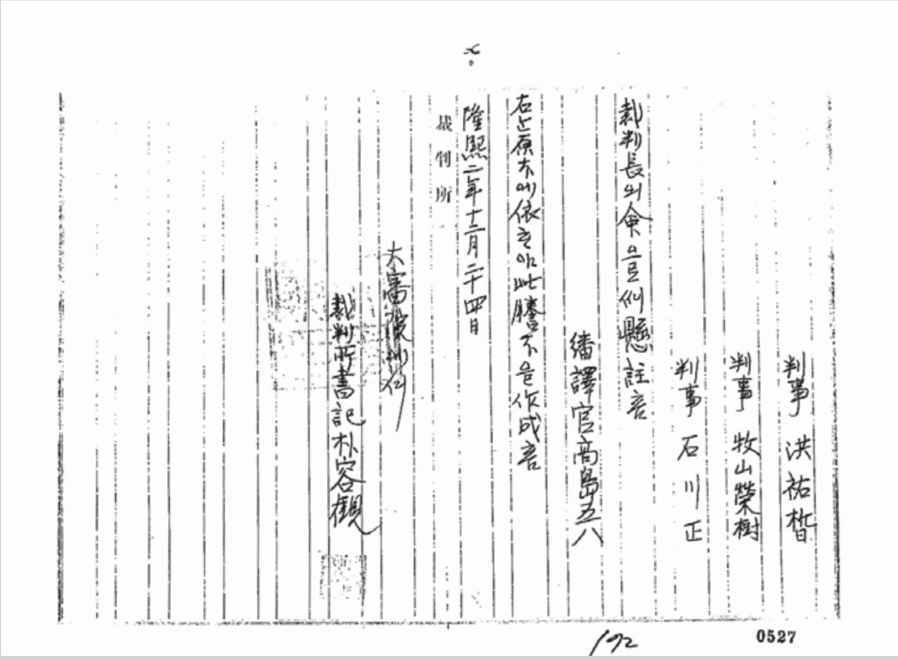

判事 洪祐晳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裁判長의 命을 依하야 懸註함
通譯官 高島五八
右는 原本에 依하야 此謄本을 作成함
隆熙二年十二月二十四日
裁判所
大審院
裁判所書記 朴容觀

172 0527

■ **정흥대 판결문**(1909월 2일 9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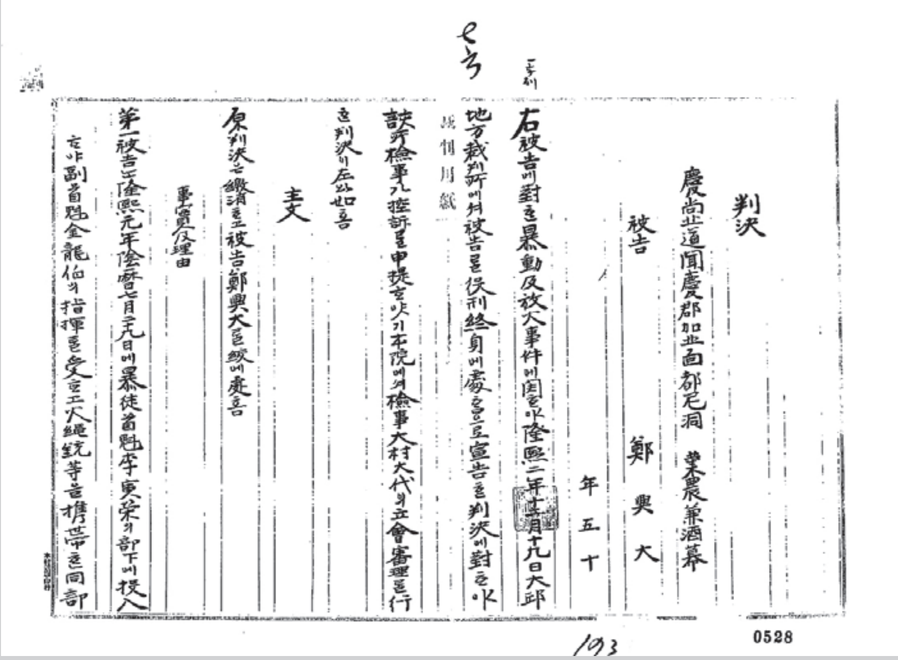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都尼洞 農業兼酒幕
被告 鄭興大
年五十
右被告에對한暴動及放火事件에關하야隆熙二年十二月十九日大邱地方裁判所에서被告를絞刑終身에處함으로宣告한判決에對하야被告와檢事가控訴를申提하엿기로本院에서檢事大村大代의立會審理를行함
裁判所
判決이左와如함
主文
原判決은取消하고被告鄭興大를絞에處함
事實及理由
第一 被告는隆熙元年陰曆七月九日에暴徒首魁李康秊의部下에投入하야
副首魁金龍伯의指揮를受하고火繩銃等을携帶하고同部

173 0528

七七

下八十餘名과共히尙州聞慶兩郡內에橫行ᄒᆞ야到處人民에게食事를
徵發ᄒᆞ야暴動을行ᄒᆞᆷ
第二被告ᄂᆞᆫ同年陰曆八月日暴徒三十名을率ᄒᆞ고聞慶郡邑內에侵入
ᄒᆞ야意思를繼續ᄒᆞ야該暴徒를指揮ᄒᆞ야同邑內巡檢朴時永及
朴世鎭의家屋에放火ᄒᆞ야此를燒ᄒᆞᆫ者라
右記事實은聞慶憲兵分遣所憲兵上等兵佐々野勘作의逮捕手
續書、大邱憲兵分隊에셔ᄒᆞᆫ被告人調書、聞慶郡守의被燒戶損害取
調書、徐成允、林氏、朴寅和의合聽取書、原審々問調書에徵ᄒᆞ야此를認
定ᄒᆞᆷ이證憑이充分ᄒᆞᆷ
此를法律에照ᄒᆞ니被告의第一所爲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에該當ᄒᆞᆫ
바從犯된ᄌᆞᆯ노ᄡᅥ同法第百三十五條에依ᄒᆞ야一等을減ᄒᆞ고第二의所爲ᄂᆞᆫ同法
第六百六十六條에該當ᄒᆞᆫ바二罪俱發된ᄌᆞᆯ노ᄡᅥ同法第百二十九條에依ᄒᆞ야
重ᄒᆞᆫ第二의罪를從ᄒᆞ야被告를絞에處ᄒᆞᆷ이可ᄒᆞᆫ者라ᄒᆞᆷ
以上의理由로原裁判所에셔被告第一所爲에對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illegible]

至訂

0529

17X

七八

ᄒᆞ고且重ᄒᆞᆫ第二의所爲에對ᄒᆞ야酌量減輕ᄒᆞᆯ情狀이無ᄒᆞᆷ에一等을酌減ᄒᆞᆫ
바被告를役刑終身에處ᄒᆞᆷ은科刑이輕ᄒᆞᆷ에失ᄒᆞ고檢事의控訴ᄂᆞᆫ理由가有ᄒᆞᆫ
ᄌᆞᆯ노ᄡᅥ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에依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隆熙三年二月九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松下直美

判事 前澤成美

判事 金應駿

隆熙三年二月九日言渡

於同院

裁判所書記 荒木 直

右謄本也

隆熙三年三月三十日

於同院

0530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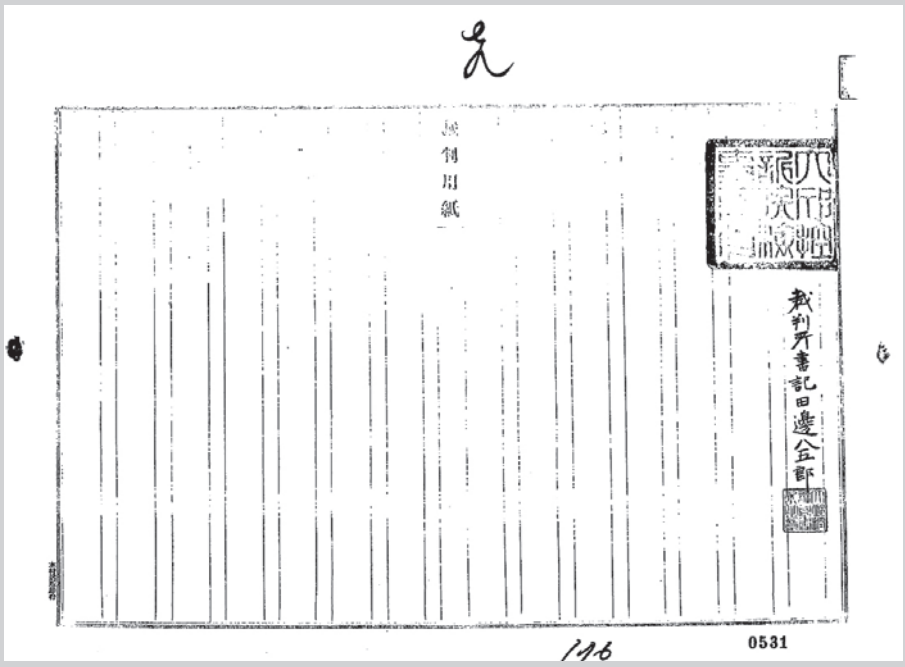

■ **정흥대 판결문**(1909년 2월 24일 대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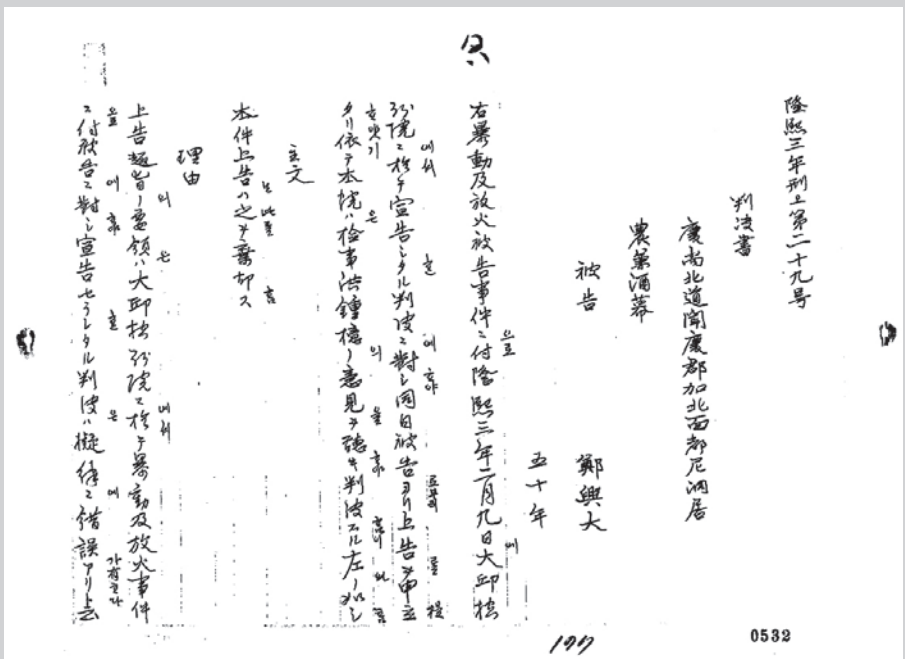

ニ在リ依テ原判決ヲ査閲スルニ原審ハ職權ニ基キ判決書可
載證據ヲ綜合シ第一被告ハ隆熙元年陰暦七月二十九
日暴徒首魁李寅榮ノ部下ニ投入シ副首魁金龍伯ノ指
揮ヲ受ケ火縄銃等ヲ携フル同部下八十餘名ト共ニ尚州聞
慶兩郡內ヲ横行シ人民ヨリ食事ヲ徴發シテ暴動ヲ爲シ
第二被告ハ同年陰暦八月一日暴徒三十名ヲ率ヰテ聞慶
郡邑內ニ侵入シ惡思ヲ継續シテ該暴徒ヲ指揮シ聞慶
內巡檢朴晴榮ト朴世鎮トノ家屋ニ放火セシメ之ヲ焼キタル
旨事實ヲ認メ第一ノ所爲ニ對シテハ刑法大全第六百七十
七条前段ヲ適用シ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条ニ依
リ一等ヲ減シ第二ノ所爲ニ對シテハ同法第六百六十六条ヲ
適用シ二罪俱發スルヲ以テ同法第百二十九条ニ依リ重キ
第二罪ニ從ヒ被告ヲ絞ニ處スヘキモノナリト判決シタルモノナレハ
原判決ハ合法ニシテ毫モ擬律ニ錯誤アラサルヲ以テ被告ノ上告

128

0533

八八

ハ其理由アラサルモノトス依テ本院ハ民刑訴訟規則第四十
二条第三十三条前段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一月二十四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渡邊暢

判事 鄭寅興

判事 牧山榮樹

判事 石川正

判事 咸台永

裁判長의命으로此謄證書

書記官 高島五八

存謄本也

隆熙三年三月 日

大審院 刑事

129

0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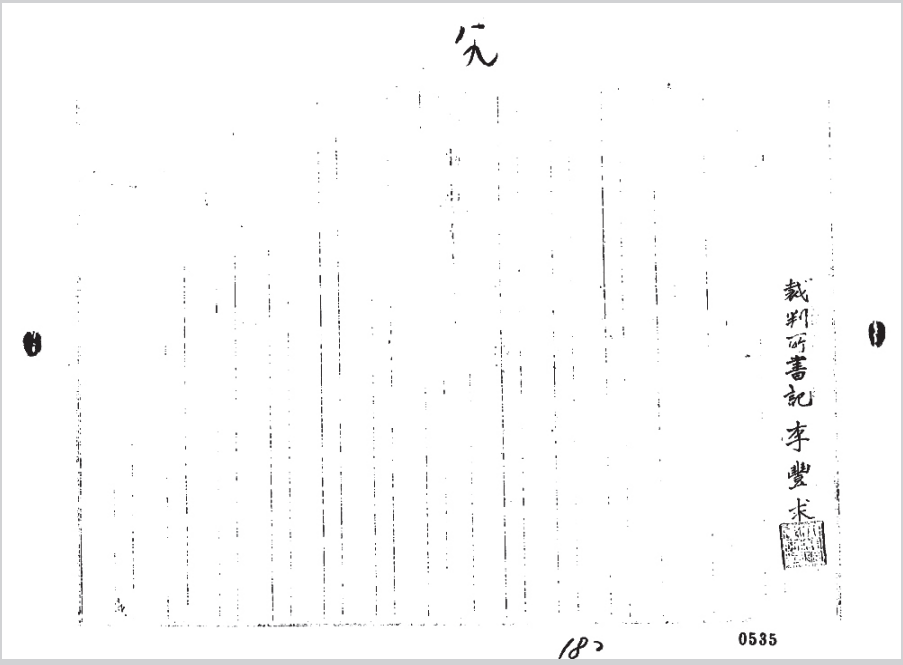
裁判所書記 李豊求
0535

6. 홍종선

判決[隆熙三年刑第三四號]

京畿道 加平郡 北面 祖宗洞 農
洪鍾善, 七十二

右內亂事件ニ付檢事伊藤德順干與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洪鍾善ヲ流二年ニ處ス

事由

被告ハ隆熙元年陰十二月中內亂罪首魁李康年ナルモノガ其部下ヲ率キ被告ノ居村附近 ニ來リタル際被告ハ李康年ノ勸誘ニ應シテ其部下ニ加ハリ隆熙二年陰正月江原道春川郡 史內面方面ニ至リ糧食ヲ徵發スル任ニ當タリ以テ李康年等ノ內亂行爲ヲ幇助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ノ當廷ノ供述被告ニ對スル警察ノ一二回聽取書檢事ノ一二回訊問調書ニ徵シ之ヲ認ム
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第八十二條ニ該當シ同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 刑ニ一等ヲ減シ犯情酌量スヘキヲ以テ同第百二十五條ニ依リ七等ヲ減シ處斷スヘキモノトス

京城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橫田定雄 [印]
判事 深澤新一郎 [印]
判事 柳東作 [印]

隆熙三年 二月 四日 宣告
裁判所書記 佐山嘉同 [印]

판결 [융희3년1909 형(刑) 제34호]

경기도 가평군 북면北面 조종동祖宗洞
농업, 홍종선洪鍾善 72세

위 내란사건에 대하여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홍종선을 유형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12월 중 내란죄 괴수 이강년李康秊이란 자가 그 부하를 이끌고 피고의 동리 부근에 왔을 때, 피고는 이강년李康秊의 권유에 따라 그의 부하가 되어 융희2년1908 음력 정월 강원도 춘천군 사내면史內面 방면에 가서 양식을 징발하는 임무를 맡음으로써 이강년李康秊 등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당 공판정에서의 공술, 피고에게 대한 경찰의 1·2회 청취서, 검사의 1·2회 신문 조서에 징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제82조에 해당하나, 동 제135조에 의하여 주범의 형에서 1등을 경감하고, 범죄의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거 7등을 경감하여 처단할 것이다.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횡전정웅橫田定雄 [印]
판사 심택신일랑深澤新一郎 [印]
판사 유동작柳東作 [印]

융희3년1909 2월 4일 선고
재판소서기 좌산가동佐山嘉同 [印]

■ **홍종선 판결문**(1909년 2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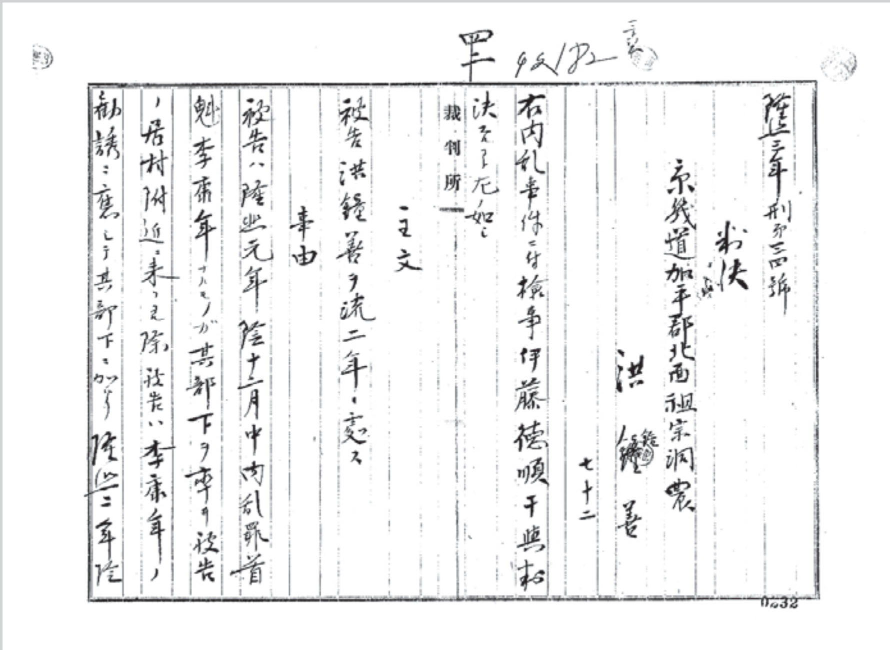

隆熙三年刑第三四號

判決

京畿道加平郡北面祖宗洞農

洪鍾善

七十二

右内亂事件ニ付檢事伊藤德順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裁判所

主文

被告洪鍾善ヲ流二年ニ處ス

事由

被告ハ隆熙元年陰十一月中内亂罪首魁李康秊ナルモノカ其部下ヲ率ヰ被告ノ居村附近ニ來リシ際被告ハ李康秊ノ勸誘ニ應シテ其部下ニ加ハリ隆熙二年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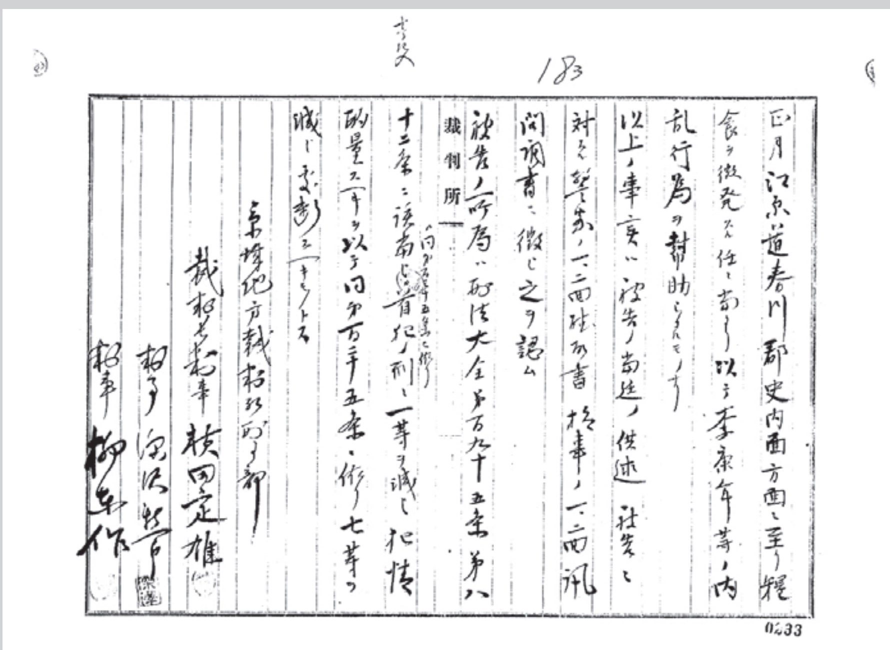

正月江原道春川郡史内面方面ニ至リ糧食ヲ徴發スル任ニ當リ以テ李康秊等ノ内亂行爲ヲ幇助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ノ當廷ノ供述ト被告ニ對スル警察ノ二回聽取書ト檢事ノ二回訊問調書ニ徴シ之ヲ認ム

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第八十二條ニ該當シ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犯情酌量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同第百二十五條ニ依リ七等ヲ減シ主文ノ刑ヲ科スヘキモノトス

裁判所

京城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判事 横田定雄

判事

判事 柳東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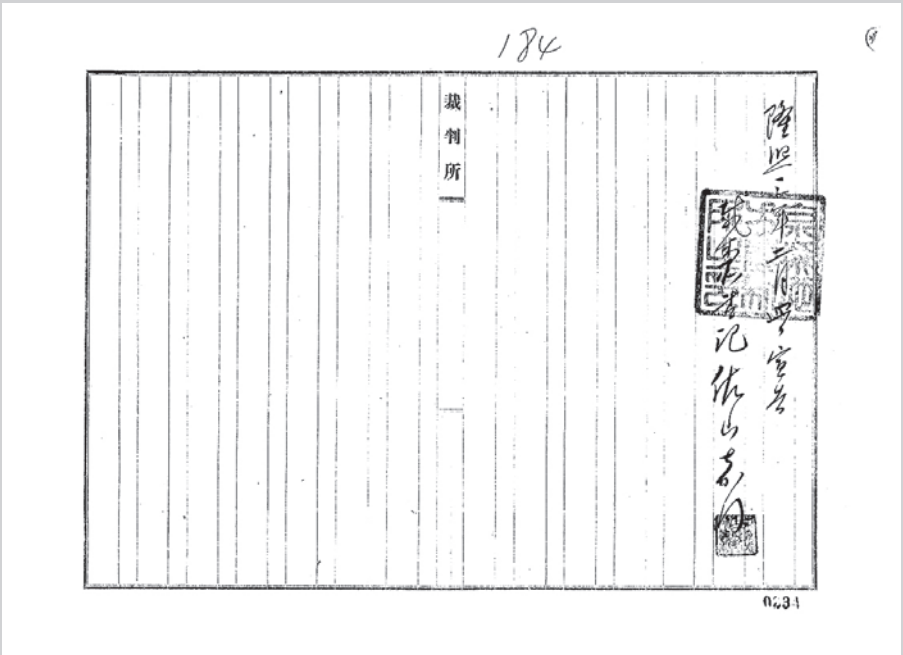
184
裁判所
0434

7. 임영수

判決

慶尙北道 靑松郡 縣南面 安德里

業 繪具(彩)商, 林永洙, 今二十九年

右竊盜及ヒ暴動被告事件ニ付(에當ᄒᆞ야)檢事森浦熊藏(이)立會審理ヲ(ᄅᆞᆯ)遂ケ(ᄒᆞ야)判決 ヲ爲スコト(을行ᄒᆞᆫ事ㅣ)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林永洙ヲ(ᄅᆞᆯ)役刑五年ニ(에)處ス(홈)

但雌(牝)牛一頭(隻)ハ(은)全大中ニ(에게)還付ス(홈)

理由

被告林永洙ハ(ᄂᆞᆫ)

第一隆熙二年陰曆十一月十三日(에)醴泉郡諸古面蘆谷洞後山下ノ野ニ(의郊에)放牧セル(ᄒᆞᆫ)同洞居林童伊(의)所有ノ(ᄒᆞᆫ)六歲ノ(齒된)牝牛(價格八十兩)(와)同面中里洞居金昭山所有ノ(의)四歲(齒)牝牛(價格百八十兩)各壹頭ヲ(隻을)竊取シ(ᄒᆞ얏고)

第二同年陰曆十二月二十一日(에)安東郡豊南面屛山山邊ニ(에)放牧セル(ᄒᆞᆫ)屛山里居全大中(이)所有ノ(ᄒᆞᆫ)雌(牝)牛壹頭(隻)(價格貳拾四圓)ヲ(을)竊取シ(ᄒᆞ얏고)

第三隆熙元年八月中(에)林達實ノ(의)勸誘ニ(ᄅᆞᆯ)因リ(ᄒᆞ야)暴徒ノ(의)首魁李康年ノ(의)部下砲軍トナリ(이되야)同月中銃ヲ(을)携ヘ(ᄒᆞ고)其黨與四十有餘名ト與ニ(과共히)醴泉郡及ヒ聞慶郡ナヲ(內ᄅᆞᆯ)橫行シ(ᄒᆞ고)剩ヘ(加之而)聞慶郡葛坪里ニ(에셔)日兵ト(과)交戰シ以テ(ᄒᆞ야써)暴動ヲ(을)爲シタルモノナリ(行ᄒᆞᆫ者ㅣ라)

以上ノ(의)事實ハ(은)被告聽取書(와)巡査金載繩(과)巡査部長杞山義英ノ(의)各搜査報告書(와)全大中ノ(의)盜難屆ニ(申提書ᄅᆞᆯ)徵シ(ᄒᆞ야)證ム可キ(ᄒᆞᆯ만ᄒᆞᆫ)證憑(이)十分ナリ(充이라홈)

法律ヲ(을)案スルニ(ᄒᆞ건ᄃᆡ)被告カ(가)第一ノ(의)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五百九十五條第五項ニ(에)該當シ(ᄒᆞ고)第二ノ(의)所爲ハ(ᄂᆞᆫ)同條第四項ニ(에)該當シ(ᄒᆞ고)第三ノ(의)所爲ハ(ᄂᆞᆫ)同法第六百七十七條及ヒ同第百三十五條ニ(에)該當シ(ᄒᆞ고)第三ノ(의)所爲ハ(ᄂᆞᆫ)原諒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ᄒᆞᆷ이可ᄒᆞᆫ者ㅣ有ᄒᆞᆷ으로)同第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一 等ヲ(을)減シ(ᄒᆞ고)數罪俱發ニ付(뎜으로)同第百二十九條ニ(에)依リ(ᄒᆞ야)第三ノ(의)所爲ニ(에)從ヒ(ᄒᆞ야)之ヲ(此를)處斷シ(ᄒᆞ고)雌(牝)牛ハ(ᄂᆞᆫ)同第百六十四條及ヒ第百六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給主ス可キモノトス(ᄒᆞᆷ이可ᄒᆞᆫ者ㅣ라)仍ケ(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隆熙參年 二月 五日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中村敬直 [印]
判事 五味逸平 [印]
判事 吳容默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補 林久次郎 [印]

판결

경상북도 청송군 현남면縣南面 안덕리安德里
회구상繪具商, 임영수林永洙 29세

위 강도 및 폭동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삼포웅장森浦熊藏이 입회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임영수를 역형役刑 5년에 처한다.
단, 암소 한 마리는 김대중金大中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 임영수는

제1. 융희2년1908 음력 11월 13일 예천군醴泉郡 제고면諸古面 노곡동蘆谷洞 뒷산 아래 들판에서 방목하던 같은 마을 거주 임동이林童伊의 소유인 6년 된 암소(가격 80냥)와 동면 중리동 거주 김소산金昭山 소유의 4년 된 암소가격 180냥 각각 한마리를 훔쳤다.

제2. 동년 음력 12월 21일 안동군安東郡 풍남면豊南面 병산屛山 주변에서 방목하던 병산리屛山里에 사는 김대중의 소유인 암소 한 마리(가격 24원)를 훔쳤다.

제3. 융희원년1907 8월 중에 임달실林達實의 권유로 폭도 우두머리 이강년李康秊의 부하 포군布裙이 되어 동월 중에 총을 휴대하고, 그 무리 40여 명과 같이 예천군 및 문경군聞慶郡 갈평리葛坪里에서 일병日兵과 교전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청취서, 순사 김재승金載繩과 순사부장 호산의영의 각 수사보고서와 김대중의 도난계에 비추어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을 살펴보니 피고의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595조 제5항에 해당하고, 제2의 소위는 동조同條 제4항에 해당하며 제3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및 형법대전 제135조에 해당한다. 제3의 소위는 용서할만한 점이 있으므로 형법대전 제125조에 의하여 한 등급을 감하고, 여러 죄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므로 형법대전 제129조에 의하여 제3의 소위에 따라 이를 처단한다. 암소는 형법대전 제164조 및 제165조에 의하여 돌려주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2월 5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중촌경직中村敬直 [印]
판사 오미일평五味逸平 [印]
판사 오용묵吳容默 [印]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임구차랑林久次郎 [印]

■ **임영수 판결문**(1909년 2월 5일, 대구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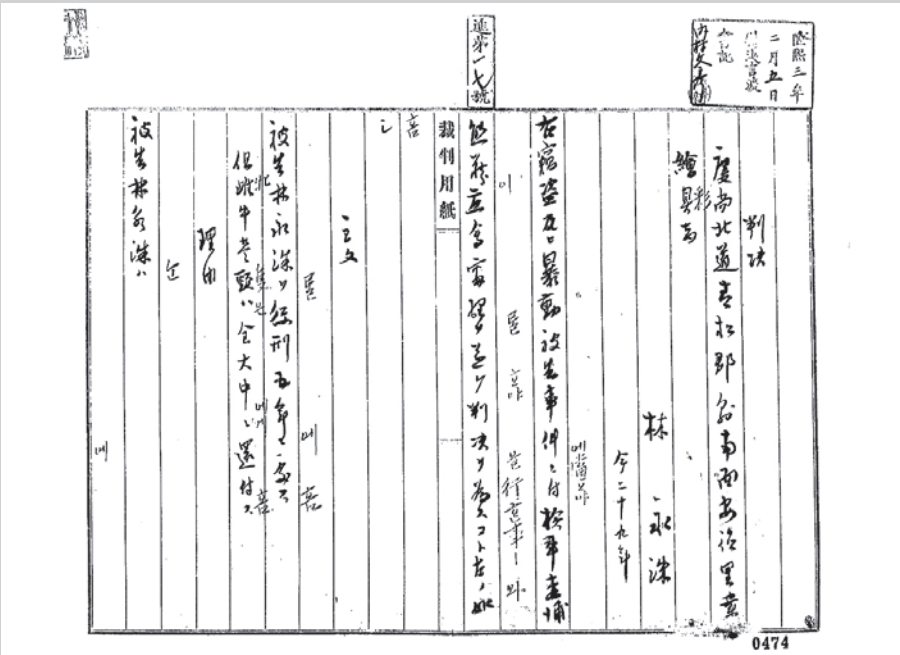

判決

慶尚北道 吉安郡 [illegible] 面 [illegible] 里 [illegible]

[illegible] 景 [illegible]

林 永洙

今二十九年

[illegible]

右窃盗及暴動被告事件ニ付キ検事 [illegible] 補

[illegible] 出張 [illegible] 審理ヲ遂ケ判決ヲ為スコト左ノ如シ

裁判用紙

主文

被告林永洙ヲ征刑百拾五日ニ処ス

但シ [illegible] 中 [illegible] 金大中 [illegible] 還付ス

理由

被告林永洙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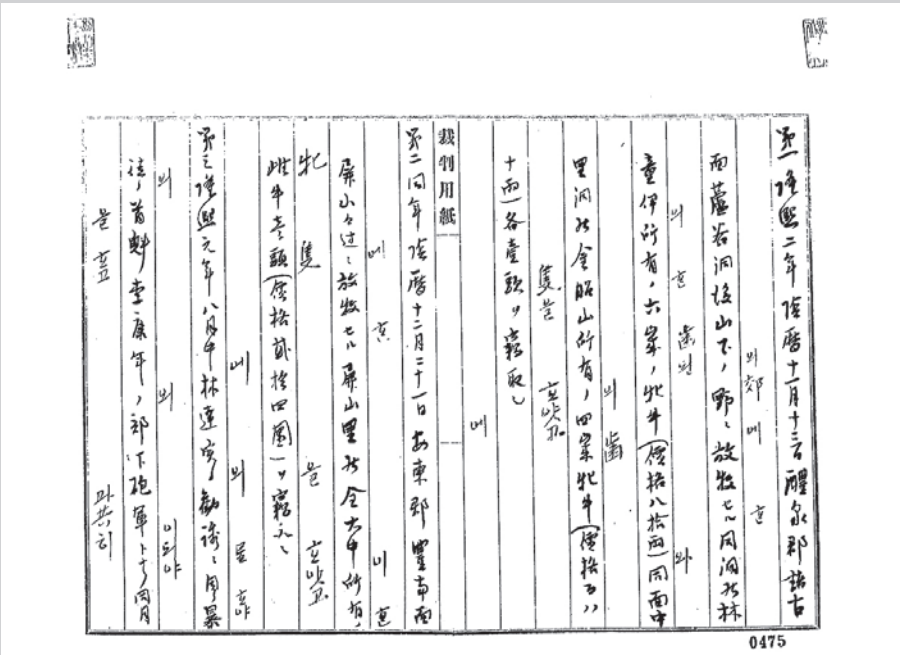

隆熙二年 [illegible] 月十三日 醴泉郡 [illegible]

雨蓋若洞 [illegible] 山下ノ野ニ故牧セル [illegible] 同洞水林

[illegible] 童伊所有ノ大栗ノ牝牛 [illegible] 八拾両 [illegible] 同面中

里洞水金昭山所有ノ田栗牝牛 [illegible] 弐拾五円

[illegible] 各產額ノ報取シ

裁判用紙

第二回第 [illegible] 年 [illegible] 月二十一日 [illegible] 郡 [illegible] 面

屏山ヶ辻ニ放牧セル屏山里水金吉甲所有ノ

牝牛 壹 [illegible]

此牛ヲ醴泉 [illegible] 拾弐円ニ売却シ

[illegible] 年 [illegible] 月 [illegible] 日

第二項第六年八月中林運家ニ [illegible]

[illegible] 年 [illegible] 月 [illegible] 日

[illegible] 首魁 [illegible] 康年ノ部下ニ [illegible] 月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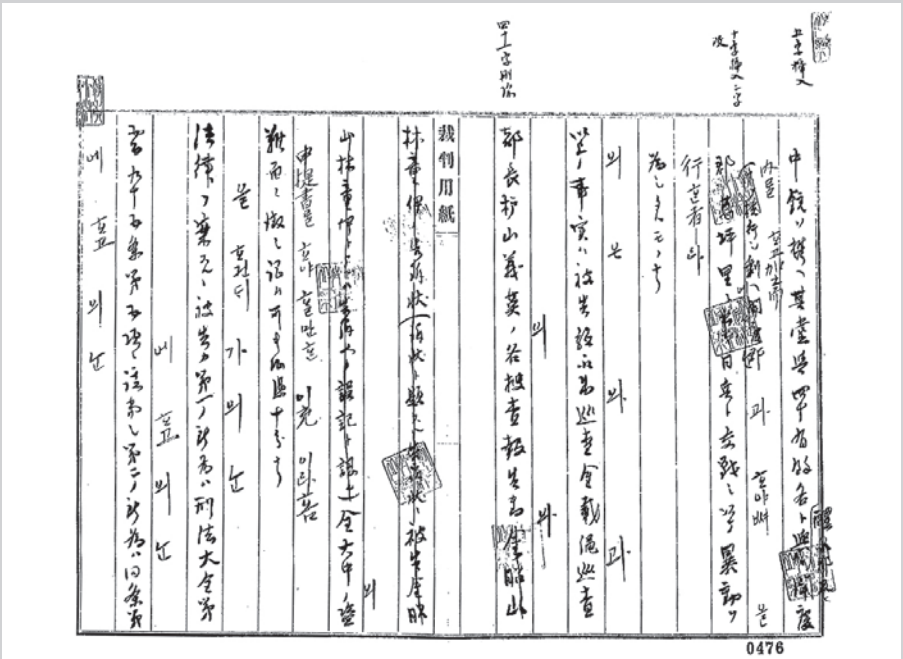

裁判用紙

0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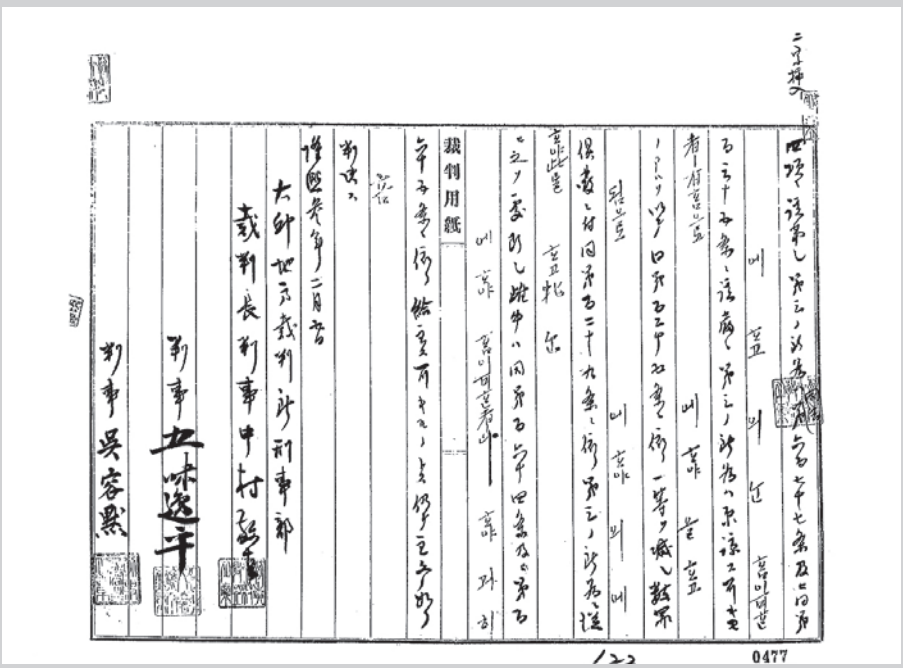

裁判用紙

0477

裁判用紙

裁判長의命으로明懸註音
傭訳官補 林久次郎

123

0478

8. 김규항

判決[隆熙三年刑第七四號]

漢城 中部 壽進坊 壽進洞 孤兒院內 無職
金奎恒, 年三十

右內亂事件ニ付檢事小野政太郎干與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金奎恒ヲ流五年ニ處ス

理由

被告ハ隆熙元年陰八月十三日頃現政府ノ政事ヲ屈トセス之ヲ變更スル目的ヲ以テ各地ニ 蜂起シタル暴徒ノ一群ニ加ハリ同九月十日頃マテ首魁李康年ノ指揮ノ下ニ同群ノ書類印 鑑等保管ノ任ニ當ク武裝シタル同類數百名ト共ニ堤川寧越平昌等ノ各郡內ヲ橫行シタル 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ニ對スル警部ノ聽取書被告ニ對スル檢事訊問調書ニ依リ之ヲ認定ス 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弟百九十五條ニ該ルモ指揮者ノ下ニ犯シタルモノニ付同第七十八 條同第八十條同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律ニ一等ヲ減シ所犯酌量スヘキ情アルヲ以テ 同第百二十五條ニ則リ更ニ四等ヲ輕減シ處斷スヘキモノトン主文ノ如ク判決ス

京城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橫田定雄 [印]
判事 深澤新一郎 [印]
判事 柳東作 [印]

隆熙三年 二月 十六日 宣告
裁判所書記 佐山嘉同 [印]

판결 [융희3년1909 형(刑) 제74호]

한성漢城 중부中部 수진방壽進坊 수진동壽進洞 고아원 내

무직, 김규항金奎恒 30세

위 내란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郎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김규항을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8월 13일경 현 정부의 정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서 이를 변경할 목적으로 각지에서 봉기한 폭도의 1무리에 가담하여 동 9월 10일경까지 괴수 이강년李康秊의 지휘 하에 동군의 서류·인감 등을 보관하는 임무를 띠고 무장한 동류 수백 명과 함께 제천堤川·영월寧越·평창平昌 등의 각 군내를 횡행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경부警部의 청취서, 피고에게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지휘자 밑에서 범한 것이므로 동 제78조·제80조·동 제135조에 의하여 주 법률에서 1등을 경감하고, 소범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로 동 제125조에 따라 다시 4등을 경감하여 처단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횡전정웅橫田定雄 [印]

판사 심택신일랑深澤新一郎 [印]

판사 유동작柳東作 [印]

융희3년1909 2월 16일 선고

재판소서기 좌산가동佐山嘉同 [印]

■ **김규항 판결문**(1909년 2월 16일, 경성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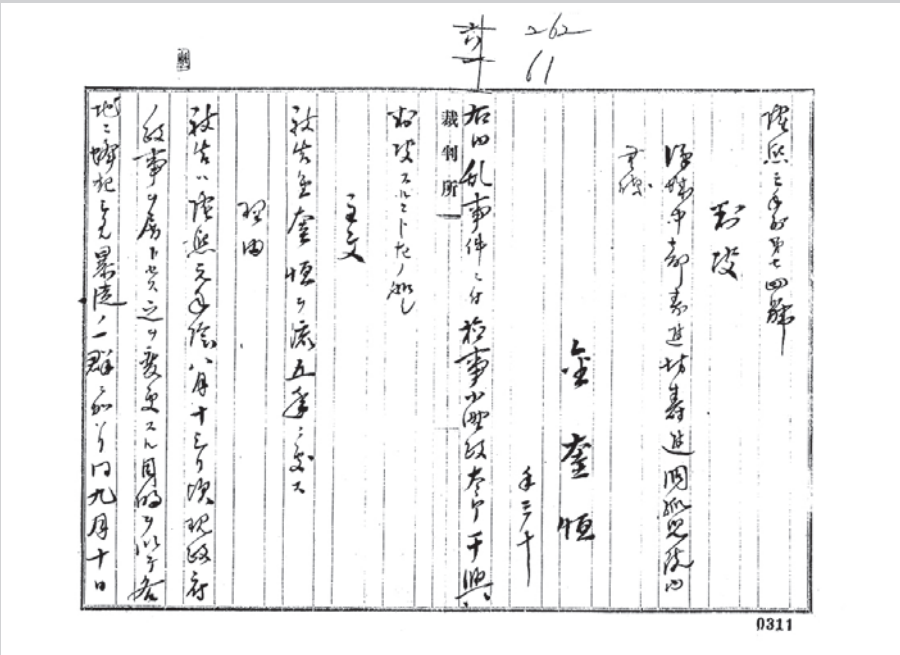

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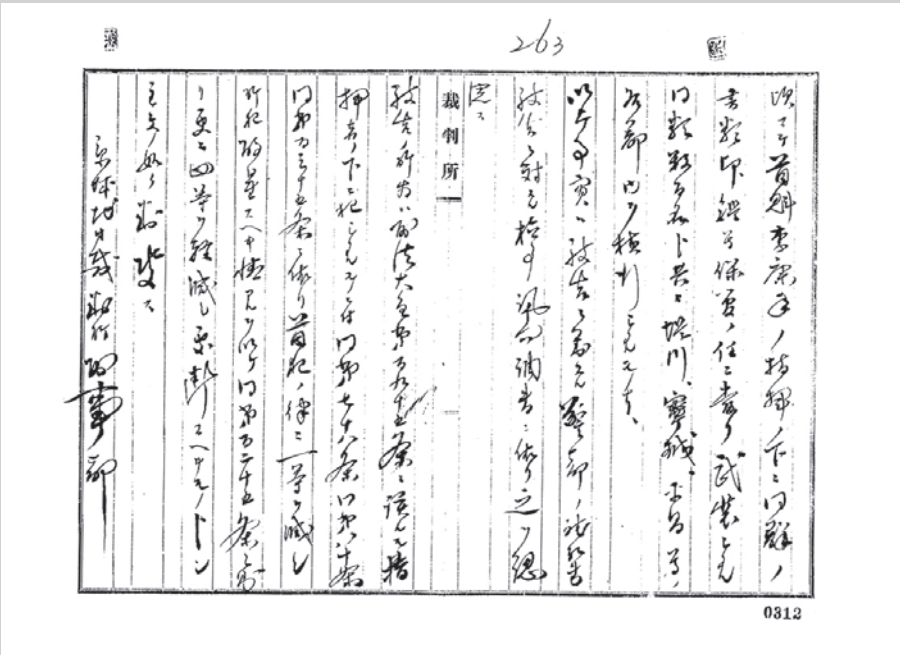

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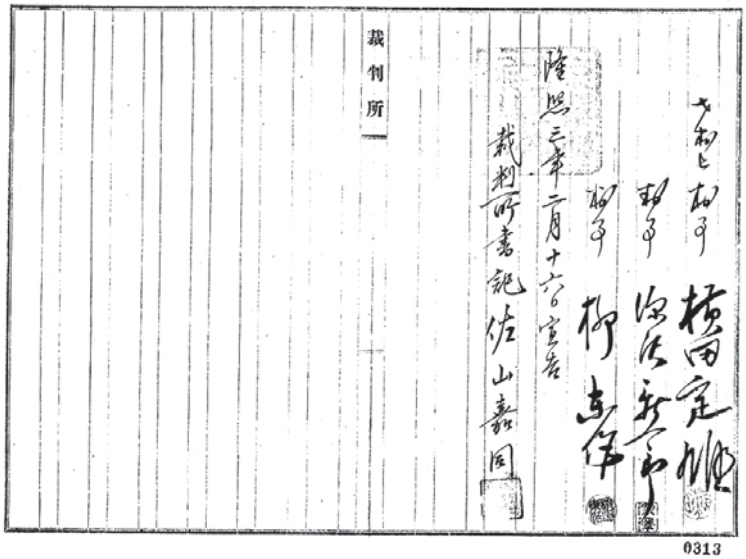
裁判所
0313

9. 이만원

判決[刑九六號]

忠淸北道 淸風郡 遠西面 億水洞 居
兩班 農, 李萬源, 四十三年

右暴動被告事件ニ付(에對ᄒᆞ야)檢事澁谷有孚干與審判スルフ(홈이)如左

主文

被告萬源ヲ(을)懲役五年ニ(에)處ス(홈)

事實及理由

被告萬源ハ(은)義兵大將李康年ノ(의)軍ニ(에)投入シ(ᄒᆞ야)同人ノ(의)造意ニ(에)從ヒ(ᄒᆞ야)隆熙元年七月十七日ヨリ(로부터)同年十一月十二日ニ(에)至ル迄ノ(ᄒᆞ기ᄭ지)間從事トシテ(로ᄒᆞ야)李康年及兵器ヲ(을)携帶セル(ᄒᆞᆫ)同人ノ(의)部下數十名ト(과)共ニ(히)忠淸北道延豊忠州淸風丹陽永春及慶尙北道聞慶豊基ノ(의)各郡ヲ(을)徘徊シ(ᄒᆞ야)該地方ヲ(을)騷擾シタルモノナリ(ᄒᆞᆫ者也라)

右事實ハ(은)被告カ(가)當公廷ニ於ケル(에셔)供述及憲兵相澤勘次郎ノ(의)作成シタル(ᄒᆞᆫ) 被告ノ(의)訊問調書ニ(의)徵シ(ᄒᆞ야)證憑十分ニシテ(充ᄒᆞᆷ으로)其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ニ(에)該(當)ルモ(ᄒᆞ나)從犯ニ(에)過キサルヲ以テ(치못ᄒᆞᆷ으로)同第百三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本刑ニ(에)一等ヲ(을)減シ(ᄒᆞ고)尙同法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本刑ニ(에)一等ヲ(을)酌減シ(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公州地方裁判所 刑事部
裁判長 判事 大橋鐵之助 [印]
判事 竹尾義麿 [印]
判事 伊東淳吉 [印]

隆熙三年 二月 二十七日 言渡
裁判所書記 趙東肅 [印]

裁判長의命을依ᄒᆞ야懸註홈
裁判所繙譯官補 李潤秀 [印]

판결 [형(刑)96호]

충청북도 청풍군 원서면遠西面 억수동億水洞 거주
양반兩班 · 농업, 이만원李萬源 43세

위 폭동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가 관여·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만원을 징역 5년에 처함.

사실 및 이유

피고 이만원은 의병대장 이강년李康秊의 군대에 들어가 동인의 계획에 따라 융희원년 1907 7월 17일부터 동년 11월 12일에 이르기까지 종사하여 이강년李康秊 및 병기를 휴대한 동인의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충청북도 연풍 · 충주 · 청풍 · 단양 · 永春 및 경상북도 문경 · 풍기의 각 군을 배회하여 해당 지방을 소요 한 자다.

위 사실은 피고가 당 공정公廷에서 한 공술 및 헌병 상택감차랑相澤勘次郎이 작성한 피고의 신문조서에 증빙하여 증거가 충분하므로, 그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나, 종범에 지나지 못함으로 동 제135조에 의하여 본 형벌에서 1등을 감하고, 또 동법 125조에 의하여 본 형벌에서 1등을 헤아려 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주지방재판소형사부
재판장 판사 대교철지조大橋鐵之助 [印]

판사 죽미의마竹尾義麿 [印]
판사 이동순길伊東淳吉 [印]

융희3년1909 2월 27일 언도
재판소서기 조동숙趙東肅 [印]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현주懸註함.
재판소 변역관보 이윤수李潤秀 [印]

■ **이만원 판결문**(1909년 2월 27일, 공주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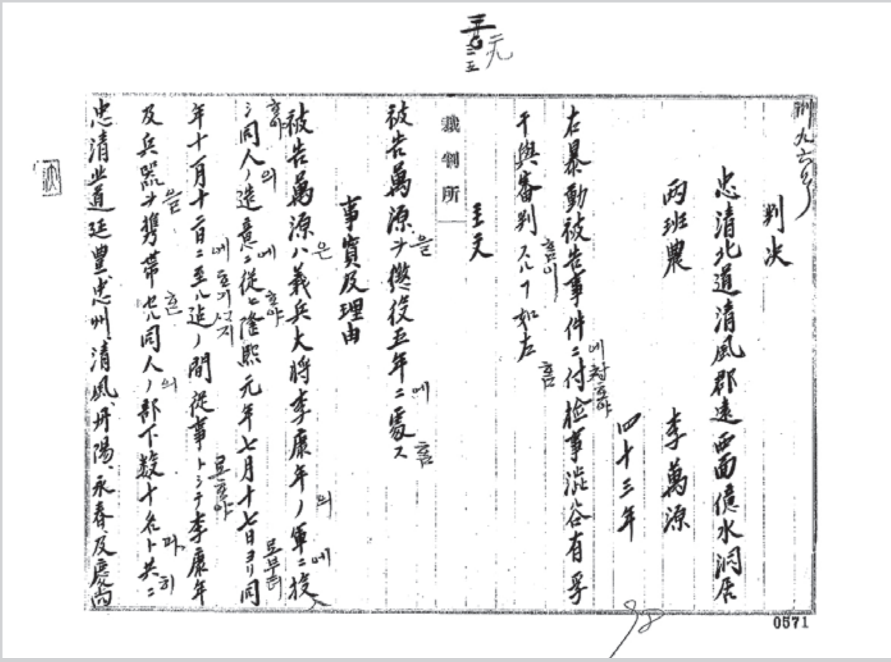

判決

忠清北道清風郡遠西面德水洞居

兩班農　李萬源　四十三年

右暴動被告事件ニ付檢事渋谷有孚干與審判スルコト如左

主文

被告萬源ヲ懲役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萬源ハ義兵大將李康年ノ軍ニ投シ同人ノ進意ニ從ヒ隆熙元年七月十七日ヨリ同年十月十日ニ至ル迄ノ間從事トシテ李康年及兵器ヲ携帶セル同人ノ部下數十名ト共ニ忠清北道延豊、忠州、清風、丹陽、永春及慶尚

0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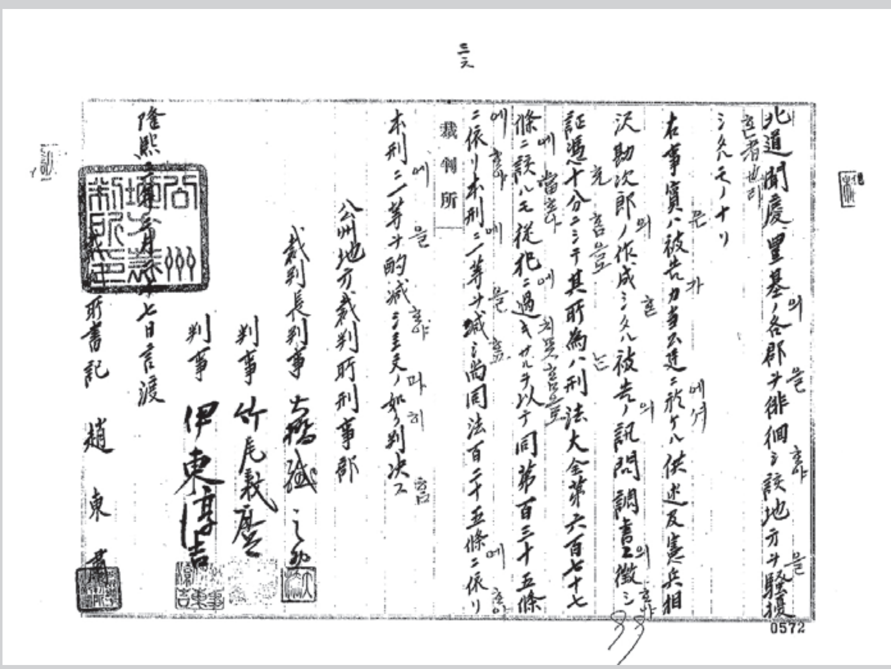

北道聞慶、豊基ノ各郡ヲ徘徊シ該地方ヲ騷擾シタルモノナリ

右事實ハ被告カ當公廷ニ於ケル供述及憲兵相沢勘次郎ノ作成シタル被告ノ訊問調書ニ徵シ證憑十分ニシテ其所為ハ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ニ該ルモ從犯ニ過キサルヲ以テ同第百三十五條ニ依リ本刑ニ一等ヲ減シ尚同法百二十五條ニ依リ本刑ニ一等ヲ酌減シ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二月二十七日言渡

公州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判事 [illegible]

判事 竹尾義麿

判事 伊東淳吉

裁判所書記 趙東[illegible]

0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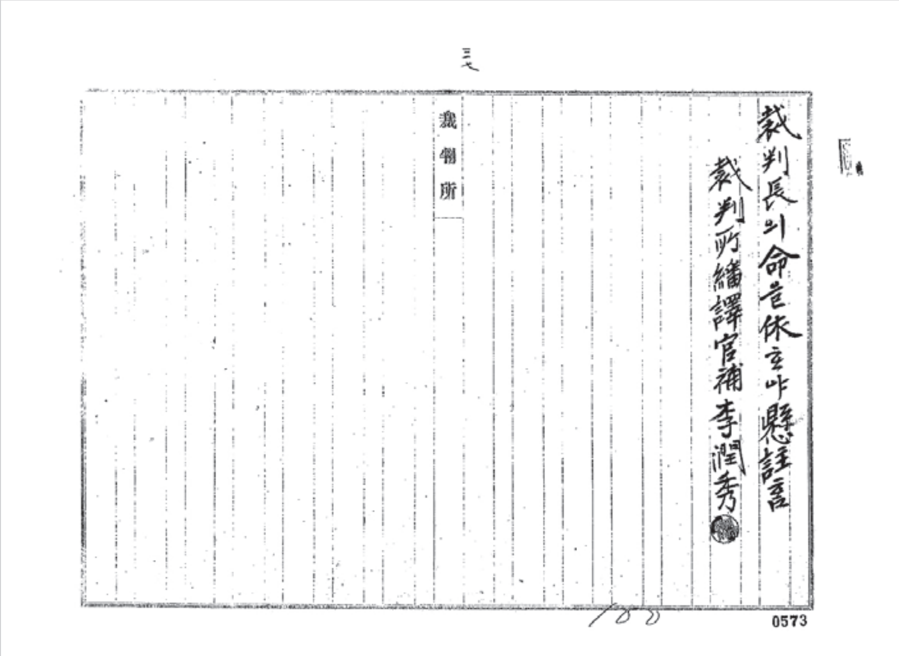

三七

裁判長의命을依ᄒᆞ야懸註言

裁判所繙譯官補 李潤秀

裁判所

0573

10. 채경묵

判決[隆熙三年刑第一七五號]

京畿道 加平郡 北面 祖宗洞 農
蔡敬默, 年三十九

右者에對ᄒᆞᆫ殺人及內亂罪被告事件에待ᄒᆞ야檢事小野政太郎이立會ᄒᆞ고審理判決ᄒᆞᆷ이如左ᄒᆞᆷ

主文

被告蔡敬默을懲役五年에處ᄒᆞᆷ

理由

第一被告ᄂᆞᆫ政事ᄅᆞᆯ變更ᄒᆞ기爲ᄒᆞ야亂ᄅᆞᆯ作ᄒᆞᆫ首魁李康年의部下에加入ᄒᆞ야江原道各郡內에橫行ᄒᆞ야地方을擾亂케ᄒᆞᆫ바隆熙元年九月十五日朝에原州郡柮峙에셔日本兵으로交戰ᄒᆞ고又同年十月十五日에江陵杏亭에셔日本兵의攻擊을遭遇ᄒᆞ얏고 第二被告ᄂᆞᆫ隆熙二年陰五月十六七日頃에寧越郡右邊面澤田里에셔金某라稱ᄒᆞᄂᆞᆫ年可三十五六歲者가義兵이라藉托ᄒᆞ고附近村에셔行盜ᄒᆞᆷ을聞ᄒᆞ고村民으로同里前의川岸을以鍬掘穴케ᄒᆞ고同金某ᄅᆞᆯ生埋ᄒᆞ야셔故殺ᄒᆞᆫ지라

以上事實은憲兵中澤八百喜의復命書와寧越郡右邊面長金振弼의證明書와忠州憲兵分遣所의被告의第一第二의訊問調書와檢廷及當廷의被告陳述等諸憑證에依ᄒᆞ야此ᄅᆞᆯ認定ᄒᆞᆷ 此ᄅᆞᆯ法律에照ᄒᆞ니判示中被告의第一所爲ᄂᆞᆫ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에該當ᄒᆞ나首魁의指揮下에셔行動ᄒᆞᆫ者됨으로셔同第八十條同第百三十五條에依ᄒᆞ야一等을減ᄒᆞ고第二의所爲ᄂᆞᆫ同第四百七十七條에該當ᄒᆞᆫ바何者이던지犯情이酌量ᄒᆞ기可ᄒᆞᆷ으로셔同第百二十五條에 依ᄒᆞ야各히五等을減ᄒᆞ고二罪俱發됨으로셔同第百二十九條에依ᄒᆞ야其重ᄒᆞᆫ第二의所爲에從ᄒᆞ야處斷ᄒᆞ고因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ᄒᆞᆷ

京城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横田定雄 [印]
判事 深澤新一郎 [印]
判事 柳東作 [印]

隆熙三年 三月 二十日 宣告
裁判所書記 佐山嘉同 [印]

판결 [융희3년1909 형(刑) 제175호]

강원도 영월군 우변면右邊面 공수원公水院
농업, 채경묵蔡敬默 39세

상기 자에게 대한 살인 및 내란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郎이 입회하고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채경묵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제1. 피고는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괴수 이강년李康季의 부하에 가입하여 총검을 휴대하고 강원도 각 군내를 횡행, 지방을 소란케 한 바, 융희원년1907 9월 15일경에 원주군原州郡 유치柾峙에서 일본병과 교전하고, 또 동년 10월 15일에 강릉江陵 행정杏亭에서 일본병의 공격을 받았고,

제2. 피고는 융희2년1908 음력 5월 16~17일경에, 영월군 우변면 택전리澤田里에서 김金모라는 나이 35~6세 되어 보이는 자가 의병이라 빙자하고 부근 촌락에서 도적질을 하는 것을 보고 촌민에게 동리 앞 강 기슭에 괭이로 구덩이를 파게하고 그 김모를 생매장하여 고의로 살해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헌병 중택팔백희中澤八百喜의 복명서와 영월군 우변면장 김진필金振弼의 증언서와 충주忠州헌병분견소의 피고에 대한 제1·제2회 신문 조서와 검사국 및 당 공판정에서의 피고의 진술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니, 판시判示중 피고의 제1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괴수의 지휘 밑에서 행동한 자이므로 동 제80조·동 제135조에 의하여 1등을 경감하고, 제2의 소위는 동 제477조에 해당한 바, 모두 범죄의 정상이 참작할 만하기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각각 5등을 경감하고, 2죄가 함께 생겼기로 동 제129조에 의하여 그중 무거운 제2의 소위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횡전정웅橫田定雄 [印]
판사 심택신일랑深澤新一郎 [印]
판사 유동작柳東作 [印]

융희3년1909 3월 20일 선고
재판소서기 좌산가동佐山嘉同 [印]

■ **채경묵 판결문**(1909년 3월 20일, 경성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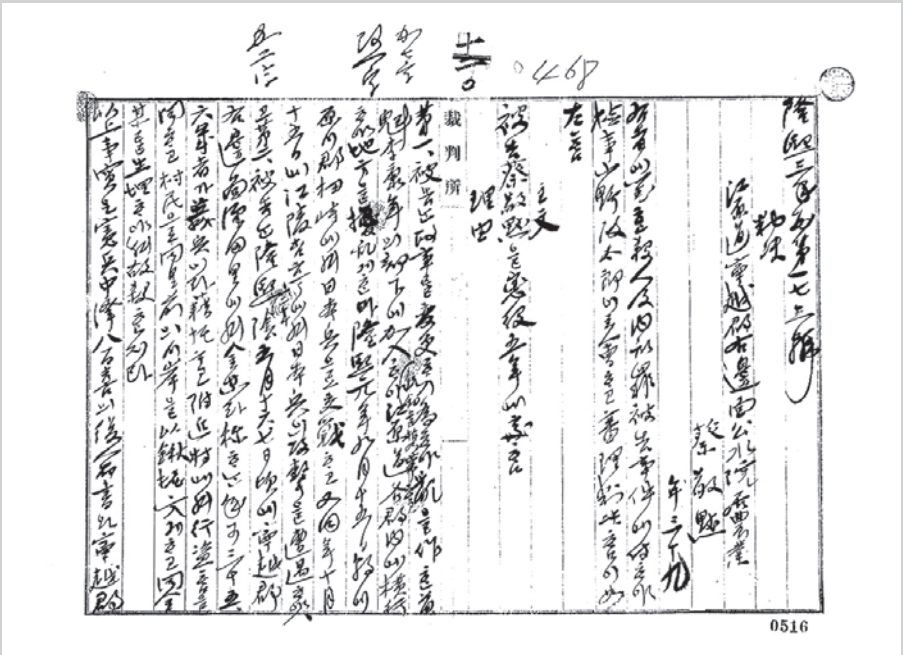

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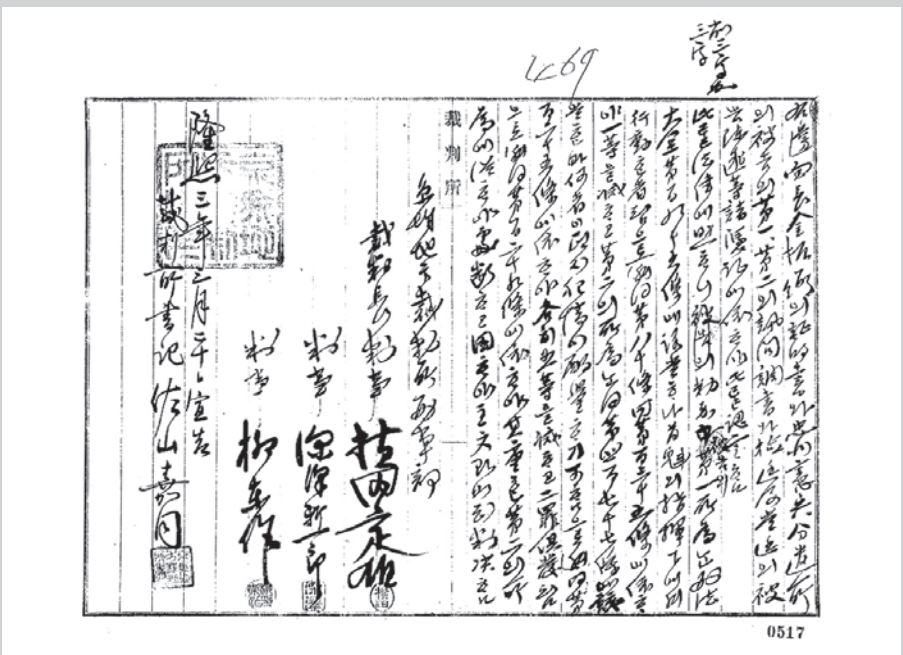

0517

11. 장인식

判決原本

忠淸北道 丹陽郡 北面 別谷里 農

被告人 張仁植, 年三十二

右暴動被告事件審理ノ上判決スル(흠이)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張仁植ヲ(을)笞刑一百ニ(에)處ス(홈)

事實及理由

第一被告ハ(는)隆熙元年陰曆七月廿日頃暴徒首魁李康年ノ(의)部下ニ(에)隷屬シ(ᄒᆞ야)隆熙二年陰曆八月マテノ(ᄭᅡ지의)間ニ(에)在テ(ᄒᆞ야)慶尙北道順興郡方面ニテ(에셔)暴徒約百餘名日本兵ト(과)交戰潰走セシ(ᄒᆞ고)當時被告ハ(는)小使及荷物役ヲ(을)爲シ(ᄒᆞ고)居タルモ(ᄒᆞ얏스되)其場ヲ(을)逃走シ(ᄒᆞ야)昨年陰曆八月頃一旦歸宅シタルモノナリ(ᄒᆞᆫ것이라)

第二被告ハ(는)隆熙二年十月(日不詳)再ヒ(히)暴徒首魁金商台ノ(의)部下ニ(에)屬從シ(ᄒᆞ야)本年三月五日慶尙北道順興郡德峴里ニ於テ(에셔)金商台以下十五名ノ(의)暴徒憲兵隊ト(와)交戰シタル(ᄒᆞᆫ)當時被告ハ(는)小使或ハ(은)見張(망보는)役ヲ(을)爲シ(ᄒᆞ다가)敗走後親戚張昌植ニ(을)出會同行シテ(ᄒᆞ야)丹陽郡金谷里ノ(의)方面ニ(에)向フ(ᄒᆞ는)途中憲兵ニ(에게)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ᄒᆞᆷ이된것이라)

以上ノ(의)事實ハ(는)被告ノ(의)審問調書張昌植ノ(의)聽取書被告カ(가)當公廷ノ(의)供述ニ(에)徵シ(ᄒᆞ고)何レモ(常히)暴徒ニ(에)附和隨行シタルノ(ᄒᆞᆫ)證憑(이)充分ナルモノ(足ᄒᆞᆫ것으로)認定ス(홈)

之レヲ(를)法律ニ(에)照スニ(ᄒᆞᆷ이)被告ノ(의)行爲ハ(는)何レモ(常히)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後段ヲ(을)適用シ(ᄒᆞ야)尙ホ(히)本犯ハ(은)二罪同時ニ(에)俱發スルヲ以テ(ᄒᆞᆷ으로ᄒᆞ야)同第

百二十九條ニ(에)從ヒ(ᄒᆞ야)第二ノ(의)所爲ニ(에)因リ(ᄒᆞ야)處斷スルヲ(ᄒᆞᆷ을)相當ト(타고)認メ(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홈)
本件ハ(은)檢事田中永次郎立會ス(홈)

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
裁判長 判事 田中亨 [印]
判事 洪祐夔 [印]
判事 山岡定行 [印]

隆熙三年 四月 五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右ᄂᆞᆫ裁判長의命을依ᄒᆞ야懸註홈
隆熙三年 四月 七日
淸州區裁判所
繙譯官補 朴潤陽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단양군 북면北面 별곡리別谷里
농업, 피고인 장인식張仁植 32세

위 폭동 피고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 한 것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장인식을 태형笞刑 100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20일경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에 예속되어

융희2년1908 음력 8월까지의 상간에 있어서 경상북도 순흥군 방면에서 폭도 약 100여명이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패주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소사小使, 使喚役 및 하물역荷物役을 맡고 있다가 그곳을 도주하여 작년 음력 8월경 일단 귀가 했던 것이다.

제2. 피고는 융희2년1908 10월일은 자세하지 않음 다시 폭도 수괴 김상태金商台의 부하에 종속되어 같은 해 3월 5일 경상북도 순흥군 덕현리德峴里에서 김상태 이하 15명의 폭도가 헌병대와 교전했는데, 당시 피고는 소사 또는 견장역見張役(망보는 역할)을 하다가 패주 이후 친척 장창식張昌植에게 나가 만나 동행하여 단양군 금곡리 방면으로 가던 도중 헌병에게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심문조서, 장창식의 청취서,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공술에 징험함에 모두 폭도에 부화附和하여 수행했던 증빙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것을 법률에 비춰봄에, 피고의 행위는 모두 형법대전 제677조 후단을 적용하여 또한 본범은 2죄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동 제129조에 따라 제2의 소위에 따라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판사 산강정행山岡定行 [印]

융희3년1909 4월 5일 판결 언도
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위는 재판장의 命에 의해 현주懸註함
융희3년1909 4월 7일
청주구재판소
번역관보 박윤양朴潤陽 [印]

判決

忠淸北道 丹陽郡 北面 別谷里 農
張仁植, 三十二年

右暴動被告事件ニ付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カ爲シタル判決ニ對シ同裁判所支部檢事ヨリ控訴ヲ申提シタルニ因ク當院ハ檢事寺田恒太郎干與シ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ス
被告ヲ流刑三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ハ
第一隆熙元年陰七月中ニ政事ヲ變亂スルノ目的ヲ以テ起トル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入シ同年陰十月ニ至リマテ李康年ノ指揮ノ下ニ專ク雜役ニ從事シ其間永春郡永春邑附近ニ於テ百余名ノ暴徒ト共ニ日本軍ト交戰シ以テ亂ヲ作シ
第二隆熙二年陰十月中更ヒ前同一目的ヲ以テ起レル暴徒首魁金商台ノ部下ニ投入シ同三年陰二月ニ至ルマテ金商台ノ指揮ノ下ニ專ク雜役ニ從事シ其間暴徒十數名ト共ニ日本憲兵隊ト交戰シ以テ亂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憲兵伍長ノ被告ニ對スル訊問調書張昌植ニ對スル聽取書深村憲兵上等兵ノ復命書大學憲兵上等兵ノ復命書及報告書並ニ原審ノ審問調書ニ依リ其證憑十分ナリ之ヲ法律ニ照スレ第一第二所爲ハ孰レモ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モ從犯ニ諒クヲ以テ同法第百卅五條ニ依リ各首犯ノ律ニ一等ヲ減シ處斷スヘキモ犯情原諒スヘキ点アルヲ以テ同法第百二十五條ニ則リ各五等ヲ減シ二罪併發ニ付キ同法第百廿九條ヲ適用シ第一ノ所爲ニ從ヒ被告ヲ流刑三年ニ處スヘキモノトス
然ルニ原判決ハ被告ノ所爲ヲ以テ暴動行爲ノ附和隨行ト誤認シタル失當アルモノニシテ控訴ハ結局其理由アリ仍テ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 五月 二十日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島村忠次郎
判事 洪在祺
判事 山口貞昌

隆熙三年 五月 二十日 判決 宣誥
裁判所書記 趙良元

右謄本也
隆熙三年 六月 廿二日
京城控訴院
裁判所書記 四位義正 [印]

판결

충청북도 단양군 북면北面 별곡리別谷里
농업, 장인식張仁植 32세

위 폭동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주지방재판소 청주淸州지부에서 행한 판결에 대하여 동 재판소 지부 검사가 공소를 신청하였기로 당원은 검사 사전항태랑寺田恒太郞의 관여로 심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를 유형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제1. 융희원년1907 음력 7월중, 정사를 변란시킬 목적으로 일어난 폭도 괴수 이강년李康秊의 부하에 투입하여 동년 음력 10월에 이르기까지 이강년李康秊의 지휘 하에서 오로지 잡역에 종사하였는데, 그 동안 永春郡 永春읍 부근에서 1백여 명의 폭도와 함께 일본군과 교전하여 난을 일으키고,

제2. 융희2년1908 음력 10월중, 다시 앞에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일어난 폭도 괴수 김상태(金商台)의 부하에 투입하여 동 3년 음력 2월에 이르기까지 김상태의 지휘 밑에서 오로지 잡역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폭도 십수명과 함께 일본헌병대와 교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이다.

이상 사실은 헌병오장伍長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 장창식張昌植에게 대한 청취서, 택촌澤村 헌병 상등병上等兵의 복명서, 대학大學 헌병 상등병의 복명서 및 보고서와 원심 심문 조서에 의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건대, 제1·제2의 소위는 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종속범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각각 주범률에서 1등을 경감하여 처단함이 가하나, 소범 정상에 용서할 만한 점이 있기로, 동법 제125조에 의거 각각 5등을 경감하고, 2죄가 병발하매 동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제1 소위에 따라 피고를 유형 3년에 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원판결은 피고의 소위를 폭동 행위에 부화 수행한 것이라고 오인한 실책이 있는 것으로서 공소는 결국 이유가 있기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5월 20일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도촌충차랑島村忠次郎
판사 홍재기洪在祺
판사 산구정창山口貞昌

융희3년1909 5월 20일 판결 선고
재판소서기 조양원趙良元

위는 등본임

융희3년1909 6월 22일

경성공소원

재판소서기 사위의정四位義正 [印]

■ **장인식 판결문**(1909년 4월 5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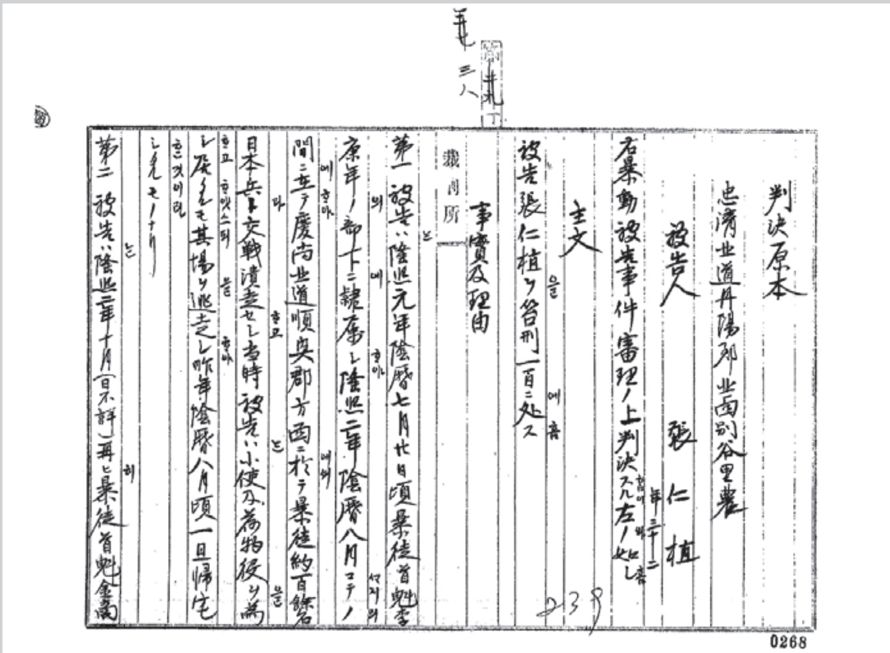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丹陽郡北面別谷里農

被告人 張仁植

年二十二

右暴動被告事件審理ノ上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張仁植ヲ笞刑一百ニ處ス

事實及理由

第一 被告ハ隆熙元年陰曆七月廿日頃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隷屬シ隆熙二年陰曆八月ニテノ間ニ至テ慶尚北道順興郡方面ニ於テ暴徒約百餘名日本兵ト交戰潰走セシ當時被告ハ小使及荷物役ヲ爲シ居タルモ其場ヲ逃走シ昨年陰曆八月頃一旦帰宅シタルモノナリ

第二 被告ハ隆熙三年十月(日不詳)再ヒ暴徒首魁金商

0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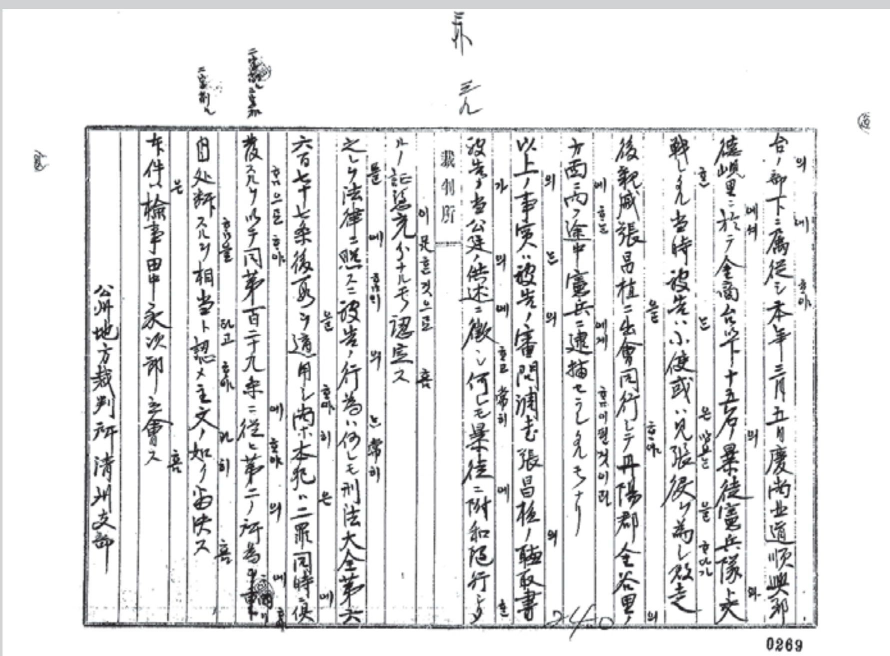

台ノ部下ニ屬從シ本年三月五日慶尚北道順興郡徳峴里ニ於テ金商台部下十五名暴徒憲兵隊ト交戰シタル當時被告ハ小使或ハ見張役ヲ爲シ敗走後親戚張昌植ニ出會同行シテ丹陽郡金谷里方面ニ向フ途中憲兵ニ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ノ審問調書張昌植ノ聽取書被告ノ當公廷ノ供述ニ徴シ何レモ暴徒ニ附和隨行シタル記憑充分ナルモノト認定ス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行爲ハ何レモ刑法大全第五百七十七條後段ヲ適用シ尚ホ本犯ハ二罪同時俱發スルヲ以テ同第百二十九條ニ從ヒ第二ノ所爲ニ處斷スルヲ相當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本件ハ檢事田中永次郎立會ス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0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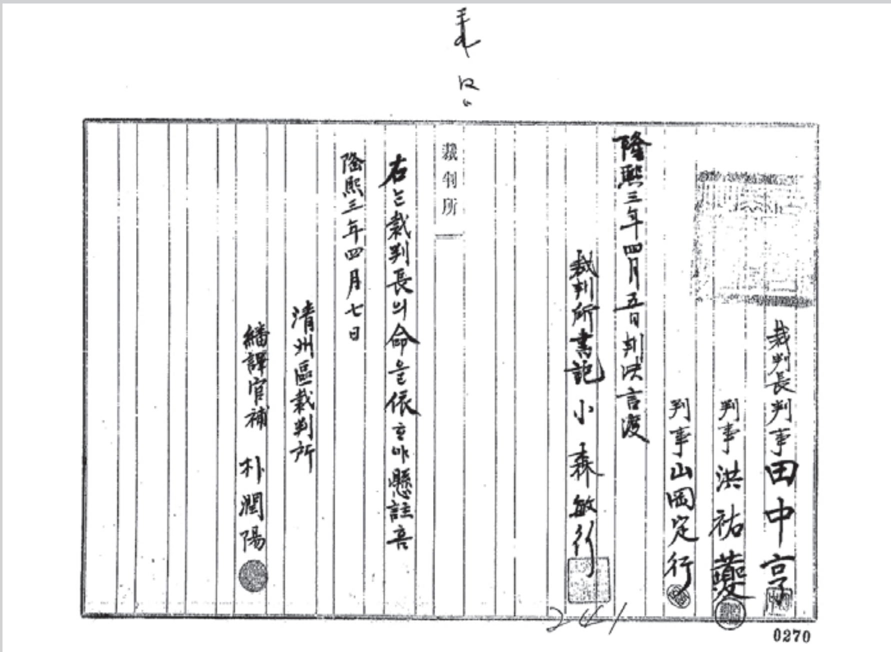
裁判長判事 田中亨
判事 洪祐夔
判事 山岡定行
隆熙三年四月五日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小森敏行
裁判所
右ᄂ 裁判長의 命을 依ᄒᆞ야 懸註홈
隆熙三年四月七日
清州區裁判所
繙譯官補 朴潤陽
0270

■ **장인식 판결문**(1909년 5월 20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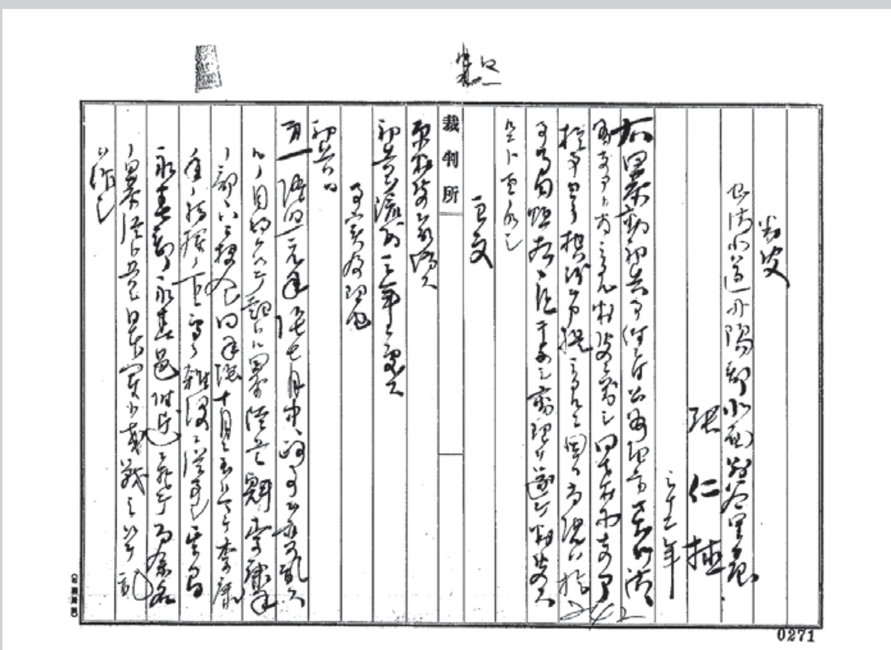
裁判所
0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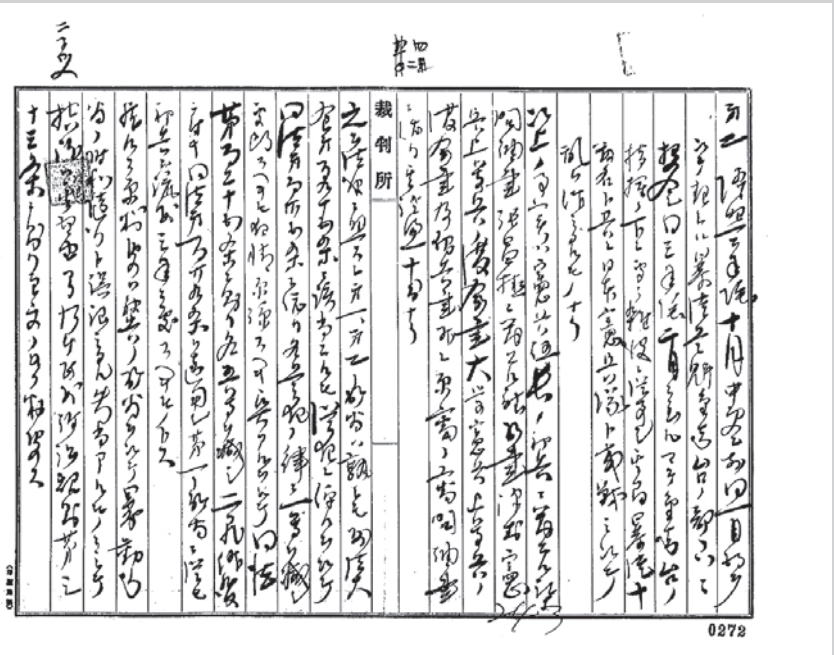
裁判所
0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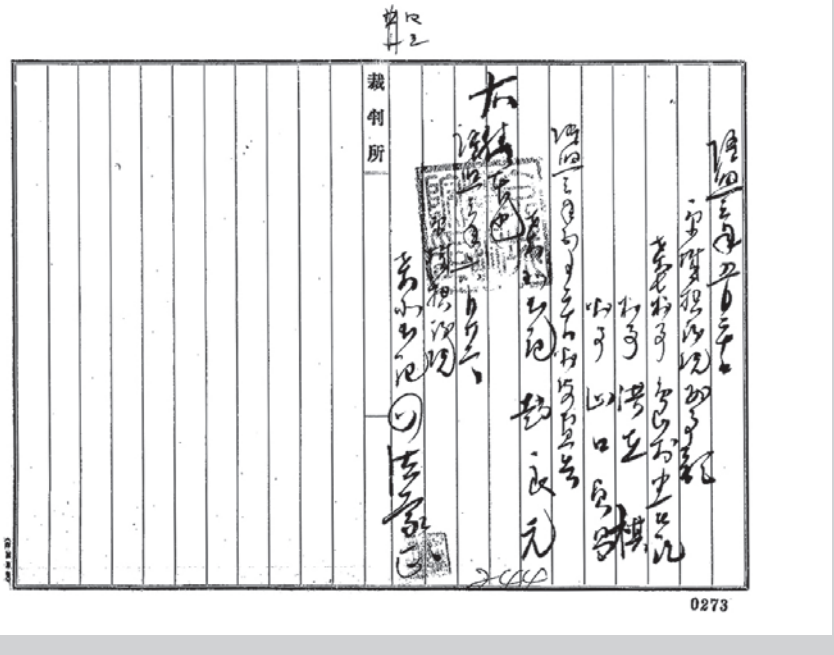
裁判所
0273

12. 남만귀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東面 鵲泉洞 居 被傭人
南萬貴, 年三十三

右暴動被告事件ニ(에)對シ(ᄒᆞ야)檢事森浦熊藏ノ立會ニテ審理ヲ(ᄅᆞᆯ)遂ケ(ᄒᆞ야)判決スル事(ᄒᆞᆫ事)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南貴萬ヲ(ᄅᆞᆯ)懲役三年ニ(에)處ス(홈)
押收ノ(ᄒᆞᆫ)銃及火藥ハ(은)官ニ(에)沒收ス(홈)

理由

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陰八月二日頃(에)暴徒李寅榮ノ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仝人指揮ノ下ニ(에)其徒黨百如名ト(과)共ニ(히)銃數十挺軍刀一柄ヲ(을)携帶シテ(ᄒᆞ고)慶尙北道聞慶郡下及ヒ忠淸北道槐山郡下ヲ(ᄅᆞᆯ)橫行シ(ᄒᆞ고)剩ヘ(且)同月九日頃(에)右記槐山郡下ニテ(에셔)日本守備隊ニ(에)抵抗シタルモノトス(ᄒᆞᆫ者라홈)
右事實ハ(은)被告ノ(의)供述及ヒ逮捕手續(節次)書ニ(에)徵シ(ᄒᆞ야)其證憑(이)充分ニシテ(ᄒᆞᆫ바)其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와)第百三十五條ニ(에)該當スルモ(ᄒᆞ딕)所犯(이)原諒ス可キ(ᄒᆞᆷ이可ᄒᆞᆫ)情狀アルヲ以テ(이有ᄒᆞᆷ으로)仝第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二等ヲ(을)減シテ(ᄒᆞ야)處斷ス可ク(ᄒᆞᆷ이可)押守ノ(ᄒᆞᆫ)銃及火藥ハ(은)右犯罪ノ際用ヒケルモノニシテ(時에所用者이며且)應禁物ナルヲ以テ(ᄆᆡᆷ으로)仝第百十八條ニ(에)依シテ(ᄒᆞ야)官ニ(에)沒收ス(홈)可キモノトス(可ᄒᆞᆫ者라)因リテ(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홈)

隆熙三年 五月 十一日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中村敬直 [印]
判事 五味逸平 [印]
判事 吳容默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補 林久次郎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동면加東面 작천동鵲泉洞 거주
피용인被傭人, 남만귀南萬貴 33세

위 폭동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삼포웅장森浦熊藏이 입회하고 심리를 행하여 판결한 것은 다음과 같음.

주문

피고 남만귀를 징역 3년에 처함.
압수한 총과 화약은 관에 몰수함.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8월 2일경에 폭도 이인영李寅榮*의 부하로 들어가 동 인의 지휘 아래에 그 도당 100여 명과 함께 총 수십 정挺, 군도軍刀 1병柄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문경군 일대 및 충청북도 괴산군 일대를 횡행하였고, 게다가 동월 9일경에 앞에 기술한 괴산군 일대에서 일본수비대에 저항한 자라고 함.

위 사실은 피고의 공술 및 체포수속서에 증거하여 그 증빙이 충분 한 바, 그 소위는 형

* 李麟榮의 오기

법대전 제677조와 제135조에 해당하나 소범所犯에 원량原諒 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동 제125조에 의해 2등을 감하여 처단함이 옳고, 압수한 총 및 화약은 위 범죄의 때에 사용한 것이며 또 응당 금지 물품이므로 동 제118조에 의해 관에 몰수함이 옳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3년1909 5월 11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중촌경직中村敬直 [印]
판사 오미일평五味逸平 [印]
판사 오용묵吳容默 [印]

재판장의 명으로 현주懸註 함.
번역관보 임구차랑林久次郎 [印]

남만귀 판결문(1909년 5월 11일 대구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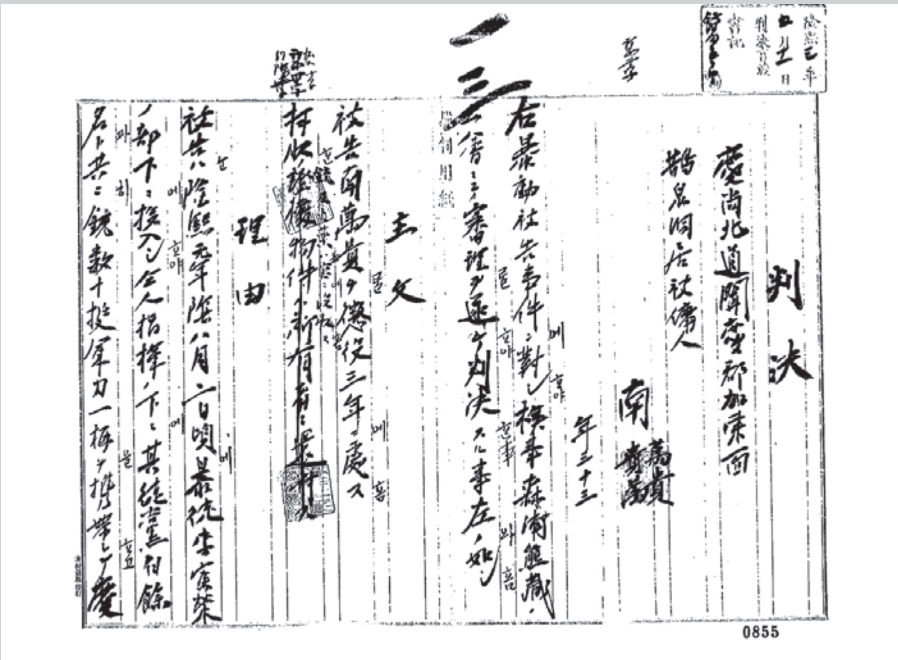
判決

慶尚北道聞慶郡加恩面

暗泉洞居 秋備人

南萬貴

年三十三

右暴動被告事件ニ對シ檢事森脇龜藏ノ關與ニテ審理ヲ遂ケ判決スル事左ノ如シ

主文

被告南萬貴ヲ懲役三年ニ處ス

押收物件ハ所有者ニ還付ス

理由

被告ハ隆熙元年陰八月十日頃暴徒李康季ノ部下ニ投シ仝人指揮ノ下ニ其他徒黨百餘名ト共ニ銃數十挺軍刀一振ヲ携帶シテ慶

0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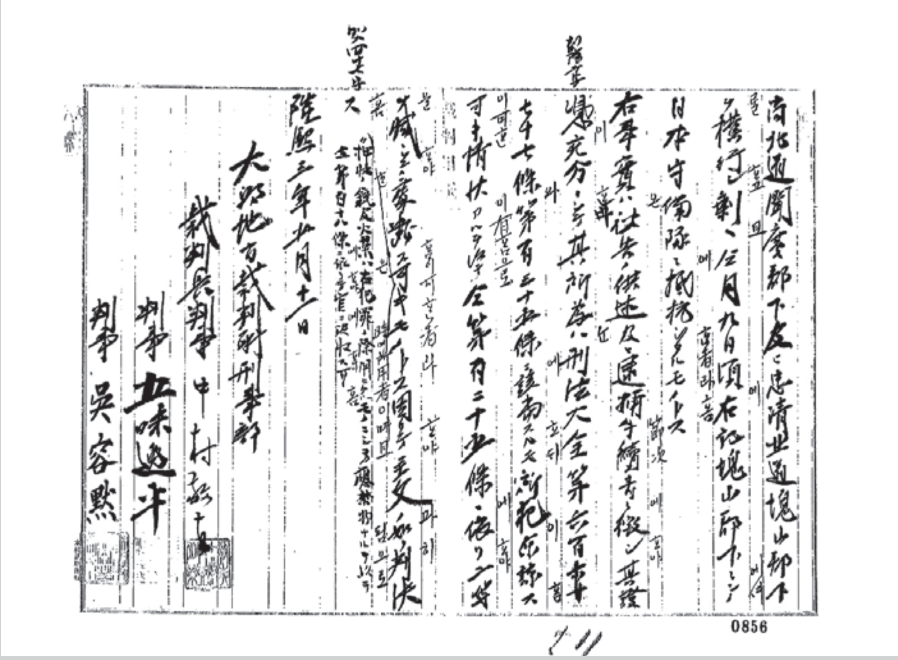
尚北道聞慶郡下及ヒ忠清北道槐山郡下ヲ横行剽掠シ仝月九日頃右記槐山郡下ニ於テ日本守備隊ト抵抗シタルモノナリ

右事實ハ被告ノ供述及ヒ押收物件ニ徵シ其證憑充分ナリ其所爲ハ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第百三十五條ニ該當スルヲ以テ情状ヲ酌量シ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一等ヲ減シ

懲役三年ニ處シ押收物件ハ所有者ニ還付スヘキモノトシ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五月十一日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判事 中村

判事

判事 吳容默

0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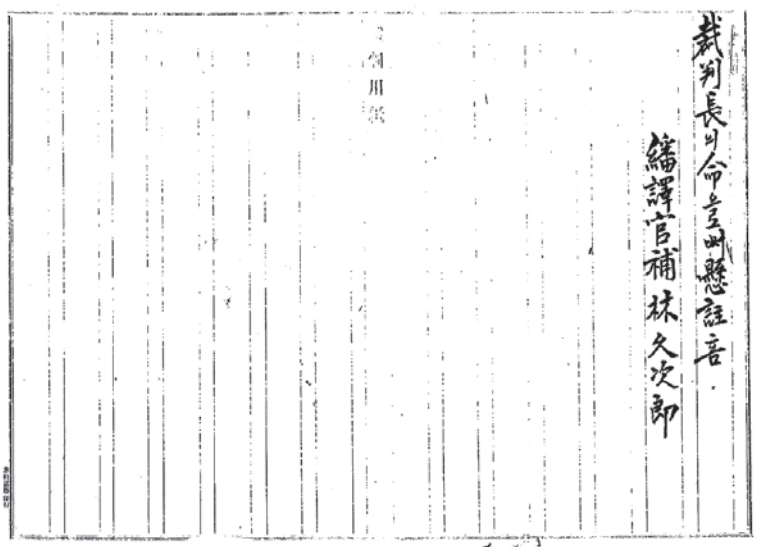
裁判長ノ命ニ依リ通譯ス
通譯官補 林久次郎
0857

13. 박백현

判決

聞慶郡 加北面 上大門洞 居 農
朴白鉉, 年二十八

右暴動被告事件ニ(에)對シ(ᄒᆞ야)檢事豊田俊助ノ立會ニテ審理ヲ(ᄅᆞᆯ)遂ケ(ᄒᆞ야)判決スル 事(ᄒᆞᆷ이)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朴白鉉ヲ懲役三年ニ(에)處ス(홈)

理由

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陰八月一日(에)暴徒ノ(의)首魁李康年ノ(의)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徒黨百餘名ト(과)共ニ(히)仝年陰九月下旬マテ(ᄭᅵ지)銃及ヒ刀ヲ(ᄅᆞᆯ)携ヘ(ᄒᆞ고)李康年指揮ノ下ニ(에)慶尙北道聞慶郡龍宮郡醴泉郡(과)江原道原州郡平昌郡(과)忠淸北道忠州郡槐山郡下ヲ(ᄅᆞᆯ)橫行シ(ᄒᆞ고)且ツ仝九月下旬(에)右槐山郡下七星岩ニテ(에셔)日本守備隊ニ(에게)抵抗シテ(ᄒᆞ야)暴動ヲ(을)行レタルモノトス(ᄒᆞᆫ者라홈)
右ノ事實ハ(은)被告供述及ヒ逮捕手續(節次)書ニ(에)徵シ(ᄒᆞ야)其證憑(이)充分ニシテ(ᄒᆞᆷ으로)法律ニ(에)照スニ(ᄒᆞ니)被告ノ(의)所爲ハ(ᄂᆞᆫ)刑法大仝第六百七十七條第百三十五條ニ(에)該當スルモ(ᄒᆞ딕)所犯(이)原諒ス可キ(ᄒᆞᆯ만ᄒᆞᆫ)情狀アルヲ以テ(이有ᄒᆞᆷ으로써)仝第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二等ヲ(을)減シテ(ᄒᆞ야)處斷ス可キモノトス(ᄒᆞᆷ이可ᄒᆞᆫ者ㅣ라)因リテ(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홈)

隆熙三年 五月 十七日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中村敬直 [印]
判事 五味逸平 [印]
判事 吳容默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繙譯官補 林久次郎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 상대문동
농업, 박백현 28세

위 폭동 피고 사건은 검사 풍전준조豊田俊助의 입회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박백현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8월 1일에 폭도의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가 되어 도당 1백여 명과 함께 동년 음력 9월 9일 하순까지 총 및 칼을 휴대하고 이강년李康秊 지휘 밑에서 경상북도 문경군·용궁군龍宮郡[지금 예천군의 일부]·예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충주군·괴산군 등지를 횡행하고 또 9월 하순 괴산군 경내의 칠성암七星岩에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저항하고 폭동을 행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공술 및 체포 수속서에 의하여 그 증빙이 충분한 바,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제135조에 해당하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동 제125조에 의하여 본형에서 2등을 감하여 처단함이 가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5월 17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중촌경직中村敬直 [印]
판사 오미일평五味逸平 [印]
판사 오용묵吳容默 [印]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번역관보 임구차랑林久次郎 [印]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加北面 上大門洞 農
朴白鉉, 貳十六年

右ノ者ニ(被告에)對スル(ᄒᆞᆫ)暴動被告事件ニ(에)關シ(ᄒᆞ야)隆熙三年五月十七日大邱地方裁判所カ(에셔)宣告シタル(ᄒᆞᆫ)有罪ノ(의)判決ニ(에)對シ(ᄒᆞ야)被告ヨリ(가)控訴ヲ(ᄅᆞᆯ)申提シタルニ依リ(ᄒᆞ얏기)本院ハ(은)檢事大村大代立會審理ヲ(ᄅᆞᆯ)遂ケ(行ᄒᆞ야)判決スルコト(ᄒᆞᆷ이)左ノ(와)如シ(홈)

主文

本件控訴ハ(ᄂᆞᆫ)之ヲ(此ᄅᆞᆯ)棄却ス(홈)

事實及理由

被告ハ(ᄂᆞᆫ)隆熙元年九月八日(에)(陰八月一日)多衆ヲ(을)聚合シテ(ᄒᆞ야)暴動ヲ(을)爲サレコトヲ(行ᄒᆞᆯ事ᄅᆞᆯ)造意セル(ᄒᆞᆫ)首魁李康年ノ(의)部下ニ(에)投入シ(ᄒᆞ야)其徒黨壹百名余ト(와)共ニ(히)同人ノ(의)指揮ニ(에)從ヒ(ᄒᆞ야)洋銃火繩銃及刀劍ヲ(을)携ヘ(ᄒᆞ고)同日ヨリ(로브터)同年十一月初旬(陰九月下旬)マテノ間(ᄉᆡᆺ지)意思(ᄅᆞᆯ)繼續シテ(ᄒᆞ야)慶尙北道聞慶郡龍宮郡醴泉郡江原道原州郡平昌郡忠淸北道忠州郡槐山郡下ヲ(을)橫行シ(ᄒᆞ야)其槐山郡ヲ(을)橫行シタル(ᄒᆞᆯ)際ニハ(에ᄂᆞᆫ)同郡七星岩ニ於テ(에셔)日本守備隊ニ(ᄅᆞᆯ)抵抗シ以テ(ᄒᆞ야뼈)暴動ヲ

(을)爲シタルモノトス(行ᄒᆞᆫ者ᄅᆞᆷ)

右事實ハ(은)憲兵ノ(의)被告逮捕手續書聞慶憲兵分遣所及檢事局ニ於ケル(에셔ᄒᆞᆫ)被告ノ(의)訊問調書原審審問調書當法廷ニ於ケル(에셔ᄒᆞᆫ)被告ノ(의)供述ニ(에)依リ(ᄒᆞ야)其證憑(이)充分ナリトス(타ᄒᆞᆷ)

被告ノ(의)所爲ハ(ᄂᆞᆫ)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前段ニ(에)該當スル(ᄒᆞᆫ)從犯ニ(에)付キ(關ᄒᆞ야)同第百三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同條前段ノ(의)律ヨリ(로브터)一等ヲ(을)減シ(ᄒᆞ고) 尙(且)所犯情狀(을)原諒スヘキ(ᄒᆞᆯ)襄アルヲ以テ(点이有ᄒᆞᆷ으로써)同第百貳十五條ニ(에) 依リ(ᄒᆞ야)貳等ヲ(을)輕減シ(ᄒᆞ야)懲役三年ニ(에)處スルヲ(ᄒᆞᆷ을)相當トス(타ᄒᆞᆷ)

左レハ(然則)凡テ(總히)前記ト(와)同一趣旨ニ(에)出テタル(ᄒᆞᆫ)原判決ハ(은)正當ニシテ(ᄒᆞ고)控訴ハ(ᄂᆞᆫ)其理由ナキニ(가無ᄒᆞᆷ에)依リ(ᄒᆞ야)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에)則リ(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隆熙三年 六月 十五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松下直美 [印]
判事 井浦義久 [印]
判事 寺川三藏 [印]

隆熙三年 六月 十五日 言渡ス
大邱控訴院
裁判所書記 柳淇英 [印]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裁判所繙譯官補 延秉國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 상대문동
농업, 박백현 26세

위 자에 대한 폭동 피고 사건으로 융희3년1909 5월 17일 대구지방재판소가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본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의 입회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 사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9월 8일음력 8월 1일 대중을 취합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을 발의 한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투입하여 도당 1백여 명과 함께 동인의 지휘에 좇아 양총·화승총 및 도검을 휴대하고 동일부터 동년 11월 초순음력 9월 하순까지의 기간 중 경상북도 문경군·용궁군·예천군, 강원도 원주군·평창군, 충청북도 충주군·괴산군 경내를 횡행하였는데 괴산군을 횡행할 무렵에는 동군 칠리암七里岩에서 일본수비대에 저항하여 폭동을 한 자 이다.

위 사실은 헌병의 피고 체포 수속서, 문경헌병분견소 및 검사국에서 피고의 신문조서, 원심 심문조서, 당법정에서 피고의 공술에 의하여 증빙이 충분하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에 해당하는 바 종범의 율인 동 제135조에 의하여 동조 전단의 율에서 1등을 경감하고 범한 바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2등을 경감하고 징역 3년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모두 전기와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어진 원 판결은 정당하여 공소의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 소송 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6월 15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송하직미松下直美 [印]

판사 정포의구井浦義久 [印]
판사 사천삼장寺川三藏 [印]

융희3년1909 6월 15일에 언도함
대구공소원
재판소서기 유기영柳淇英 [印]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재판소번역관보 연병국延秉國 [印]

■ **박백현 판결문**(1909년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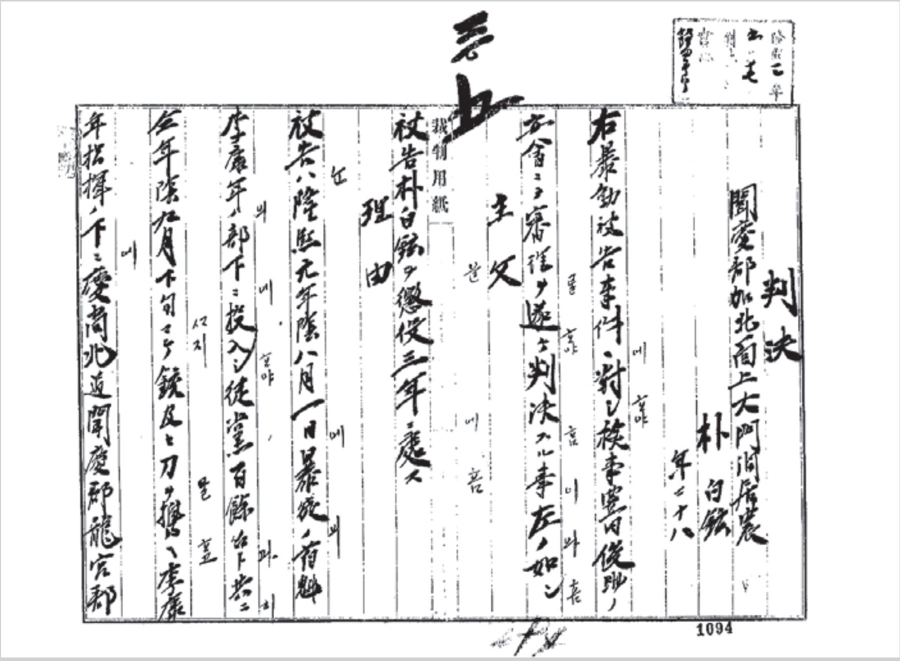

判決

聞慶郡加北面上大洞居農

朴白鉉 年二十八

右暴動被告事件ニ對シ檢事堀田俊助ノ

立會ニテ審理ヲ遂ケ判決スル事左ノ如シ

主文

被告朴白鉉ヲ懲役三年ニ處ス

理由

被告ハ隆熙元年陰八月一日暴徒ノ首魁

李康年ノ部下ニ投入シ徒黨百餘名ト共ニ

仝年陰九月下旬ニ至ル迄銃及ヒ刀ヲ携ヘ李康

年指揮ノ下ニ慶尚北道聞慶郡龍宮郡

裁判用紙

1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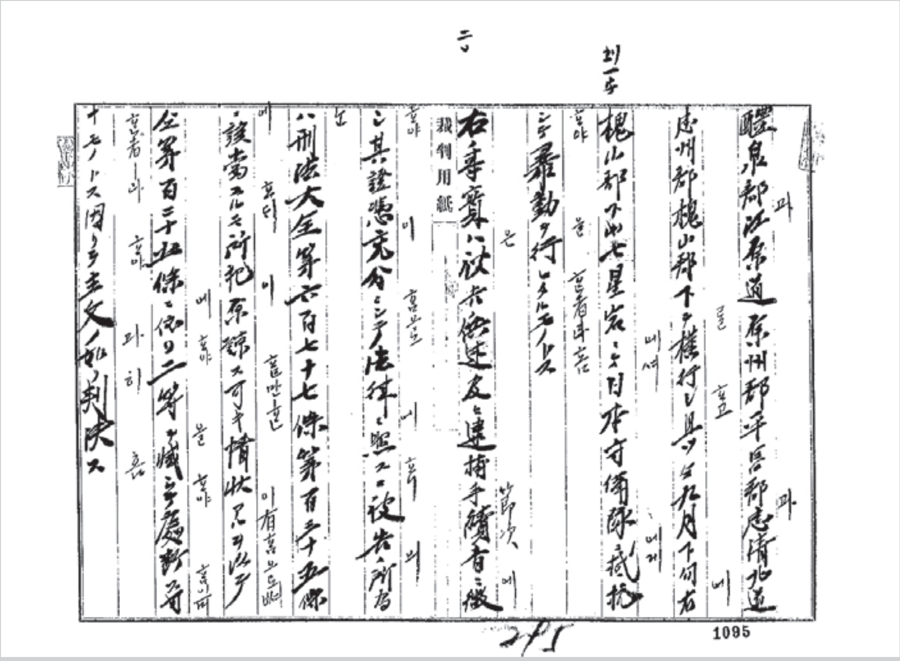

醴泉郡江原道原州郡平昌郡忠清北道

忠州郡槐山郡下ヲ横行シ其ノ九月下旬右

槐山郡下加七星岩ニテ日本守備隊ト戰投

シテ暴動ヲ行ヒタルモノナリ

右事實ハ被告ノ供述及ヒ逮捕手續書ニ徵

シ其證憑充分ニシテ法律ニ照スニ被告ノ所爲

ハ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第百三十五條

該當スルモ犯罪ノ情狀原諒ス可キ情狀アルヲ以テ

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二等ヲ減シ處斷スヘキ

モノトス因テ主文ノ如ク判決ス

裁判用紙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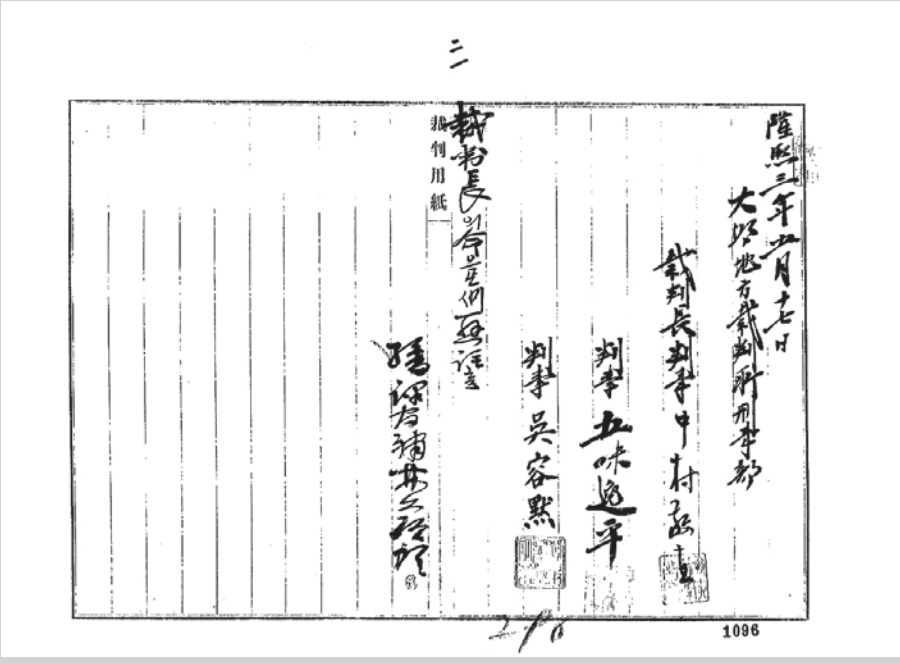

■ **박백현 판결문**(1909년 6월 15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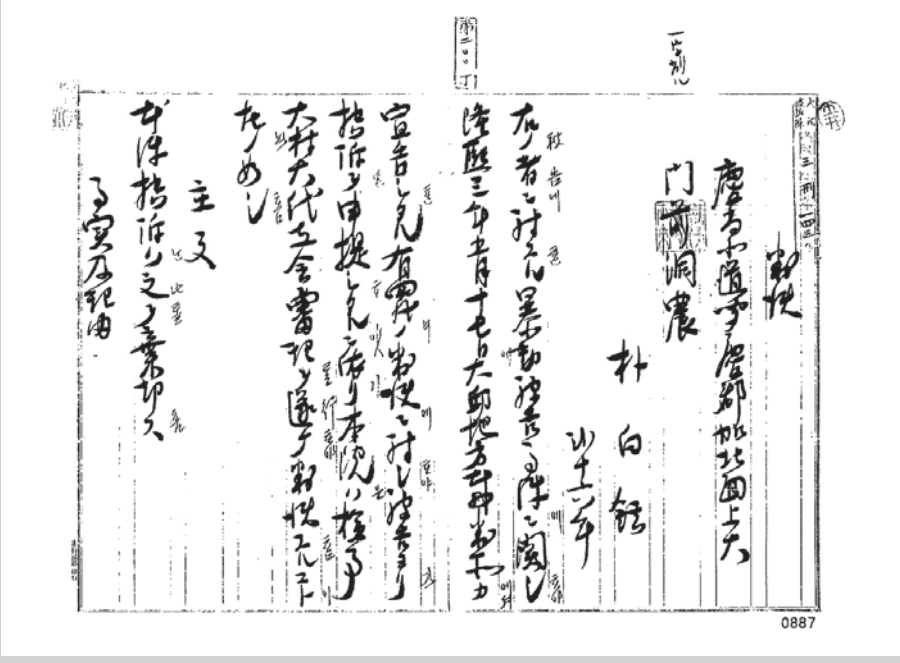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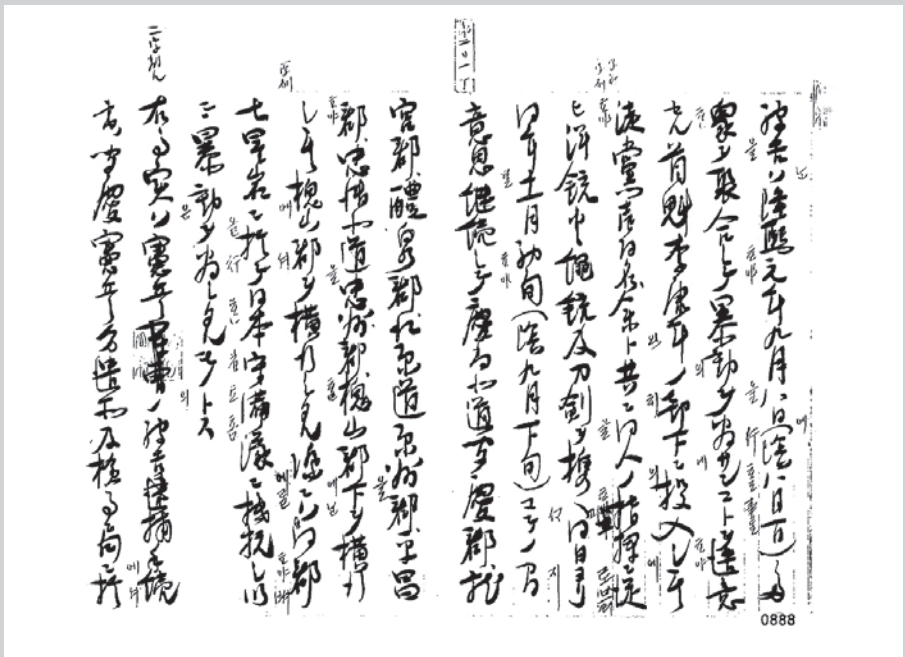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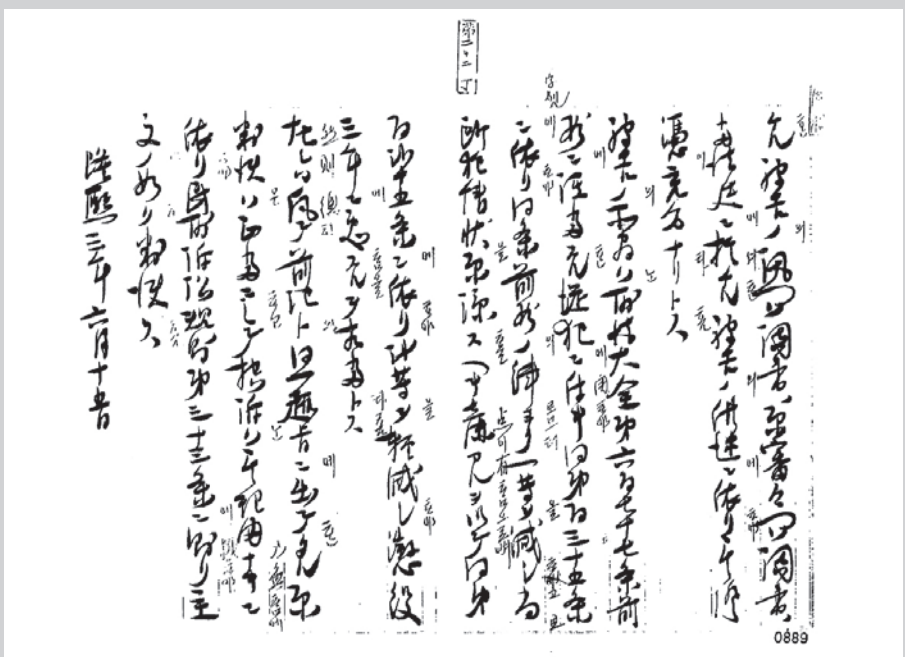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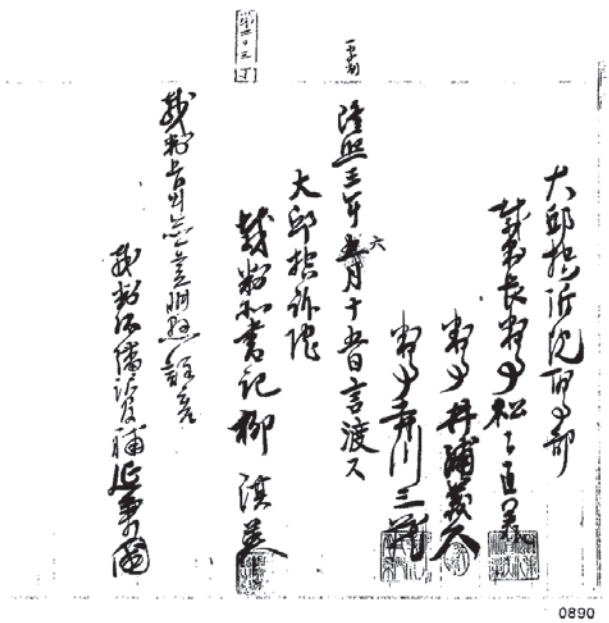

14. 곽이섭(판결문 원문 없음)*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가북면加北面 상고리上狐里
피고 곽이섭郭理燮 44세

위 강도 피고 사건은 검사 신등관삼랑新藤寬三郎의 입회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곽이섭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원년1907 음력 10월 하순부터 동년 11월 하순 경 까지의 사이에 총칼을 휴대하고 10여 명의 부하를 지휘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동도 음성군 경내를 횡행하여 폭동을 행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의 공술,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 및 체포시말서 등에 의하여 그 증빙이 충분 하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나 범한 바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서 동 제125조에 의하여 3등을 감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09년 7월 31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독립 운동사 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 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4, 500~501쪽.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15. 이인영

判決[隆熙三年刑第三四號]

忠淸北道 黃澗郡 西面 桃洞 住 / 京畿道 驪州郡 北面 內龍洞 出生
農業, 被告 李麟榮 [九月二十三日生] 四十二年

右之者ニ對スル內亂首犯被告事件ニ付檢事伊藤德順立會審問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李麟榮ヲ絞ニ處ス
押收ノ證據物件ハ各差出人ニ還付ス

事實及理由

被告ハ文班ノ出身ニシテ頗ル排外殊ニ排日ノ思想ヲ有シ今ヲナスル十三年前當時ノ政府ニ反抗シ內亂ノ準備ヲ爲シタルコトアリタルモノニシテ常ニ統監政治ニ對シ不平ヲ懷抱シ居リタルモノナルガ隆熙元年七月軍隊ノ解散アリ續ヲ前皇帝陛下ノ讓位アルヤ要路ノ大臣ヲ目シテ賣國奴ト爲シ之ヲ殺戮シ新ニ自己ノ信スル者ヲ以テ政府ヲ組織シ日本人ハ勿論其他ノ外國人ヲ國外ニ驅逐スル等當時ノ政事ヲ變更スル目的ヲ以テ亂ヲ作サレコトヲ造意シ李永采李殷瓚等ト共謀シ其當時ノ住居ナル聞慶ニ於テ同人等ノ引率シ來リタル同志者及原州ニ於ケル解散兵五百余名ヲ以テ組織セン三陣ノ將トナリ前揭趣旨ノ檄文ヲ全國內ニ配布シ一面名分ヲ正クスル爲メ統監及各國領事ニ向ケ大日本帝國ノ馬關條約ニ反スル行爲アルコトヲ訴ヘ進テ砥平ニ至リ其徒黨八千トナリ次テ楊州ニ至リ同志タル許蕎李康年ノ輩ト合シ其數一萬ニ達シ許蕎ヲ以テ君師ト爲シ李康年李泰榮李殷瓚金俊秀延起羽等ヲ各部將ト爲シ自ラ其總指揮者トナリ徒黨各自ヨリ兵器軍糧ヲ出捐セシメ解散兵ニシテ部下ニ投シタルモノヲシテ彈藥ヲ作ラレメ一擧シテ京城ニ入リ其目的ヲ達セ

ントシ守備隊其他ト衝突シ擧事以來約四個月間江原道京畿道ノ各地ニ於テ大小約三十八回ノ戰鬪ヲ重ネタルモ偶ニ其父死去ノ報ニ接シ服喪ノ爲メ其任ヲ辭シ歸鄕シ三年ヲ經過シ更ヒ事ヲ擧ケント計劃シテアル間ニ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右ノ事實ハ被告ノ當法廷ニ於ケル供述天安憲兵分隊大田分遣所陸軍憲兵中尉倉富和三郎ノ作成シタル被告ニ對スル第一乃至第四ノ訊問調書當廳檢事ノ作成シタル被告ニ對スル訊問調書ノ各記載ヲ綜合シ之ヲ認定シタリ

法律ニ照スニ其處爲內亂ノ造意及指揮ヲ爲シタルモノナリニ付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シ絞ニ處ス可ク押收ノ證據物件ハ本犯罪ニ關係ナキモノナルニヨリ何レモ差出人ニ還付ス可キモノトス依リ主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 八月 十三日
京城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 判事 塚原友太郎 [印]
判事 中村時章 [印]
判事 金宜均 [印]

隆熙三年 八月 十三日 判決 宣告
於同廳
裁判所書記 岩山德兵衛 [印]

판결 [융희3년1909 형(刑) 제34호]

충청북도 황간군 서면西面 도동桃洞 거주 / 경기도 여주군 북면北面 내룡동內龍洞 출생
농업, 피고 이인영李麟榮 [9월 23일생] 42세

상기 자에게 대한 내란 수범首犯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이 입회하고 심문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인영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증거 물건은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이유

피고는 문반 출신으로서 배외특히 배일 사상이 심하여,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당시의 정부에 반항하여 내란 준비를 한 일이 있던 자로 항상 통감統監 정치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있던 자인데, 융희원년1907 7월 군대가 해산되고, 이어서 전 황제 폐하고종가 양위하자, 요로의 대신을 지목하기를 매국노라 하여 이들을 살륙하고서 새로이 자기가 믿는 자로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은 물론 기타 외국인을 국외로 구축하는 등 당시의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난을 일으킬 것을 마음먹고, 이영채李永采·이은찬李殷瓚 등과 공모하여 그 당시의 거주지인 문경聞慶에서 그들이 이끌고 온 동지들 및 원주原州에서 해산된 병정 5백여 명으로 조직된 3진의 대장이 되어서 전기한 취지로 격문을 전국내에 배포하고, 한편 명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통감 및 각국 영사에게 대하여 '대일본제국이 마관馬關 조약에 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고, 진군하여 지평砥平에 이르매 그의 도당이 8천이 되고, 이어서 양주楊州로 가서 동지인 허위許蔿·이강년李康秊의 무리와 합하여 그 수효가 1만에 달하여, 허위를 군사軍師로 삼고 이강년李康秊·이태영李泰榮·이은찬·이준수李俊秀·연기우延起[基]羽 등을 각 부장部將으로 삼아 스스로 그의 총지휘자가 되어 도당 각자에게서 병기·군량을 출연 시키고, 해산병으로서 부하에 투입한 자로 하여금 탄약을 만들게 하여 일거에 경성京城으로 들어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비대, 기타와 충돌하여 거사 이래로 약 4개월 동안 강원도·경기도의 각지에서 대·소 약 38회의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부친이 서거하였다는 보도에 접하여 초상을 치르기 위하여 그는 사임하고 귀향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거사하려 계획하고 있던중, 체포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의 공술, 천안天安헌병분대 대전大田분견소 육군헌병중위 창부화삼랑倉富和三郎이 작성한 피고에게 대한 제1 내지 제4의 신문 조서, 당청 검사가 작성한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법률에 비추건대, 그의 소위는 내란을 조의造意 및 지휘한 자이므로 형법대전 제 195조에 해당하여 교수형에 처할 것이며 압수한 증거 물건은 본 범죄에 관계가 없기로 모두 제

출인에게 반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8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郎 [印]
판사 중촌시장中村時章 [印]
판사 김의균金宜均 [印]

융희3년1909 8월 13일 판결 선고
같은 재판소에서
재판소서기 암산덕병위岩山德兵衛 [印]

■ **이인영 판결문**(1909년 8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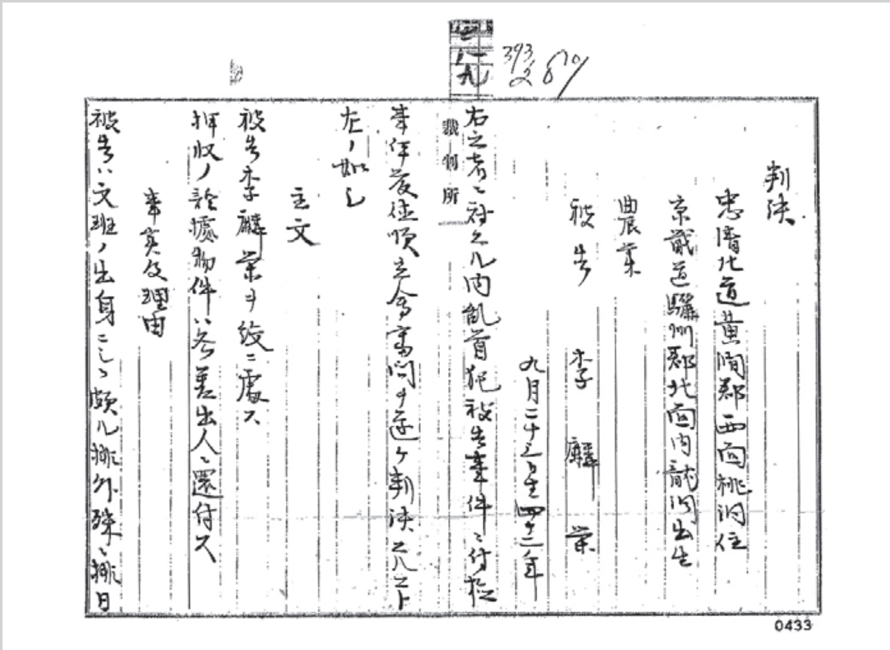

393

判決

忠清北道黄澗郡西面桃洞住
京畿道驪州郡北面内龍洞出生
農業
被告 李麟栄
九月二十七日生 四十二年

右之者ニ対スル内乱首魁被告事件ニ付キ
事件検事□□□立会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李麟栄ヲ絞首ニ処ス
押収ノ証拠物件ハ各差出人ニ還付ス

事実及理由

被告ハ文班ノ出身ニシテ頗ル漢学ニ長シ漢[illegible]

0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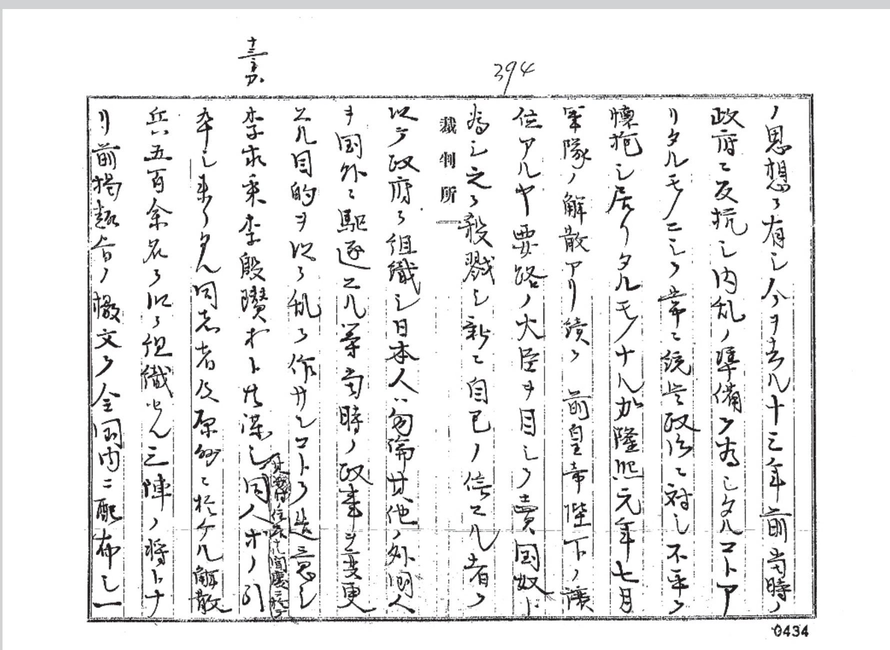

394

ノ思想ヲ有シ今ヲ去ル十三年前當時ノ政府ニ反抗シ内乱ノ準備ヲ為シタルコトアリタルモノニシテ常ニ統監政治ニ対シ不平ヲ懐抱シ居リタルモノナルカ隆熙元年七月軍隊ノ解散アリ續テ前皇帝陛下ノ譲位アルヤ要路ノ大臣ヲ目シテ売国奴ト為シ之ヲ殺戮シ新ニ自己ノ信スル者ヲ以テ政府ヲ組織シ日本人ハ勿論其他ノ外国人ヲ国外ニ駆逐シ以テ帝国ノ政事ヲ変更スル目的ヲ以テ乱ヲ作サムコトヲ決意シ李求采李殷瓚ト共ニ深ク国人ヲ[illegible]李ト共ニ同志者及原州ニ於ケル解散兵ハ五百余名ヲ以テ組織セル之陣ノ将ト為リ前掲趣旨ノ檄文ヲ全国内ニ配布シ

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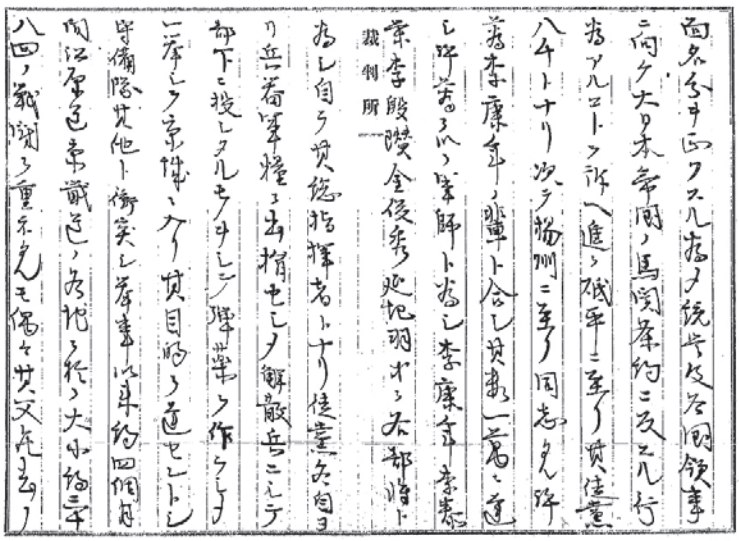

裁判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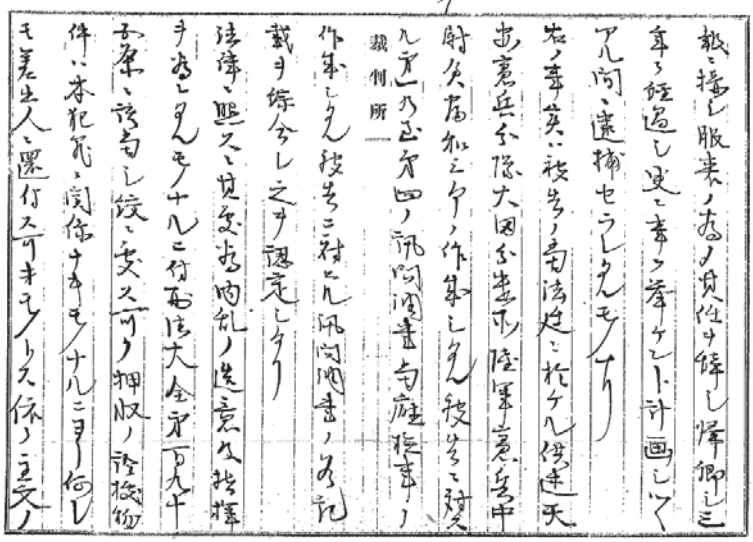

裁判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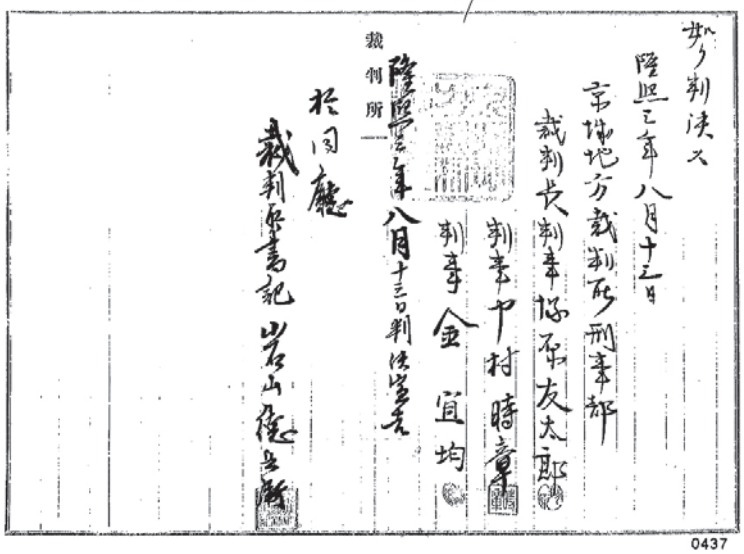
397
0437